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영향평가 결과

2024. 8.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영향평가 주요 결과

< 한-필리핀 FTA 영향평가 결과 요약 >

실질 GDP (15년 누적)	소비자 후생 (15년 누적)	생산효과(15년 연평균)			고용효과 (15년 누적)	세수증감 (10년평균)
		제조업	농업	수산업		
0.01%	1.6억불	662억원	△95억원	△1천만원	1,540명	△422억원

□ (거시효과) 한-필리핀 FTA 발효에 따라 장기(15년간) ①실질 GDP는 0.01% 증가 ②소비자 후생은 1.6억불 개선 예상

- (고용) 한-필리핀 FTA 발효 이후, 15년간 1,540명의 고용 창출효과
- (세수) 발효 이후 10년간, 관세수입 등의 감소로 연평균 61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경제성장에 따라 연평균 189.7억원의 세수 증가 예상

□ (산업영향) 한-필리핀 FTA로 제조업 분야에서 15년간 연평균 662억원의 국내생산 증가 예상, 농수산업에서는 생산액 감소 전망

- (제조업)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국내생산은 약 662억원* 증가, 수출은 약 2,570만불 증가 예상, 수입은 170만불 증가** 예상

* 전 산업(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제조업 영역에서 662억원의 생산효과 증대 예상, 세부 업종별로는 자동차·화학 등의 제조업에서 537억원, 서비스업에서 122억원 증대 예상

** (수출) 자동차 수출효과가 대부분으로 나타나며 연평균 1,340만불 수출효과 예상(52.1% 비중) (수입) 연평균 170만불, 수입창출효과는 미미(한-아세안에서 이미 대다수 관세 철폐)하며, 섬유에서 4.9% 수입창출효과 발생 전망

- (농업)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증가* 영향으로 농업생산액은 15년간 연평균 약 95억원 감소** 예상되나, 배 등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기대

* 바나나 관세양허(30%, 5년 철폐)로 수입량은 15년간 연평균 3천톤 증가로 추정

** 주요품목은 15년 연평균 사과 25억, 복숭아 16억 등 생산감소 예상

- (수산업) 어류, 연체동물 등의 수입증가로 15년간 연평균 수산업 생산액은 1천만원 감소 예상

* 부류별로 연체동물이 15년 연평균 5백만원, 갑각류가 2백만원 감소 예상

한·필리핀 FTA 경제적 영향평가

2022.11

提 出 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한·필리핀 FTA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홍중
산업연구원장 주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홍상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종덕

研 究 陣

<총괄 연구책임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 연구 위원	김 현 수
-----------	---------	-------

<분야별 연구책임자>

산업연구원	전 문 연 구 원	김 정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경 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 문 연 구 원	고 동 훈

<연구진>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선임연구위원	허 재 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 재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 연구 위원	오 수 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 문 연 구 원	금 혜 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 문 연 구 원	김 민 성
산업연구원	연 구 원	천 가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 문 연 구 원	남 경 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 구 원	명 수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 구 원	최 미 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 문 연 구 원	임 병 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 구 원	이 정 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 구 원	정 유 진

<제 목 차 례>

요 약	i
제1장 서론	1
제2장 한국과 필리핀 간 경제관계	4
1. 필리핀의 경제 현황	4
가. 필리핀의 거시경제 현황	4
나. 필리핀의 산업구조	6
다. 필리핀의 무역구조	8
2. 양국 간 교역 현황	12
가. 양국 교역 관계	12
나. 주요 교역 품목	14
3. 양국 간 투자 현황	18
가. 필리핀의 FDI 유입 현황	18
나. 한국의 필리핀 투자 현황	19
다. 필리핀의 한국 투자 현황	22
제3장 한·필리핀 FTA의 주요 내용	23
1. 상품 협정문 분석	23
가. 양허유형	23
나. 양허수준	24
2. 기타 챕터	28
가. 원산지 규정 (4장)	28
나.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5장)	30
다. 경쟁 (6장)	33
라. 경제 및 기술 협력 (7장)	35
제4장 한·필리핀 FTA 거시 경제적 효과 분석	40
1. 성장 및 후생 효과	40
가. 분석 모형	40
나. 분석 자료	45

다. 분석 시나리오	49
라. 분석 결과	50
마. 분석의 한계	53
2. 고용 효과	55
가. 고용 효과 도출방법	55
나. 산업별 및 경제 전체의 고용 효과	57
3. 세수 효과	61
가. 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1
나. 관세율 인하 등에 의한 세수입 변화	61
다.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입 변화	63
라. 세수효과 종합	65
부록 1. 경제성장률 증가효과를 이용한 고용효과 추정	67
제5장 한·필리핀 FTA 제조업 효과 분석	72
1. 제조업 분야 교역구조 개황	72
2. 제조업 분야 주요 양허내용 분석	76
3. 제조업 분야 영향분석 방법론	82
가. 분석 모형 개요	82
나. 세부 모형 설정 및 탄력성 추정 방법론	84
다. 생산효과 추정 방법론	90
라. 분석의 전제: RCEP 발효 영향 미고려	92
4. 제조업 분야 영향분석 결과	94
가. 교역 창출효과 분석 결과	94
나. 생산효과 분석 결과	98
제6장 한·필리핀 FTA 농림축산업 효과 분석	100
1. 한·필리핀 농림축산물 생산 및 교역 동향	100
가. 필리핀 농축산물 생산 동향	100
나. 필리핀 농축산물 교역 동향	104
다. 對필리핀 주요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106
라. 바나나 국가별 수입 동향	110
마. 對필리핀 주요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114
바. 한·필리핀 농업부문 우리측(수입) 상품양허(안)	118

2. 한·필리핀 FTA 농업부문 파급효과 분석	120
가. 농축산물 수입영향 분석모형 구조	120
나. 농축산물 수입영향 분석 방법	123
다. 농축산물 수입영향 분석 결과	124
라. 농식품 수출확대 가능성(정성적 분석)	125
제7장 한·필리핀 FTA 수산업분야 영향 분석	127
1. 필리핀의 수산업 통상 현황	127
가. 수산물 생산 규모	127
나. 어업별 생산	128
2. 필리핀 수산물 교역구조	133
가. 필리핀의 수산물 교역	133
나. 한·필리핀 수산물 교역 현황	135
다. 한·필리핀 수산물 관세 현황	138
3. 한·필리핀 FTA 타결 내용 및 수산업 파급영향	141
가. 수산분야 한·필리핀 타결 내용	141
나. 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 파급 영향	142

<표 차례>

표 1-1. 한·필리핀 FTA 전체 자유화율	1
표 2-1. 필리핀의 주요 거시 경제 현황 (2016-2021)	6
표 2-2. 필리핀의 수출 구조 (2021)	10
표 2-3. 필리핀의 수입 구조 (2021)	10
표 2-4. 필리핀의 주요 수출국	11
표 2-5. 필리핀의 주요 수입국	11
표 2-6. 한·필리핀 연도별 교역 현황	14
표 2-7. 한국의 대필리핀 주요 교역 품목(2021년 기준)	15
표 2-8. 한국의 대필리핀 자동차 수출 현황	16
표 2-9. 한국의 대필리핀 가공 단계별 수출 구조	17
표 2-10. 한국의 대필리핀 가공 단계별 수입 구조	17
표 3-1. 한·필리핀 FTA의 양허유형	23
표 3-2. 한·아세안 FTA, RCEP 및 한·필리핀 FTA 자유화율(%) 비교	25
표 3-3. 한국의 대필리핀 양허수준	27
표 3-4. 필리핀의 대한국 양허수준	28
표 3-5. 한·필리핀 FTA 5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협정문 주요 구성	31
표 3-6. 한·필리핀 FTA 6장 경쟁 협정문 주요 구성	34
표 3-7. 한·필리핀 FTA 7장 경제 및 기술 협력 협정문 주요 구성	36
표 3-8. 한·필리핀 FTA 경제 및 기술 협력 부속서 주요 구성	38
표 4-1. 한국의 FTA 체결현황	46
표 4-2. 한·필리핀 FTA의 가중관세 감축률	50
표 4-3. 한·필리핀 FTA의 거시경제 효과(누적): 실질 GDP 및 후생	53
표 4-4. 2022년 대비 산업별 생산액 변화	56
표 4-5. 산업별 생산액 변화로부터 도출한 산업별 및 경제전체 임금근로자 증가 효과	59
표 4-6. 산업별 생산액 변화로부터 도출한 산업별 및 경제전체 취업자수 증가 효과	59
표 4-7. 고용계수 추이 전망값	60
표 4-8. 취업계수 추이 전망값	60
표 4-9. 관세율 인하 및 철폐에 따른 관세수입 변화	63

표 4-10.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입 변화	64
표 4-11. 한·필리핀 FTA 체결에 따른 세수 효과	66
표 5-1. 한국의 對필리핀 수출	73
표 5-2. 한국의 對필리핀 수입	73
표 5-3. 한국의 대필리핀 및 대세계 TSI	75
표 5-4. 한국과 필리핀의 대세계 RCA	75
표 5-5. 필리핀의 대한국 관세 양허 분류(전체 품목, 품목수 기준)	76
표 5-6. 필리핀의 대한국 관세 양허 분류(전체 품목, 금액 기준)	77
표 5-7. 필리핀의 대한국 관세 양허 분류(실질 양허 품목, 품목수 기준)	78
표 5-8. 필리핀의 대한국 관세 양허 분류(실질 양허 품목, 금액 기준)	78
표 5-9. 한국의 대필리핀 관세 양허 분류(전체 품목, 품목수 기준)	80
표 5-10. 한국의 대필리핀 관세 양허 분류(전체 품목, 금액 기준)	80
표 5-11. 한국의 대필리핀 관세 양허 분류(실질 양허 품목, 품목수 기준)	81
표 5-12. 한국의 대필리핀 관세 양허 분류(실질 양허 품목, 금액 기준)	81
표 5-13. 한·필리핀 FTA 제조업 분야 수출 창출효과	96
표 5-14. 한·필리핀 FTA 제조업 분야 수입 창출효과	97
표 5-15. 한·필리핀 FTA 제조업 분야 생산 효과	99
표 6-1. 필리핀 농림축산물 생산량 동향	102
표 6-2. 필리핀 농림축산물 생산액 동향	103
표 6-3. 필리핀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105
표 6-4. 필리핀산 농림축산물 주요품목 수입현황	107
표 6-5. 국가별 바나나 수입량 및 수입단가 동향	112
표 6-6. 페루 바나나 관세 양허 현황	113
표 6-7. 콜롬비아 바나나 관세 양허 현황	113
표 6-8. 농림축산물 주요품목 수출현황	115
표 6-9. 한·필리핀 FTA 농산물 양허 유형별 추가개방 품목	119
표 6-10. 한·필리핀 FTA 체결에 따른 필리핀산 바나나 ASG 내용	119
표 6-11. KREI-KASMO 2021 품목범위: 농식품부 생산액 기준	121
표 6-12. KREI-KASMO 2021 품목범위: 모형 내 실품목 기준	121
표 6-13. 한·필리핀 FTA 농업부문 과급영향 추정 결과	124
표 6-14. 한·필리핀 FTA에 따른 바나나(0803류) 수입량 변화	125
표 6-15. 한·필리핀 FTA 주요 수출 품목 양허 내용 및 동향	126

표 7-1. 주요 국가의 수산물 생산량(2020년 기준)	127
표 7-2. 필리핀 주요 생산 어종(2020년)	129
표 7-3. 필리핀 어획어업 주요 생산품종	130
표 7-4. 필리핀 양식어업 주요 생산품종	132
표 7-5. 필리핀의 수산물 교역 규모	133
표 7-6. 필리핀의 품목별 對세계 수입 현황	134
표 7-7. 필리핀의 품목별 對세계 수출 현황	135
표 7-8. 한국의 對필리핀 수산물 교역 규모	136
표 7-9. 한국의 對필리핀 주요 수입 품목(2017~2018년 평균)	137
표 7-10. 한국의 對필리핀 주요 수출 품목(2017~2018년 평균)	138
표 7-11. 한·필리핀 수산물 관세 현황	138
표 7-12. 한·ASEAN FTA 기준 한국의 품목별 수산물 MFN 관세율	139
표 7-13. 한·필리핀 FTA 기준 한국의 품목별 수산물 MFN 관세율	140
표 7-14. 필리핀의 품목별 수산물 MFN 관세율	140
표 7-15. 한·필리핀 FTA 수산물 한국 수입 양허수준	141
표 7-16. 수산물 EDM 구조 방정식과 주요 변수 및 탄력성	143
표 7-17. 분석 데이터(수입기준)	148
표 7-18. ASEAN 기준 수산물 유형별 수입 영향 분석 결과	149
표 7-19. 수산물 유형별 국내 생산 영향 분석 결과(수입-생산 탄성치)	150
표 7-20. 한국의 對필리핀 주요 수산물 수출 품목 양허 내용 및 동향 ...	151

<부록 표>

표 A-1.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장기고용탄력성 추정결과	70
표 A-2. 실질 GDP증가 효과를 통해 살펴본 한·필리핀 FTA 고용효과	71

<그림 차례>

그림 2-1. 필리핀의 산업별 GDP 비중 (2011-2021)	7
그림 2-2. 필리핀 제조업의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2019-2021)	7
그림 2-3. 필리핀의 수출입 추이(2001-2021)	9
그림 2-4. 필리핀의 10대 주요 교역국의 교역 비중	11
그림 2-5. 필리핀의 10대 주요 수출국 수출 현황 (2010-2021)	12
그림 2-6. 한국의 대필리핀 교역 추이	14
그림 2-7. 필리핀의 FDI 유입 현황	18
그림 2-8. 한국의 아세안 직접투자 추이 (2011~2021년)	20
그림 2-9. 한국의 아세안 국가별 집적 투자 비중 (2001~2021년)	20
그림 2-10. 한국의 필리핀 직접 투자 추이(2001~2021년)	20
그림 2-11. 한국의 필리핀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 (2011~2021년)	21
그림 2-12. 한국의 필리핀 업종별 투자 비중 (2001~2021년)	21
그림 2-13. 필리핀의 한국 직접 투자 추이 (2001~2021년)	22
그림 2-14. 필리핀의 한국 업종별 투자 비중 (2001~2021년)	22
그림 4-1. GTAP 모형 내 경제활동 개관	43
그림 4-2. 임금근로자 증가효과와 전체 취업자 증가효과 (2015~2038) ..	58
그림 4-3. 고용계수와 취업계수 예측치 (2015~2038)	60
그림 5-1. 산업연관표 구조도	91
그림 5-2. 수요모형과 가격모형의 원리	91
그림 6-1. 한·필리핀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105
그림 6-2. 농림축산물 주요품목 수입 동향	109
그림 6-3. 국가별 바나나 수입액 동향	113
그림 6-4. 국가별 바나나 수입단가 동향	113
그림 6-5. 농림축산물 주요품목 수출 동향	117
그림 6-6. KREI-KASMO 2021 모형 구조	120
그림 6-7. 과실류 수급모형 구조	122
그림 7-1. 필리핀 어업별 수산물 생산 추이	128
그림 7-2. 필리핀의 어획어업 비중(2020년)	130

그림 7-3. 필리핀의 양식어업 비중 추이(2020년)	131
--------------------------------------	-----

<부록 그림>

그림 A-1. 취업계수를 이용한 고용효과 도출방법론(a)과 고용탄력성을 이용한 고용효과 도출 방법론(b) 비교	67
--	----

요 약

□ (교역현황) 2021년 한·필리핀 간 교역액은 136억 달러로 '19~'20년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감소한 후 2021년에 다시 증가함.

○ 2019년 한국의 對필리핀 수출은 97억 달러, 수입은 39억 달러로 58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 한국의 對필리핀 수출은 '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15~'16년 감소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주력 제품인 반도체 판매 부진, 국제유가 하락 및 필리핀 페트론 정유 공장 증설로 인한 정유 수출 부진 등에 기인함. 이후 수출은 2018년 12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

－ 수입의 경우 2001년 18억 달러에서 2010년 35억 달러까지 증가한 이후 뚜렷한 추세 없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동제품 등이며, 필리핀의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산업용 전기기기, 과실류, 동제품 등으로,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전자 제품 및 반도체 제조를 위해 중간재를 수입하여 공정 과정을 거친 후 재수출하는 가공무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반도체 수출입의 비중이 높음.

□ (상품양허) 한국과 필리핀의 전체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각각 94.8%와 96.5%, 수입액 기준으로는 97.0%와 97.6%임.

○ 품목수 기준 한·아세안 FTA(2007년 발효) 및 RCEP(2022년 발효)을 합산한 자유화율 대비 한국은 0.7%p, 필리핀은 7.3%p 자유화율이 증가하였고, 수입금액을 기준('17~'18년 평균)으로 하면 한국은 8.1%p, 필리핀은 4.9%p 자유화율이 증가하였음.

- 한국은 필리핀의 주요 관심 품목인 바나나(30%)에 대해 5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필리핀은 한국산 승용차, 트럭, 화물차(5%) 등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하이브리드 승용차, 전기차(5%) 등의 관세를 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함.
- (원산지 규정) 한·필리핀 FTA에서는 전 품목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작성하여 기업의 FTA 활용에 있어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주요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개선하였음.
- 한·아세안 FTA에서는 전체 5,387개 품목 중 1,437개 품목에 대해서만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존재하여 일부 품목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부재하여 기업에 애로로 작용하였으나 한·필리핀 FTA에서는 전 품목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규정함.
-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여, 추후 한국의 상황을 검토하고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결정할 수 있음.
-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한·필리핀 FTA의 통관절차 규범은 RCEP 수준의 규범을 포함함으로써 WTO 무역원활화 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을 상회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음.
- 심사기한 도입, 통관수속기간 단축, 부패성 상품 및 특송화물의 신속 반출 등을 규정하여 우리 기업의 통관 편의성을 제고하고 무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쟁) 한·필리핀 FTA에서는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쟁 챕터를 신설하여 양국간 공정 경쟁 촉진 및 경쟁법 집행 협력의 토대를 마련함.
- 경쟁법 집행 시 절차적 공정성, 방어권 보장,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을 명시하여 우리 현지 기업들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마련함.

□ (경제 및 기술협력) 향후 양국 간 협력이 유망할 분야를 발굴하여 제시하고, 더 다양한 협력의 형태를 명시하며, 코로나 19 등 팬데믹 하에서 협력 및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을 포함함.

□ (거시경제적 효과)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하여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발효 후 5년, 10년, 15년 모두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추가적으로 약 0.0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각각 약 1.31억, 1.42억, 1.60억 달러 증가

□ (고용 효과) CGE 분석결과와 각 산업별 생산효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업별 고용계수 추이를 추정하여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필리핀 FTA로 인한 고용효과는 발효 5년 후 1,225명, 10년 후 1,252명, 15년 후 1,320명으로 예측됨.

□ (세수 효과) 한·필리핀 FTA 발효로 인한 관세 세수감소액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수증가를 고려한 결과, 한·필리핀 FTA 발효 이후 연평균 약 422.3억 원의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전체 국세수입규모를 감안하면 그 영향은 작은 편임.

* 2021년도 우리나라 국세수입 규모는 약 344조 원임.

□ (제조업 효과) 발효 후 15년 누적 3억 6,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15년 누적 기준 9,930억 원의 생산증가 효과가 예상

○ 수출효과는 주로 자동차(15년 누적 기준 2억 100만 달러)에서 발생하여, 15년간 총 3억 8,550만 달러에 달하고,

○ 수입은 섬유(15년 누적 1,650만 달러)를 중심으로 15년 누적 기준 2,55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생산은 주로 자동차(15년 누적 3,450억 원)를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

표 1. 한·필리핀 FTA 제조업 분야 수출입 효과

(단위: 백만 달러)

산업	평균효과			15년 누계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철강	1.5	1.5	0.0	22.5	22.5	0.0
비철금속	0.4	0.4	0.0	6.0	6.0	0.0
비금속광물	0.0	0.0	0.0	0.0	0.0	0.0
섬유	-0.4	0.7	1.1	-6.0	10.5	16.5
석유화학	1.8	1.8	0.0	27.0	27.0	0.0
정밀화학	3.7	3.7	0.0	55.5	55.5	0.0
전기전자	3.3	3.3	0.0	49.5	49.5	0.0
일반기계	0.1	0.1	0.0	1.5	1.5	0.0
생활용품	0.3	0.3	0.0	4.5	4.5	0.0
자동차	12.8	13.4	0.6	201.0	201.0	9.0
기타제조업	0.5	0.5	0.0	7.5	7.5	0.0
제조업합계	24.0	25.7	1.7	360.0	385.5	25.5

표 2. 한·필리핀 FTA 제조업 분야 생산 효과

(단위: 십억 원)

	평균효과		15년 누계	
	외생 충격	생산 효과	외생 충격	생산 효과
농림어업	0	0.1	0	1.5
광업	0	0.1	0	1.5
식음료 및 담배	0	0.3	0	4.5
섬유 및 의복	-0.4	-0.1	-6.0	-1.5
목재 및 목제품	0	0.4	0	6.0
석유화학	2.4	3.5	36.0	52.5
화학	4.9	9.2	73.5	138.0
비철금속광물제품	0	0.4	0	6.0
철강	2.0	5.2	30.0	78.0
금속제품	0.5	2.7	7.5	40.5
전기전자	4.3	5.7	64.5	85.5
전기장비	0	1.5	0	22.5
일반기계	0.1	1.0	1.5	15.0
자동차	16.9	23.0	253.5	345.0
기타제조업	1.0	1.1	15.0	16.5
제조업 계	31.6	53.7	474.0	805.5
서비스업	0	12.2	0	183.0
전산업	31.6	66.2	474.0	993.0

□ (농업 효과) 농산물 생산 감소액은 15년 누적 기준 약 1,426억 원 수준으로 추정됨.

○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증가 영향으로 과실 생산액은 15년 누적 1,156억 원, 연평균 7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한·필리핀 FTA 농업부문 영향의 81.1%를 차지함.

○ 필리핀산 바나나 관세 인하(5년 철폐)로 수입량은 이행 20년간 연평균 3천 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표 3. 한·필리핀 FTA 농업 분야 생산 효과

(단위: 억 원)

구분	1년	5년	10년	15년	15년 누적	15년 연평균
전체	-13	-102	-117	-115	-1,426	-95
곡물	0	-0	-1	-1	-11	-1
채소	-3	-18	-20	-22	-255	-17
과실	-10	-83	-95	-91	-1,156	-77
사과	-3	-28	-31	-29	-381	-25
배	-1	-7	-8	-7	-95	-6
포도	-1	-7	-7	-7	-93	-6
복숭아	-2	-17	-20	-21	-244	-16
감귤	-0	-6	-8	-7	-88	-6
단감	-0	-1	-1	-1	-14	-1
기타과실	-2	-17	-20	-19	-242	-16
축산	-0	-0	-0	-0	-3	-0
특용·기타	-0	-0	-0	-0	-0	-0

주. 기발효 FTA 베이스라인(RCEP 영향 미반영)에 한-필리핀 FTA 발효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임.

□ (수산업 효과) 수산물 생산 감소액은 15년 연평균 1,022만 원, 15년 누적 1억 5,333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한·필리핀 FTA 발효 이후 수산물 수입은 소금과 어류 등에서 15년 연평균 24,148달러, 15년 누계 36만 2,226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 증가에 따른 수산업 생산 감소는 연체동물이 15년 연평균 522만 원, 15년 누적 7,834만 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갑각류 15년 연평균 268만 원, 15년 누적 4,026만 원의 생산 감소액을 차지함.

표 4. 한·필리핀 FTA 수산업 분야 생산 및 수입 효과

(단위: 달러, 천원)

구분	연평균 수입효과	기간(5년)별 수입 효과			15년 누계 수입효과	연평균 생산효과	기간(5년)별 생산 효과			15년 누계 생산효과
		1~5 년	6~10 년	11~15 년			1~5년	6~10년	11~15년	
전체	24,148	9,874	26,330	36,242	362,226	-10,222	-4,282	-11,419	-14,965	-153,332
어류	10,068	3,904	10,410	15,890	151,019	-1,967	-763	-2,034	-3,105	-29,512
갑각류	4,133	1,771	4,724	5,905	62,001	-2,684	-1,150	-3,067	-3,834	-40,257
패류	2,934	1,254	3,344	4,203	44,008	-7	-3	-8	-10	-100
연체 동물	5,862	2,512	6,699	8,374	87,925	-5,223	-2,238	-5,969	-7,461	-78,337
해조류	5	2	6	7	76	-1	0	-1	-1	-9
그 외 수생 동물	1,146	430	1,146	1,843	17,196	-341	-128	-341	-554	-5,116

제1장 서론

□ 지난 2019년 4월 개시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021년 10월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으며, 양측은 법률검토, 가서명, 협정문 공개, 국내 의견 수렴 등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019년 4월 양국 통상장관간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파트너십 구축 차원에서 한·필리핀 FTA 추진을 합의하였고 공청회 등 필요 절차를 완료한 후 2019년 6월 협상을 개시함.

○ 이후 2년 4개월 간 5차례 공식협상*, 수석대표 및 회기간 협상 등을 통해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2021년 10월 26일에 상품, 원산지, 통관, 경쟁, 경제협력 등 12개 챕터 및 시장개방에 합의하여 최종 타결성과를 도출함.

* (1차) '19.6.4~5 (2차) '19.7.15~17 (3차) '19.8.12~14 (4차) '19.9.10~13 (5차) '20.1.29~31

○ 한·필리핀 FTA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양국이 함께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백신,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미래산업인 헬스케어, 전기자동차, 희소금속, 스마트팜,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 상품 분야에서 양국 모두 전체 수입액 기준 97%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를 약속함.

표 1-1. 한·필리핀 FTA 전체 자유화율

기준	한국	필리핀
품목수	94.8%	96.5%
수입액	97.0%	97.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10.25)

○ 한·아세안 FTA와 RCEP을 통해 필리핀은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만 관세철폐 했으나, 한·필리핀 FTA를 통해 전체 품목의 7.3%p, 수입액의 4.9%p를 추가 개방함.

○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되었던 자동차(관세율 5%), 자동차 부품(3~30%)에 대해 단기 관세 철폐함.

- 화물차·승용차(5%)는 즉시 관세철폐,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5%)는 5년에 걸쳐 관세 철폐하며, 자동차 부품(3~30%) 최대 5년 관세 철폐,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가공식품(5~15%) 15년 관세 철폐가 이루어짐.

- 주요 자동차에 대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쟁국보다 불리했던 수출 여건 대폭 개선하며 중소기업 생산 품목의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인삼(5%)·고추(5%)·배(7%)·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조성함.

□ 양국은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별도로 도입하여 경제성장 및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협력의 원칙·범위·형태·분야, 협력이행위 설치,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약정(Implementing Arrangement)의 체결 등 양측이 상호호혜적 관계 속에서 경제기술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함.

-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생태계, 문화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재권 등 양측간 협력 유망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상호호혜적인 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함.

○ 최근 주요 국제적 관심사항이며 양측 주요 관심사항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및 팬데믹, 백신, 기후변화 협력을 규정함.

*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 백신 및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에 대한 협력이 FTA 협정문에 도입된 최초 사례로, 백신의 경우 백신 제조와 원부자재공급, 공동개발을 위한 R&D를 협력하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와 관련한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 증진 협력을 포함하고 있음.

□ 원산지, 경쟁, 정부조달 등의 챕터에 대한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출에 편의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마련함.

○ 원산지의 경우, 업계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 (PSR)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친화적으로 원산지증명 절차 개선함.

○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쟁 챕터를 신설하여 양국 간 공정 경쟁 촉진 및 경쟁법 집행 협력 토대를 마련함.

□ 필리핀과의 양자 FTA 타결로 아세안 지역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아세안 내 시장접근을 공고화할 것으로 기대됨.

○ 한·필리핀 FTA는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는 다섯 번째 양자 FTA로 아세안 주요국가와 양자 FTA가 구축됨.

○ 한국과 필리핀의 양자 FTA는 양국이 모두 참여한 다자체제의 RCEP 협정과 상호 보완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인구 약 1억 1천만 명(세계 13위), 민간소비 비중이 GDP 대비 70% 선으로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됨.

제2장 한국과 필리핀 간 경제관계

1. 필리핀의 경제 현황

가. 필리핀의 거시경제 현황

□ 필리핀은 과거 경제 성장률 변동이 심하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까지 매년 6~7%의 대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임.

○ 이는 막대한 해외 송금에 기반을 둔 국내 소비,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이 견인하는 서비스 수출, 저인플레이션 유지, 국제수지 호조,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확대 정책에 의한 투자 활성화 등에 기인함.¹⁾

－ 필리핀의 해외 송금은 2017년 기준 GDP의 10%에 육박할 만큼 막대한 규모로 이러한 자금은 필리핀 국내 가족에게 송금되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성장 동력이 되고 있음.²⁾

□ 이러한 호황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빈곤율과 빈부격차, 높은 실업률, 낙후된 농업과 취약한 제조업,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에 편중된 사업 구조, 만성적인 투자 부족, 정부의 부정부패 등 필리핀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지속되고 있음.³⁾

○ 과거 농업 국가였던 필리핀은 제조업 발전 없이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전환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정책의 부재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면서 높은 실업률과 빈곤이 가중됨.

1) 오윤아·신민금. 2013,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국-필리핀 경제협력 방향. 전략지역심층연구 13-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KOTRA. 2021. 2021 KOTRA 국가정보 필리핀

3) 오윤아·신민금. 2013,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국-필리핀 경제협력 방향. 전략지역심층연구 13-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실질 GDP 성장률이 -9.4%로 급감하였으나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2021년 5.5%로 회복세를 보임.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세계 경기침체와 더불어 필리핀의 주요 수입원인 관광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정부의 막대한 조치 시행으로 BPO 산업에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함.⁴⁾
- 2021년 필리핀 정부는 'Build Build Build' 사업 재개 등 인프라 부분의 투자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반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
 - Build Build Build 프로젝트는 두테르트 정부의 중점 사업으로 '16~'22년 동안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교량, 도시개발, 수자원, ICT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 사업임.
- 필리핀의 경상수지는 1981년 이후 약 20년간 GDP 대비 -7.4 ~ -0.1%의 적자를 유지하다 2003년부터 0.3 ~ 5.5%의 흑자로 전환되기도 하였으나 2016년 이후 2020년을 제외하고 다시 적자로 전환됨.
- 최근의 경상수지 적자는 상품무역수지 적자 증가, 서비스 산업 및 2차 산업의 순수익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⁵⁾
- 정부 재정수지 역시 만성적인 적자로 2016년부터 인프라 개발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면서 정부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에 따라 세수는 감소한 반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며 재정수지 적자는 더욱 증가함.

4)KOTRA. 2021. 2022 필리핀 진출전략. KOTRA자료 21-233.

5)주필리핀 대한미국대사관. 2018. 국제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심화. 최근시장정보.

https://overseas.mofa.go.kr/ph-ko/brd/m_3645/view.do?seq=134547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7

표 2-1. 필리핀의 주요 거시 경제 현황 (2016-2021)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실질 GDP 성장률	%	7.1	6.9	6.3	6.1	-9.4	5.5
명목 GDP	십억 달러	797.3	852.6	928.1	1,002.8	919.7	1,010.8
1인당 실질 GDP	달러	2,882.4	3,038.0	3,185.4	3,334.1	2,980.1	3,103.3
대외부채	GDP 대비 %	23.5	22.3	22.8	22.2	27.2	25.9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대비 %	1.8	2.9	5.3	2.5	2.6	4.4
실업률	%	5.5	5.7	5.3	5.1	10.4	8.0
재정수지	GDP 대비 %	-2.3	-2.1	-3.1	-3.4	-7.6	-8.6
경상수지	GDP 대비 %	-0.4	-0.7	-2.6	-0.8	3.2	-1.8
총 수출액	십억 달러	57.4	68.7	69.3	70.9	65.2	73.3
총 수입액	십억 달러	89.4	101.9	119.3	117.4	95.2	125.3
FDI 순유입액	GDP 대비 %	2.6	3.1	2.9	2.3	1.9	2.7
외환보유액	십억 달러	73.4	73.2	71.0	79.8	98.5	99.5
환율	LUC/USD, 연평균	47.5	50.4	52.7	51.8	49.6	49.3

주: 음영처리된 부분은 추정치임.

자료: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Country Data,
http://data.eiu.com/Default.aspx?pubtype_id=913181276

나. 필리핀의 산업구조

□ 2021년 기준 필리핀의 산업구조는 농업이 GDP의 14.2%, 산업이 44.3%, 서비스업이 41.5%를 차지하고 있음.

□ 필리핀의 제조업을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식음료 및 담배가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55.8%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 및 의약품과 전자기기·전기장비 및 기계가 각각 12.4%, 13.1%로 상위 3개 업종이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81.2%를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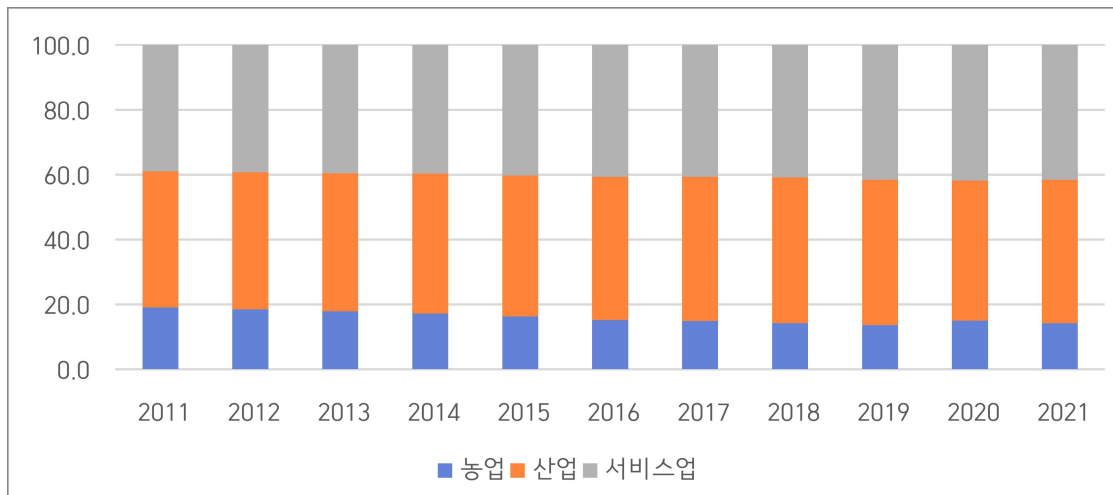
○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취약한데,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중간재를 수입하여 필리핀 현지 공장에서 조립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구조로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통해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필리핀은 여타 동남아국가들보다 외국인직접투자 규정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최근 지역별 투자유치 기관을 운영하고 자동차

산업 등을 중심으로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정책을 도입 중임.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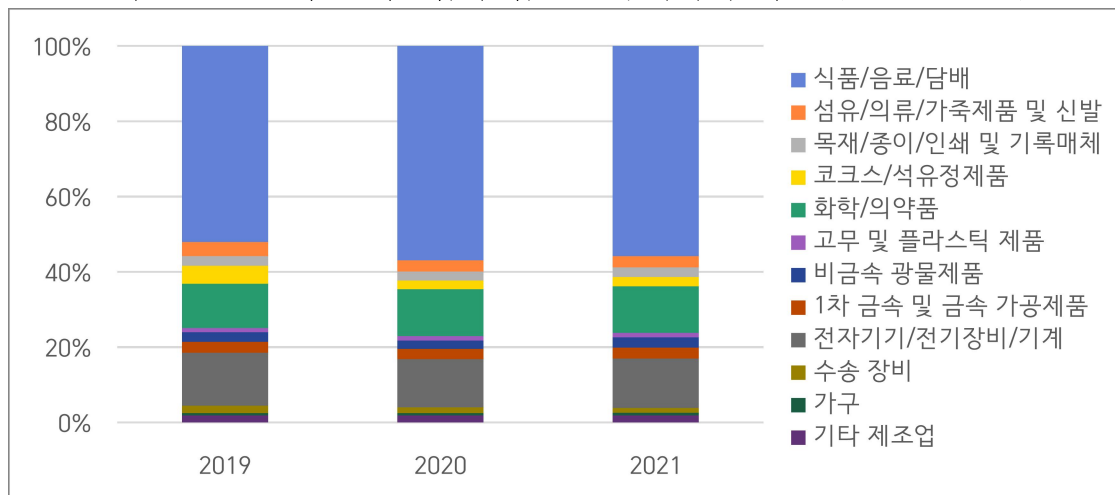
- 산업별 고용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농업 부문이 필리핀 전체 고용의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부문이 18.4%, 서비스 부문이 57.8%임.⁷⁾

그림 2-1. 필리핀의 산업별 GDP 비중 (2011-2021)



자료: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Country Data,
http://data.eiu.com/Default.aspx?pubtype_id=913181276

그림 2-2. 필리핀 제조업의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2019-2021)



자료: 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 National Account,
<https://psa.gov.ph/national-accounts/base-2018/estimates>

6) KOTRA. 2021. 2021 필리핀 진출전략. KOTRA 자료 21-064

7) 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 Labor Force,
<https://psa.gov.ph/content/employment-rate-june-2022-estimated-940>

다. 필리핀의 무역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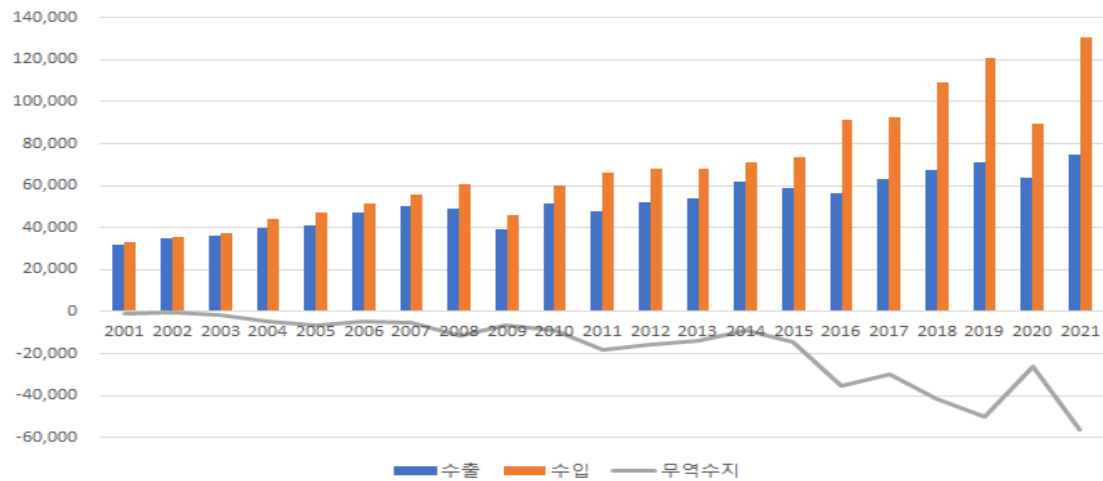
- 필리핀은 민간 소비 비중이 GDP 대비 70%로 거대 내수 시장을 갖고 있으나 제조업이 취약하여 공산품과 소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임.⁸⁾
-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여 적자가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 수출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한 748억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45.4% 급증한 1,306억 달러를 기록하여 사상 최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 필리핀의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인데, 특히 2016년부터 수출에 비해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세계경기 침체와 더불어 필리핀 내 코로나 확산 금지를 위한 지역사회 봉쇄 조치, 출입국 제한, 일부 업종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해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함.
- 필리핀의 교역 구조는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및 전기·전자, 자동차 및 부품 분야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필리핀 현지에서 조립하여 수출하는 가공무역을 특징으로 반도체 및 전기·전자 관련 수출입이 압도적임.
- 전자 및 반도체 관련 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필리핀 현지에 진출하여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조해 수출하는 구조로 필리핀은 부가가치가 높은 공정보다는 단순 조립, 패키징, 테스트 등 단순 공정을 담당함. 2021년 기준 기계류와 전자기기가 전체 수출의 63.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수입의 경우에도 전자 및 반도체 제조를 위한 중간재 수입이 높아 기계류와

8)KOTRA. 2021. 2021 필리핀 진출전략. KOTRA 자료 21-064

전자기기 수입이 전체 수입의 3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연료 12.4%, 화학품 9.1%, 금속류 7.8% 순으로 수입 비중이 높음.

그림 2-3. 필리핀의 수출입 추이(2001-2021)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https://data.imf.org/?sk=9D6028D4-F14A-464C-A2F2-59B2CD424B85&sId=1390030341854>

표 2-2. 필리핀의 수출 구조 (2021) 표 2-3. 필리핀의 수입 구조 (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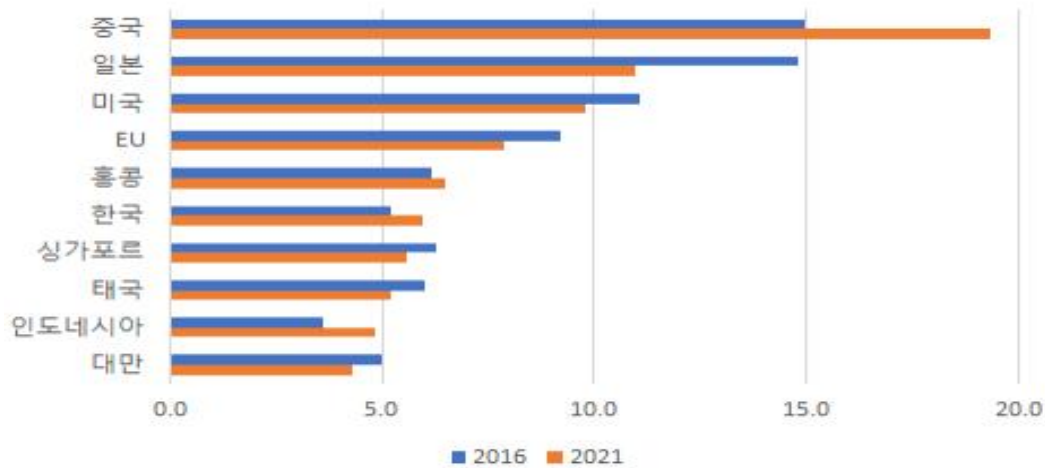
HS 코드	상품군	비중	HS 코드	상품군	비중
84-85	기계류와 전자기기	63.7	84-85	기계류와 전자기기	34.5
72-83	금속류	5.8	27	연료	12.4
06-15	식물성 생산품	5.0	28-38	화학품	9.1
90-99	기타	4.5	72-83	금속류	7.8
16-24	식료품	3.6	86-89	운송기기	7.0
86-89	운송기기	2.9	06-15	식물성 생산품	5.4
25-26	광물	2.7	16-24	식료품	5.3
39-40	플라스틱 또는 고무	2.5	39-40	플라스틱 또는 고무	4.3
68-71	석재와 유리	1.9	90-99	기타	3.9
28-38	화학품	1.8	01-05	동물성 생산품	3.0
50-63	섬유와 의류	1.4	44-49	목재	2.2
44-49	목재	1.3	50-63	섬유와 의류	1.6
27	연료	1.2	68-71	석재와 유리	1.5
41-43	원피와 가죽	1.0	25-26	광물	1.5
01-05	동물성 생산품	0.6	64-67	신발류	0.3
64-67	신발류	0.2	41-43	원피와 가죽	0.3
총		100	총		100

자료: World Bank, WITS, <http://wits.worldbank.org/WITS/WITS/AdvanceQuery/RawTradeData/QueryDefinition.aspx?Page=RawTradeData>

- 필리핀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2021년 기준 중국이 필리핀 전체 무역의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본이 11.0%, 미국이 9.8%, EU가 7.9%를 차지하고 있음.
- 필리핀의 수출입 주요국을 살펴보면 미국과 EU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와 인접국임.
- 주요 교역국과의 수출입을 살펴보면 미국과 홍콩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역적자인데,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2021년 167억 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29.9%를 차지함.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한국과의 교역에서도 높은 무역수지 적자를 보임.

그림 2-4. 필리핀의 10대 주요 교역국의 교역 비중

(단위: %)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https://data.imf.org/?sk=9D6028D4-F14A-464C-A2F2-59B2CD424B85&sId=1390030341854>

표 2-4. 필리핀의 주요 수출국

(단위: 백만 달러, %)

	지역	2016	2021
1	미국	8,671(15.4)	11,859(15.9)
2	중국	6,192(11.0)	11,531(15.4)
3	일본	11,674(20.8)	10,722(14.3)
4	홍콩	6,583(11.7)	9,932(13.3)
5	EU	6,792(12.1)	8,060(10.8)
6	싱가포르	3,701(6.6)	4,195(5.6)
7	태국	2,130(3.8)	3,451(4.6)
8	대만	1,863(3.3)	2,664(3.6)
9	한국	2,095(3.7)	2,574(3.4)
10	말레이시아	1,189(2.1)	1,892(2.5)
	전세계	56,126(100.0)	74,758(100.0)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https://data.imf.org/?sk=9D6028D4-F14A-464C-A2F2-59B2CD424B85&sId=1515619375491>

표 2-5. 필리핀의 주요 수입국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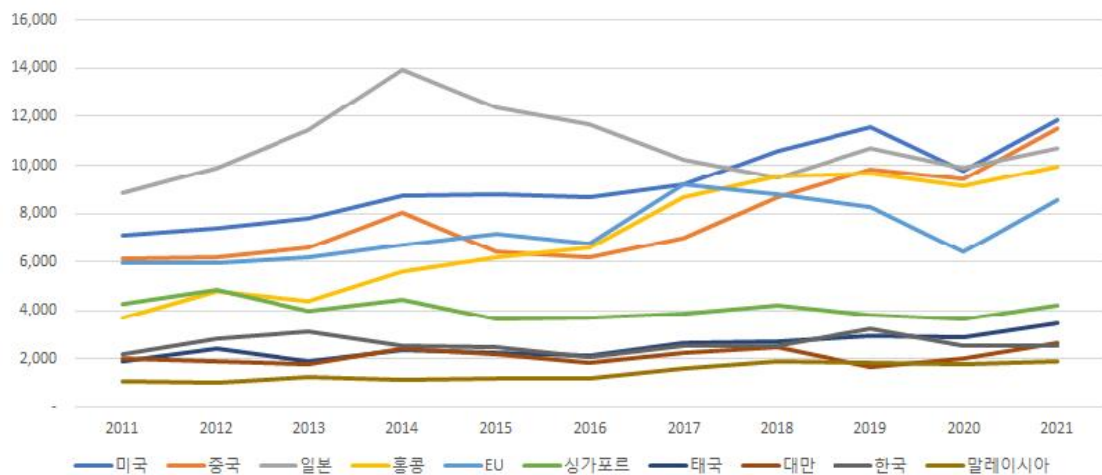
	지역	2016	2021
1	중국	15,916(17.4)	28,210 (21.6)
2	일본	10,196(11.2)	11,832 (9.1)
3	한국	5,623(6.1)	9,630 (7.4)
4	인도네시아	4,708(5.1)	9,030 (6.9)
5	미국	7,681(8.4)	8,278 (6.3)
6	EU	6,799(7.4)	8,164 (6.3)
7	싱가포르	5,597(6.1)	7,247 (5.6)
8	태국	6,726(7.4)	7,238 (5.5)
9	대만	5,519(6.0)	6,179 (4.7)
10	말레이시아	3,417(3.7)	5,573 (4.3)
		91,427(100.0)	130,570 (100.0)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https://data.imf.org/?sk=9D6028D4-F14A-464C-A2F2-59B2CD424B85&sId=1514498277103>

□ '10~'21년 필리핀의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까지 대일본 수출이 증가추세를 보이며 미국과 중국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8년부터는 미국에 역전됨.

○ 반면 미국, 중국, 홍콩에 대한 수출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2020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한국 수출은 증감을 반복하며 뚜렷한 추세가 없음.

그림 2-5. 필리핀의 10대 주요 수출국 수출 현황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https://data.imf.org/?sk=9D6028D4-F14A-464C-A2F2-59B2CD424B85&sId=1515619375491>

2. 양국 간 교역 현황

가. 양국 교역 관계

□ 한국은 1949년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필리핀과 수교를 맺었으며 현재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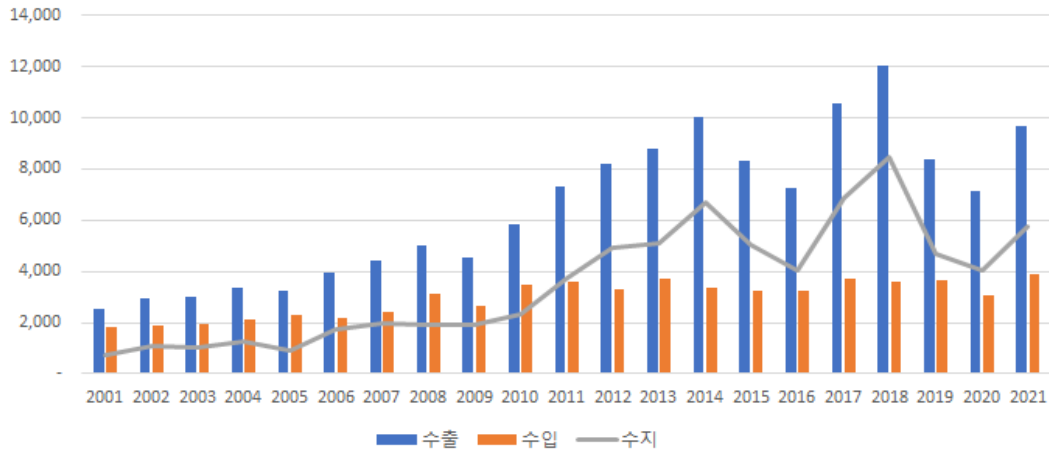
□ 필리핀의 거대 내수 소비시장과 풍부한 인력,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다수의 한국 기업이 제조업, 서비스, 건설,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리핀 현지에서 진출함.

- 2021년 기준 양국 간 교역액은 약 136억 달러로 필리핀은 한국의 제17위 교역 상대국이며(수출은 14위, 수입은 24위), 수입에 비해 수출 증가가 커 '15~'16년, '19~'20년을 제외하고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 추세임.
- 2021년 한국의 필리핀에 대한 수출은 97억 달러, 수입은 39억 달러로 58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 2001년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은 25억 달러에서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15~'16년 감소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주력 제품인 반도체 판매 부진, 국제유가 하락 및 필리핀 페트로론 정유 공장 증설로 인한 정유 수출 부진 등에 기인함.⁹⁾ 이후 수출은 2018년 12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19~'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감소한 후 2021년에 다시 증가함.
- 수입의 경우 2001년 18억 달러에서 2010년 35억 달러까지 증가한 이후 뚜렷한 추세 없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한국은 필리핀의 10대 주요 교역국으로 필리핀 전체 교역의 5.9%를 차지하며 6위를 기록함.
- 필리핀의 대한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3.4%, 수입은 전체 수입의 7.4%로 각각 9위와 3위에 해당됨.

9) KOTRA. 2016. 필리핀, 글로벌 불황에도 매년 수입 증가. 경제·무역 뉴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151075

그림 2-6. 한국의 대필리핀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무역,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DetailPopup.screen>

표 2-6. 한·필리핀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대비 %)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수 출	금액	8,211	8,783	10,032	8,318	7,278	10,594	12,037	8,365	7,126	9,659
	증가율	11.9	7	14.2	△17.1	△12.5	45.5	13.6	△30.5	△14.8	35.5
수 입	금액	3,284	3,706	3,331	3,252	3,229	3,702	3,569	3,658	3,086	3,894
	증가율	△8.1	12.9	△10.1	△2.4	△0.7	14.7	△3.6	2.5	△15.6	26.2
무역수지		4,927	5,077	6,701	5,066	4,049	6,892	8,468	4,707	4,040	5,765
총 교역액		11,495	12,489	13,363	11,570	10,507	14,296	15,606	12,023	10,212	13,553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무역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DetailPopup.screen>

나. 주요 교역 품목

-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입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상위 3~4개 품목이 수출입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2021년 기준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동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 산업용 전기기기, 과일류, 동제품 등임.
- 2021년 기준 수출 품목의 경우 직접회로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37.6%, 휘발유 및 경유가 각각 9.4%, 6.1%를 차지함. 수입 품목은 직접회로반도체가 전체 수입의 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동기 16.4%, 과일류 7.0%, 동

과 및 스크랩이 6.5%로 순임.

- 삼성전자, 삼성전기, LG 전자, SFA 반도체 등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전자 제품 및 반도체 제조를 위해 중간재를 수입하여 공정 과정을 거친 후 재수출하는 가공무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반도체 수출입의 비중이 높음.

표 2-7. 한국의 대필리핀 주요 교역 품목(2021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품목				수입 품목			
코드	품명	금액	비중	코드	품명	금액	비중
8311	집적회로반도체	3,632	37.6	8311	집적회로반도체	851	21.9
1331	휘발유	907	9.4	8422	전동기	639	16.4
1332	경유	592	6.1	0116	과실류	272	7.0
6222	동조가공품	350	3.6	6221	동괴및스크랩	253	6.5
2212	안료	277	2.9	8421	제어용케이블	189	4.9
2262	의약품	252	2.6	0154	연초류	96	2.5
2140	합성수지	174	1.8	8332	변성기	88	2.3
7461	선박	171	1.8	8342	연결부품	79	2.0
8343	인쇄회로	121	1.3	8313	개별소자반도체	75	1.9
8313	개별소자반도체	121	1.3	1130	동광	69	1.8
소계		6,597	68.3	소계		2,611	67.1
전체		9,659	100.0	전체		3,894	100.0

주: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무역,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ItemImpExpList.screen>

-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였던 자동차 수출은 최근 2~3년 동안 급감하였는데, 이는 2018년 1월에 도입된 특별소비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자동차 수요 감소, 한국산 완성차에 대한 잠정 관세부과, 가격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

-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필리핀 금속노동자협회(PMA)가 '14~'18년 동안 완성차 수입이 급증한 사실 관련 세이프가드 발동을 촉구함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세이프가드 조사를 실시함. 예비조사 결과 산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수입 승용차 및 경상용차에 대한 잠정 관세가 부과됨.¹⁰⁾ 그러나 2021년 8월 필리핀 정부가 최종적으로 산업 피

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세이프가드가 해제됨.

- 현대자동차의 경우 필리핀 독점 딜러가 한국, 인도 등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수입해 필리핀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약 8% 내외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필리핀 현지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은 현대차는 이러한 유통 구조와 수입차에 적용되는 높은 관세로 인해 경쟁사인 도요타(시장 점유율 38.7%)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짐. 그러나 최근 현지 판매법인 설립과 한-필리핀 FTA 타결로 가격 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¹¹⁾

표 2-8. 한국의 대필리핀 자동차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승용차	금액	275	216	192	196	284	251	186	83	14	19
	비중	3.4	3.3	2.5	1.9	2.4	3.9	2.4	1.5	1.0	0.2
화물자동차	금액	88	135	101	142	122	157	155	132	74	37
	비중	1.1	1.5	1.0	1.7	1.7	1.5	1.3	1.6	1.0	0.4

주: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무역,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ItemImpExpList.screen>

-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을 가공 단계별로 살펴보면 가공무역으로 인해 중간재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편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 중 중간재의 비중은 2001년 78.5% → 2011년 82.9% → 2021년 88.1%로 더욱 높아지고 있는 반면 동기간 동안 자본재의 비중은 15.6% → 10.4% → 5.4%로 감소함.

10) KOTRA. 2021. KOTRA 해외시장 뉴스. 필리핀 수입자동차 세이프가드 잠정관세 부과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87033

11) 더벨(the bell). 2021. 현대차, '일본차 성지' 필리핀서 직접 판매로 승부수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11161539587280107422>

표 2-9. 한국의 대필리핀 가공 단계별 수출 구조

(단위: 천 달러, %)

연도	2001		2011		2021	
가공 단계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차 상품	4	0.2	45	0.6	52	0.5
소비재	145	5.7	433	5.9	412	4.3
자본재	396	15.6	767	10.4	519	5.4
중간재	1,990	78.5	6,088	82.9	8,506	88.1
기타	1	0.0	7	0.1	170	1.8
총계	2,536	100.0	7,340	100.0	9,659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무역

<https://stat.kita.net/stat/kts/use/BecCtrDetailPopup.screen>

□ 반면 한국의 대필리핀 가공 단계별 수입은 중간재의 비중은 낮아지고 1차 상품, 소비재, 자본재의 비중이 높아진 특징을 보임.

○ 중간재는 2001년 75.7%를 차지하였으나 2011년 48.3%까지 감소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21년 46.6%를 기록함.

○ 반면 1차 상품은 2001년 2.9% → 2021년 10.6%로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소비재는 7.1% → 15.9%, 자본재는 14.3% → 26.5%로 증가하며 수입이 다 변화되고 있음.

표 2-10. 한국의 대필리핀 가공 단계별 수입 구조

(단위: 천 달러, %)

연도	2001		2011		2021	
가공 단계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차 상품	52	2.9	1,069	29.9	414	10.6
소비재	129	7.1	503	14.1	621	15.9
자본재	261	14.3	275	7.7	1,032	26.5
중간재	1,377	75.7	1,724	48.3	1,816	46.6
기타	—	0.0	—	0.0	12	0.3
총계	1,819	100.0	3,571	100.0	3,895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무역

<https://stat.kita.net/stat/kts/use/BecCtrDetailPopup.screen>

3. 양국 간 투자 현황

가. 필리핀의 FDI 유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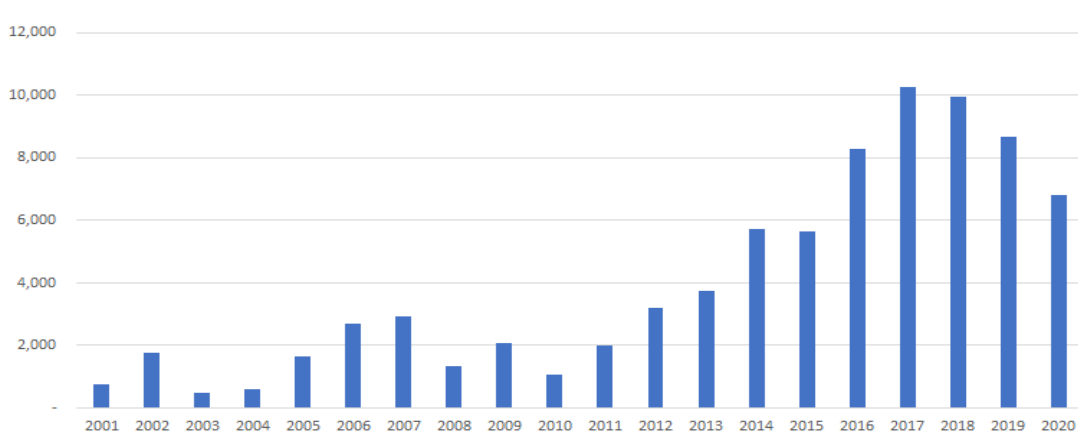
□ 필리핀의 외국인투자(FDI) 유입액은 2011년 20억 달러에서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7년 103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며 2020년 68억 달러에 그침.

○ 최근 필리핀의 FDI 감소는 미중분쟁, 글로벌 경기 침체, 필리핀의 조세 인센티브 축소 불안감,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락다운 장기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¹²⁾

○ GVC 재편으로 탈 중국화 현상이 발생하며 그 대안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부상하고 있으나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필리핀 헌법으로 인해 지역 경쟁국에 비해 FDI 유입량이 부진한 편임. 이에 필리핀 정부는 창업 간소화, 건설 인허가 처리 개선, 소액 투자자 보호 강화, 외국인 투자법 개정 등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¹³⁾

그림 2-7. 필리핀의 FDI 유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World Bank, Foreign Direct Investment,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BX.KL.T.DINV.CD.WD?end=2020&locations=PH&start=1970&view=chart>

12) KOTRA. 2021. 2022 필리핀 진출전략. KOTRA자료 21-233

13) KOTRA. 2021. 2022 필리핀 진출전략. KOTRA자료 21-233.

-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¹⁴⁾를 살펴보면 '10~'20년 누적 기준 제조업 29.5%, 금융 및 보험업 21.6%, 부동산업 10.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8.9% 순으로 전체 투자의 70.4%를 차지함.¹⁵⁾
- 국가별로는 2020년 누적 기준 일본 26.7%, 네덜란드 22.6%, 미국 11.2%, 싱가포르 7.2%, 홍콩 6.1% 순이며, 상위 5개국이 전체 투자의 73.8%를 차지하고 있음. 다음 순으로 스위스 3.2%, 한국이 2.8%로 우리나라는 7위를 기록함.¹⁶⁾

나. 한국의 필리핀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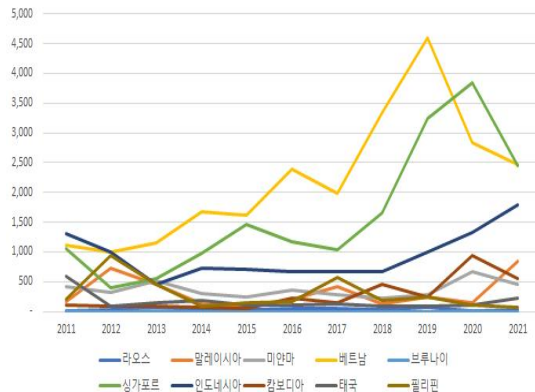
- 한국은 2021년 기준 아세안 10개국 중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이 투자하였으며, 필리핀에 대한 투자는 8번째로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임.
- '01~'21년 동안 한국의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누적 투자는 베트남이 34.7%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싱가포르 24.0%, 인도네시아 15.3% 순으로 상위 3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73.9%로 집중화되어 있음. 필리핀에 대한 투자 비중은 4.8%로 아세안 10개국 중 7위에 해당됨.

14) 외국인직접투자 중 비거주자 순자기자본(non-residents' net equity capital)에 한함.

15) BANGKO SENTRAL NG PILIPINAS, Statistics-External Accounts, <https://www.bsp.gov.ph/SitePages/Statistics/External.aspx?TabId=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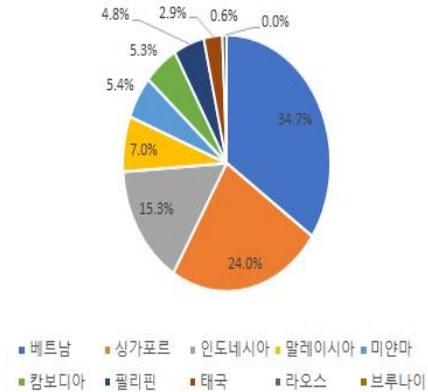
16) IMF DATA, CDIS(Coordinated Direct Investment Survey),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227424>

그림 2-8. 한국의 아세안 직접투자 추이
(2011~2021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tats.koreaexim.go.kr/sub/countryStatistics.do>

그림 2-9. 한국의 아세안 국가별 집적
투자 비중 (2001~202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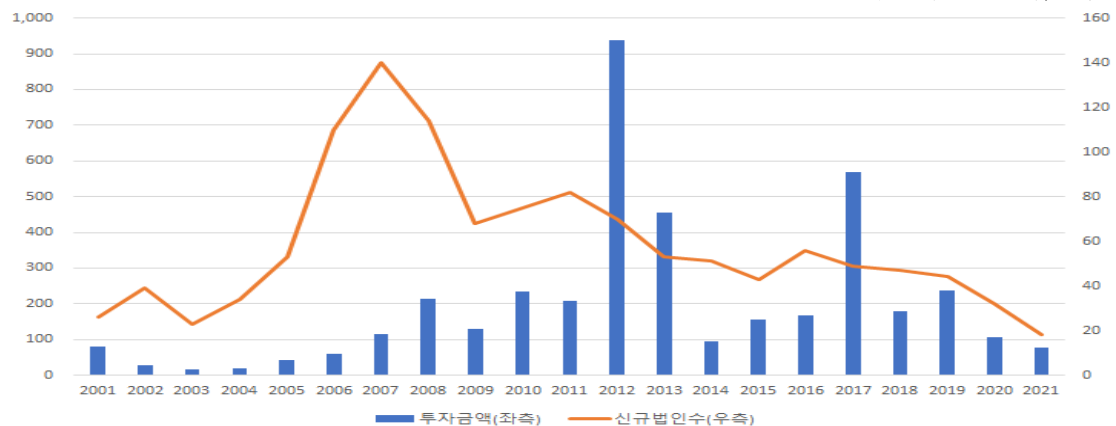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tats.koreaexim.go.kr/sub/countryStatistics.do>

□ 한국의 대필리핀 투자는 연도별로 변동성이 높은 편인데, 2001년 7,900만 달러에서 2012년 9억 3,8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21년 7,800만 달러에 그치며 20년 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감소함.

○ 투자금액이 높았던 연도를 살펴보면 2012년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8억 9,200만 달러로 급증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과 2017년에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각각 4억 1,600만 달러, 4억 5,700만 달러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2-10. 한국의 필리핀 직접 투자 추이(2001~2021년)

(단위: 백만 달러, 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sub/countryStatistics.do>

□ 한국의 대필리핀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도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편인데,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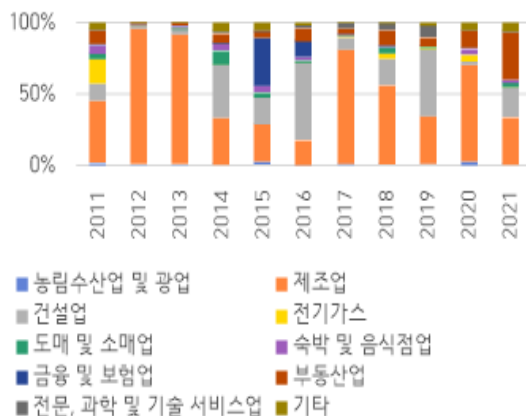
조업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건설업, 부동산업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편임.

○ 제조업에 이어 '01~'10년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여타 업종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였고, '14~'21년에는 건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짐.

○ 최근 건설에 대한 투자 증가는 필리핀 정부가 민관협동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Build, Build, Build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에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포스코, GS 건설 등이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임.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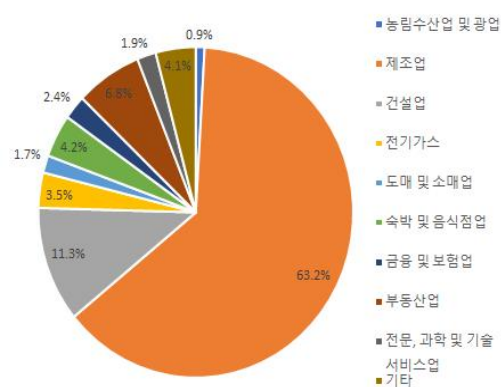
□ '01~'21년 한국의 대필리핀 업종별 누적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전체 투자의 6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건설업 11.3%, 부동산업 6.8%, 숙박 및 음식점업 4.2%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2-11. 한국의 필리핀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 (2011~2021년)
(단위: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

그림 2-12. 한국의 필리핀 업종별 투자 비중 (2001~2021년)
(단위: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

17) KOTRA. 2021. 2022 필리핀 진출전략. KOTRA자료 21-233. pp,25~26

다. 필리핀의 한국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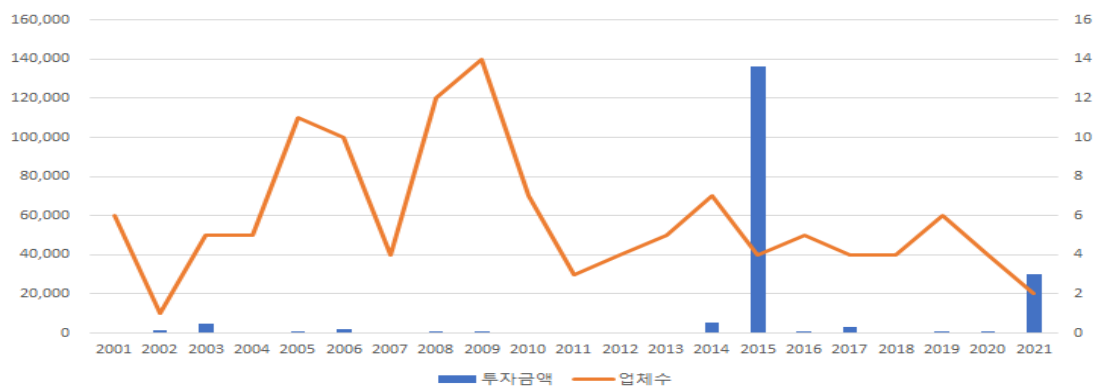
□ 필리핀의 대한국 투자금액은 '01~'21년 누적 기준 총 1억 9,115만 달러이며, 업종별 누적 투자 비중은 금융·보험이 68.4%, 숙박·음식점이 19.3%로 전체 투자의 87.7%를 차지하고 있음.

○ 필리핀의 대한국 투자는 2015년 1억 3,636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 3,009만 달러임. 2015년과 2021년을 제외한 기타 연도의 투자는 550만 달러 미만으로 낮은 수준임.

－ 2015년에는 금융·보험업에 1억 3,072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21년에는 숙박·음식업에 3,0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짐.

그림 2-13. 필리핀의 한국 직접 투자 추이 (2001~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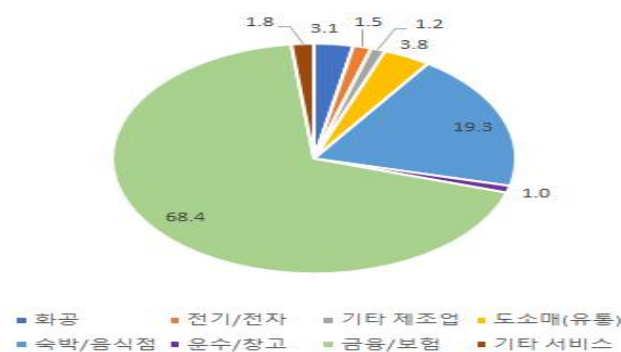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https://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그림 2-14. 필리핀의 한국 업종별 투자 비중 (2001~2021년)

(단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https://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제3장 한·필리핀 FTA의 주요 내용

1. 상품 협정문 분석

가. 양허유형

□ 한·필리핀 FTA의 상품양허를 살펴보면, 한국은 HSK 2017(전체 12,232개 품목), 필리핀은 AHTN 2017(전체 11,202개 품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8개의 양허유형으로 구분됨.

* AHTN(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 2017의 정식 품목수는 8단위 기준으로 10,813개이나 필리핀의 경우 상품 양허표에서 ex-out 품목과 in-quota 및 out-quota 품목을 구분하여 한·필리핀 FTA의 양허유형을 명시한 관계로 이하에서는 필리핀의 품목수를 11,202개로 간주하여 분석함.¹⁸⁾

○ 양허유형은 즉시철폐(Cat 0), 3년 균등철폐(Cat 3), 5년 균등철폐(Cat 5), 7년 균등철폐(Cat 7), 10년 균등철폐(Cat 10), 15년 균등철폐(Cat 15), 15년까지 기준세율의 50%로 감축(SL), 기준세율 유지(EX)로 구분됨.

표 3-1. 한·필리핀 FTA의 양허유형

양허유형	의미
Cat 0	즉시철폐
Cat 3	3년 균등철폐
Cat 5	5년 균등철폐
Cat 7	7년 균등철폐
Cat 10	10년 균등철폐
Cat 15	15년 균등철폐
SL	15년까지 기준세율의 50%로 감축
EX	기준세율 유지

자료: 한·필리핀 FTA 협정문 부속서 2-가.

○ 한·아세안 FTA에 따라 한국과 필리핀은 일반품목(NT)에 대한 관세를 2010년부터 모두 철폐기로 한 바 있음.

18) 다만 필리핀은 HS 27160000(전기에너지) 품목이 부재하여 전체 품목수가 10,812개임.

- 단, 필리핀의 경우 모든 관세품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품목이나 합의된 계획에 기재된 관세품목에 대하여 2012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철폐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여기서 “합의된 계획에 기재된 관세품목에 대해서”라는 단서가 붙는 이유는 필리핀에게 5% 제한을 넘어서는 품목에 대하여 2012년까지의 관세 철폐 기한 연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임.

- 한·아세안 FTA의 민감품목(SL)에 대해서 양국 모두 2016년 1월 1일까지 0~5%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하였고, 초민감품목(HSL)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하거나 일정 비율로 관세 감축 또는 관세할당(TRQ)을 적용하였음.

나. 양허수준

- 한·필리핀 FTA를 계기로 한국과 필리핀의 전체 양허수준은 수입품목수 기준 한국 94.8%, 필리핀 96.5%이며, 수입액 기준(2017-18년 평균)으로는 한국 97.0%, 필리핀 97.6%임.
- 품목수 기준 한·아세안 FTA(2007년 발효) 및 RCEP(2022년 발효)을 합산한 자유화율 대비 한국은 0.7%p, 필리핀은 7.3%p 자유화율이 증가하였음.
 - 한국은 한·아세안 FTA를 통해 이미 89.9%를 양허한 상태이며, RCEP에서 4.3%를 추가로 자유화하였고, 이번 협상을 통해 0.09%는 즉시, 0.49%는 3~5년, 0.11%는 10~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를 계기로 품목수 기준 76.5%를 양허하였고, RCEP을 통해 12.8%를 추가로 자유화하였으며, 이번 협상에서 3.07%는 즉시, 2.07%는 5년, 2.19%는 발효 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상대국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준('17~'18년 평균)으로 하면 한국은 8.1%p, 필리핀은 4.9%p 자유화율이 증가하였음.

- 한국은 한·아세안 FTA와 RCEP을 통해 이미 수입액 기준 89.0%를 양허한 상태이며, 이번 협상을 통해 대필리핀 전체 수입의 7.82%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그 외 양허유형의 비중은 0.25%).
-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를 계기로 수입액 기준 84.7%를 양허하였고, RCEP에서는 8.1%를 추가 자유화하였으며, 이번 협상에서 3.03%는 무관세로, 1.29%는 5년 이내, 0.59%는 발효 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표 3-2. 한·아세안 FTA, RCEP 및 한·필리핀 FTA 자유화율(%) 비교

구분	한국		필리핀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한·아세안 FTA	89.9	87.0	76.5	84.7
RCEP	94.2	89.0	89.2	92.7
한·필리핀 FTA	94.8	97.0	96.5	97.6
추가 자유화율	0.7	8.1	7.3	4.9

주: 수입액은 2017~18년 평균.

- 한·필리핀 FTA를 통해 한국이 필리핀에게 추가로 개방하는 품목(85개) 중 가장 대표적인 품목은 바나나이며, 그 밖에 의복, 가공식품 등이 있음.
- 바나나(HS 0803900000)는 이번 FTA를 통해 자유화한 품목의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30%의 관세는 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함.
- 다음으로 수입이 있는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남성용 재킷과 블레이저(HS 6203310000) 및 바지(HS 6203410000), 면으로 만든 남성용 셔츠(HS 6205200000)와 면으로 만든 여성용 바지(HS 6204629000) 등은 기존의 5% 관세를 3년 내에 철폐함.
- 가공식품인 기타 과일 주스(HS 2009399000)와 기타 당류 및 당시럽 혼합물(HS 1702909000)에 대한 관세 역시 철폐할 예정이나 유예기간을 15년으로 설정함.

- 한·필리핀 FTA에서 필리핀이 한국에게 추가로 개방하는 품목 가운데 대한국 수입금액이 높은 품목은 대부분 자동차 산업에 해당하는 품목임.
- 가장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은 기타 화물차(HS 87042129)로 이번 FTA에서 자유화한 품목의 전체 수입에서 11.2%를 차지하며, 기존 5%의 관세는 FTA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함.
- 이와 함께 소형승용차(HS 87032355)와 트럭(HS 87042125)의 5% 관세도 즉시 철폐함.
- 하이브리드 승용차(HS 87034063 등)와 전기차(HS 87036063 등)의 경우 기존 5% 관세를 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함.
- 최종적으로 관세가 남아있는 품목의 비중은 품목수 기준 한국 5.2%, 필리핀 3.5%이며,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한국 3.0%, 필리핀 2.4%임.
- 한국은 전체 품목의 5.2%에 해당하는 630개 품목의 관세가 잔존하게 되는데 이 중 615개는 기준세율을 유지하며 15개는 FTA 발효 15년에 기준세율의 50%까지 관세를 감축함.
 - 이에 해당하는 품목을 살펴보면 쌀을 비롯하여 곡물·과일 및 채소, 육류 및 낙농품 등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주를 이룸.
 - 기준세율을 유지하는 품목 중 '17~'18년 기간에 필리핀으로부터 수입 실적에 있는 품목은 106개이고, 이 중 파인애플(HS 0804300000)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밖에 설탕을 첨가한 과일 칵테일 통조림(HS 2008971010), 망고(HS 080450200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전복(HS 1605579000) 등도 수입이 많은 편임.

- 관세를 감축하는 품목 중 분석기간에 수입이 발생한 품목은 6개로 수산 가공품(냉동갑오징어, 쥐치포, 게)과 기계 품목(볼베어링)임.

○ 필리핀이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지 않은 품목은 총 388개이며, 여기에서 44개 품목은 관세 감축, 344개 품목은 기본세율 유지 품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해당 품목에는 자동차, 가공식품, 육류 및 낙농품, 화학·고무·플라스틱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관세 미철폐 품목(344개) 중 '17~'18년 기간에 한국으로부터 수입 실적이 있는 품목은 198개이며, 하이브리드의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HS87022071, HS87022072, HS87022079)나 중형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HS87035065, HS87037065)와 같은 자동차품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필리핀이 관세를 감축기로 한 품목(즉 SL 유형)으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유사한 물품(HS 39239090)을 비롯한 화학·고무·플라스틱과 자동차용 바닥깔개(HS 57050092, HS57050099)를 포함한 섬유·직물을 들 수 있음.

표 3-3. 한국의 대필리핀 양허수준

양허유형	품목 수		수입액	
	개수(개)	비중(%)	금액(\$)	비중(%)
AKFTA/RCEP	11,517	94.15	3,234,944,630	88.97
Cat 0	11	0.09	257	0.00
Cat 3	27	0.22	8,645,046	0.24
Cat 5	33	0.27	284,343,377	7.82
Cat 10	3	0.02	226	0.00
Cat 15	11	0.09	330,229	0.01
최종 자유화율	11,602	94.85	3,528,263,763	97.04
SL	15	0.12	438,195	0.01
EX	615	5.03	107,151,830	2.95
전체	12,232	100	3,635,853,788	100

주 1: 수입액은 2017~18년 평균.

2: 양허유형에서 AKFTA/RCEP은 한아세안 FTA로 이미 무관세 적용을 받거나 RCEP 양허 스케줄에 따라 관세 철폐 예정인 품목.

표 3-4. 필리핀의 대한민국 양허수준

양허유형	품목 수		수입액	
	개수(개)	비중(%)	금액(\$)	비중(%)
AKFTA/RCEP	9,993	89.21	6,012,761,988	92.72
Cat 0	344	3.07	196,196,765	3.03
Cat 5	232	2.07	83,422,895	1.29
Cat 15	245	2.19	38,006,529	0.59
최종 자유화율	10,814	96.54	6,330,388,177	97.62
SL	44	0.39	14,196,863	0.22
EX	344	3.07	140,123,199	2.16
전체	11,202	100	6,484,708,239	100

주 1: 수입액은 2017~18년 평균.

2: 양허유형에서 AKFTA/RCEP은 한아세안 FTA로 이미 무관세 적용을 받거나 RCEP 양허스케줄에 따라 관세 철폐 예정인 품목.

2. 기타 챕터

가. 원산지 규정 (4장)

□ 한·필리핀 FTA 4장은 원산지 규정과 부속서(제4장에 따른 원산지 규정에 대한 원산지 운영 절차, 품목별 원산지 규정, 역외가공지역위원회)로 구성

○ 원산지 규정(제4장)은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일반 기준을 규정함.

－ 원산지 기준으로 (i)완전생산 기준, (ii)원산지 재료생산기준, (iii)실질적 변형기준(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규정함.

－ 세번변경기준 미충족시에도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상품 FOB의 10% 이하인 경우 원산지 인정하는 미소기준, 최종 제품에 투입된 다른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의 누적을 허용하는 등 보충규정을 도입

○ 원산지 규정에 대한 원산지 운영 절차는 원산지 증명 방식, 특혜관세대우 신청 절차, 원산지 검증 방식 등에 대해 규정하며, 한·필리핀 FTA에서는

4장의 부속서 4-가로 포함되었음.

○ 개별 품목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은 부속서 4-나로 규정

-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개별품목의 생산과정, 교역 패턴,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고려하여 비원산지 재료 사용할 경우에도 원산지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부속서 4-다는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의 설치와 정기적인 회합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

- 양 당사국은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을 기초로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결정하고 역외가공지역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며 관련된 상품 목록 및 구체적인 절차를 작성

□ 한·필리핀 FTA 원산지 규정에서는 원산지 증명 방식에서 인증수출자 자율 증명 외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을 10년 이내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수입 후 1년 이내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FTA 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함.

○ 원산지 증명방식은 부속서 4-가에 따라 기관증명 방식과 인증수출자 (AEO)의 자율증명 방식을 따르기로 하며,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는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이행될 것을 규정하여 기업의 원산지 증명이 용이하도록 개선함. (부속서 4-가 규칙 2)

○ 수입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경우, 수입일 후 1년 내에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더 긴 기간 내에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고 초과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함. (부속서 4-가 규칙 12)

- 한·필리핀 FTA에서는 전 품목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작성하여 기업의 FTA 활용에 있어 편의성을 제고 (부속서 4-나)
- 한·아세안 FTA에서는 전체 5,387개 품목 중 1,437개 품목에 대해서만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존재하여 일부 품목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부재하여 기업에 애로로 작용함.
- 한·필리핀 FTA에서 의류, 가공커피, 소시지,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개선하고, 모든 품목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여 기업의 FTA 활용률을 개선 가능
- 부속서 4-다를 통해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여, 추후 한국의 상황을 검토하고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결정할 수 있음.
- 한·아세안 FTA에서는 역외가공을 통해 생산된 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을 허용하였고,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ASEAN의 특혜관세 혜택을 가능하도록 합의한 바 있음. RCEP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필리핀 FTA에서는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에 대한 내용이 부속서로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추후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5장)

- 한·필리핀 FTA 제5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장은 총 21조로 구성되며, 양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예측가능성, 일관성, 투명성을 보장하고, 통관 절차의 효율성 강화와 간소화, 양국 간 세관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 3-5. 한·필리핀 FTA 5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협정문 주요 구성

조항	주요 내용
4조 일관성	관세법과 규정이 관세영역에 일관되게 이행·적용되도록 보장
5조 투명성	이해관계인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인터넷에 신속하게 관세법과 관련 절차를 공표
6조 문의처	통관 관련 문의에 답변하고 수입, 수출 및 통과에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의처 지정
7조 통관 절차	통관 절차와 관행의 무역원활화 보장, 자국의 관세법 및 세계관세기구의 표준 및 권고 관행 준수, 통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자국의 통관 절차 검토
8조 선적 전 검사	품목분류나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선적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음, 그 밖의 종류의 선적 전 검사를 사용함에 있어 새로운 요건을 도입 또는 적용하지 않도록 권장
9조 도착 전 처리	수입물품이 도착하였을 때 신속하게 반출이 허용될 수 있도록 상품 도착 전 통관서류 및 정보의 제출을 허용하는 절차 마련, 적절한 경우 전자적 형태로 이를 제출
10조 사전심사결정	수입자, 수출자 등의 서면요청 시 품목분류, 원산지 충족여부, 관세평가 등을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심사제도 규정
11조 상품의 반출	상품의 효율적 반출을 위하여 간소화된 통관 절차 채택 및 유지, 부패성 상품의 피할 수 있는 손실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해 일정 요건 하 부패성 상품의 반출 허용
12조 정보기술의 적용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무역행정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 이를 종이 형태의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
13조 공인업체에 대한 무역원활화 조치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에 대해 통관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공할 것을 규정, 공인업체 상호인정에 대한 협상 가능
14조 위험관리	통관 통제를 위하여 위험관리시스템을 채택 및 유지, 저위험 탁송물의 반출 신속화, 위험관리의 일부로 탁송물 무작위 선별 가능, 적절한 선별기준을 통한 위험평가에 기초한 위험관리
15조 특송화물	특송화물의 신속한 통관 절차 채택 및 유지, 전자적 수단을 통한 통관 정보의 제출 및 제출 후 6시간 내 반출 허용
16조 통관사후심사	상품의 반출을 신속하게 하기위해 사후심사제도를 적용, 사후심사대상은 위험관리에 입각하여 선별하고, 사후심사는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
17조 반출시간연구	주기적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수입물품의 평균 반출시간을 측정하고 공표하도록 권장
18조 재심사 및	관세당국의 행정결정에 대해 행정적 불복청구·재심사와 사법적

조항	주요 내용
불복청구	불복청구·재심사를 보장
19조 관세 협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이행, 우수관행, 위험관리기술, 관세평가 협정의 적용 등에 대해 협력 및 지원
20조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의	관세 사안에 대해 각 당사국은 협의를 요청 가능, 협의로 미해결시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에 회부 가능
21조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	원산지 규정, 원산지 절차, 무역원활화 및 관세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를 설치

자료: 한·필리핀 FTA 협정문 『5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RCEP 상세설명자료』 참고.

□ 한·필리핀 FTA 제5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규범은 구성 및 내용에 있어 RCEP 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장과 대부분 동일함.

○ RCEP의 무역원활화 장은 한·필리핀 FTA와 동일하게 21조로 구성되어 있음. 다만 한·필리핀 FTA 5.21조에는 RCEP에 없는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의 구성이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RCEP 5.21조는 당사국별 상이한 수준에 따른 이행 약정 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 5.21조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5.20조의 명칭이 ‘협의 및 접촉선’(RCEP 4.20조)에서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의’로 변경된 점과 △협정 발효 30일 이내 접촉선을 지정(RCEP 4.20조 3절)하는 내용이 제외된 점이 다름.

○ 한·필리핀 FTA 제5장은 RCEP 해당 장과 거의 유사하여 협정 간 규범이 상이한 데에서 비롯되는 비용은 없는 것으로 평가

－ RCEP 4.21조에서도 필리핀은 이행 약정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RCEP 발효 후 바로 이행

□ 따라서 한·필리핀 FTA의 통관절차 규범은 RCEP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RCEP에서와 같이 WTO 무역원활화 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¹⁹⁾을 상회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 WTO 무역원활화 협정과 비교하여 한·필리핀 FTA에서 추가되거나 강화된 무역원활화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심사기한) 사전심사 결정은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된 경우, 90일 내에 가능한 한도에서 신청인에 발급
- (유효기간) 수입국의 사전심사결정은 최소 3년간 유효 (의무 조항)
- (통관수속기간) 물품의 도착과 통관 절차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제출로부터 48시간 내에 통관되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
- (부패성 상품의 반출) 신선농산물과 같은 부패성 상품의 경우 6시간 내에 반출 가능
- (특송화물) 항공특송화물의 경우 상품이 도착하고 반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한 후 6시간 내에 특송화물이 반출되도록 규정

○ 위의 조항들은 통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 편의성을 제고하고 무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경쟁 (6장)

□ 한·필리핀 FTA에서는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쟁 챕터를 신설하여 양국간 공정 경쟁 촉진 및 경쟁법 집행 협력의 토대를 마련함.

19) WTO TFA에서는 각국이 협정 상 조치를 서로 다른 유예기간을 가진 A, B, C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C유형의 경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협정의 조치를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을 부여함. 필리핀은 WTO 무역원활화협정(TFA)의 기준을 마쳤으나, 5%의 조치가 B 유형으로, 1.7%의 조치가 C유형으로 남아 있음. <https://tfadatabase.org/implementation/progress-by-member> (검색일자: 2022.09.27.)

- ASEAN 국가 중 최근 별도의 양자 FTA 협상을 타결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와의 FTA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경쟁 챕터가 한·필리핀 FTA에는 포함
- 경쟁법 집행시 절차적 공정성, 방어권 보장,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을 명시하여 우리 현지 기업들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마련함.
- 주요 경쟁법 집행 사건에 대한 통보, 정보교환 협력을 규정하여 카르텔 등 국제적 반경쟁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

표 3-6. 한·필리핀 FTA 6장 경쟁 협정문 주요 구성

조항	주요 내용
2조 목적	시장 경쟁 촉진,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한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촉진을 기대
3조 기본 원칙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하되, 양국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 개발·수립·관리·집행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경쟁법·경쟁정책 분야의 양국간 차이를 인정
4조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조치	경쟁당국 유지 및 독립성 보장,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자국 경쟁법의 적용, 경쟁법 운영지침의 공개, 경쟁법에 따른 조치 공개 등
5조 협력	경쟁법 집행 활동 통보, 경쟁법 집행에 대한 논의, 경쟁법 집행 촉진을 위한 정보 교환, 집행조치의 조정 등을 포함
6조 정보의 비밀유지	정보공유 요구 금지, 요청시 필요한 통보 내용, 비밀유지 조건으로 정보가 공유된 경우 의무사항 등
7조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법·정책 개발 및 이행에 관한 정보 공유, 자문 및 전문가 교류, 공무원 간 교류 및 프로그램 참여 등
8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제9장(분쟁해결)은 경쟁 장에 따른 사안에 적용되지 않음.
10조 소비자 보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행 및 설명 금지, 소비자 피해구제 메커니즘 인식 및 접근성 제고, 소비자 보호 관련 협력 등
11조 공기업	제6.4조 원칙에 반하는 조치 금지,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보장 등

자료: 한·필리핀 FTA 협정문 『6장 경쟁』 참고.

□ 한·필리핀 FTA 제6장 경쟁 규범은 구성 및 내용에 있어 RCEP 13장 경쟁

장과 대부분 동일함.

- RCEP의 경쟁 장은 한·필리핀 FTA 경쟁 장의 1조 정의, 11조 공기업을 제외하고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동일함.
- 한·필리핀 FTA에서는 공기업 관련 조항을 추가적으로 삽입하며 공기업의 설립 및 배타적 권리의 위임은 보장하되 공기업의 반경제적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
- RCEP과 유사한 수준의 경쟁 장을 포함시킴으로써 RCEP을 통해 합의한 경쟁 규범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RCEP에서와 마찬가지로 양국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을 개발·수립·관리·집행하는 것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경쟁법·경쟁정책 분야에서 양국간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음으로써 본 장의 이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한계가 존재함.

라. 경제 및 기술 협력 (7장)

- 한·필리핀 FTA 협정문 제7장 경제 및 기술 협력은 6개의 조로 구성되었으며, 경제 및 기술 협력 분야 관련 기본 원칙, 범위, 형태 등을 명시하여 양국 상호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제 및 기술 협력 장은 우선 경제협력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제1조), 개별 협력의 범위를 설정(제2조)하며, 협력의 구체적인 형태(제3조)와 이를 위한 자원(제4조)을 제시하고 효과적 이행을 위한 위원회 설치(제5조)를 명시함.

표 3-7. 한·필리핀 FTA 7장 경제 및 기술 협력 협정문 주요 구성

조항	주요 내용
1조 기본원칙	상호 관심 및 이익 분야에서 협력 이니셔티브 수행, 정부 간 협력 및 민간 분야, 학계 및 관련 기관의 참여 장려
2조 협력의 범위	보건 및 생명과학 관련 제조와 기술 금속 가공에 대한 협력을 포함한 산업 개발, 혁신과 연구 및 개발, 소상공인·중소기업, 영화 등 창의 및 문화산업, 지식재산,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전자상거래 등
3조 협력 형태	정보 교환, 우수 관행 공유, 인적자원 훈련, 전문가 교류, 비즈니스 포럼, 기술지원, 기술 및 새로운 사업 모델 이전 등
4조 자원	협력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 및 그 밖의 자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 상이한 발전 수준과 역량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행 비용 부담
5조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	협력 이행을 위한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 설치, 작업 계획 수립 및 협력 사업 이행 점검 및 평가, 정기보고서 제공, 최소 연1회 회합, 소위원회 설치 가능
6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분쟁해결메커니즘에 협력에서 발생하는 사안은 적용 제외

자료: 한·필리핀 FTA 협정문 『7장 경제 및 기술 협력』 참고.

□ (협력 범위) 산업 개발, 혁신과 연구 및 개발, 소상공인·중소기업, 영화 등 창의 및 문화산업, 지식재산, 표준·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전자상거래 등 주요 관심 분야 명시

○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Implementing Arrangement)에서 이행될 우선순위 사업을 개괄하고 목적과 예시적 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제시된 분야는 다음과 같음.

- 보건 및 생명 과학 관련 제조
- 기술 금속 가공에 대한 협력
- 전기자동차 산업
- 혁신 생태계
- 농업, 어업 및 임업
- 녹색 성장 이니셔티브

- 창의 및 문화산업
- 영화에 대한 협력
- 지식재산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전자상거래

○ (협력 형태) 정보교환, 모범사례 공유, 전문가 교류, 비즈니스포럼, 공동 연구·개발 등 형태의 협력

○ 양국 간 기존에 진행 중인 FTA 통합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산업기술 개발 협력 등에 더해 다양한 산업 및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자원) 경제 및 기술 협력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자원 및 그 밖의 자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하며, 양 당사국의 상이한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상호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 비용을 부담

□ (경제 및 기술 협력위원회)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각 당사국의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 및 기술 협력위원회 설치

○ 한·아세안 FTA 협정문의 제3장 경제협력 내 이행 관련 내용과 유사

- 한·아세안 FTA 협정문의 제3장 경제협력은 1조를 통해 상호 합의된 시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제5장 최종조항의 3조에 따라 설치된 이행위원회에 의해 감독됨.

□ (분쟁해결) 한·필리핀 FTA는 제7장 경제 및 기술 협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9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함.

표 3-8. 한·필리핀 FTA 경제 및 기술 협력 부속서 주요 구성

부속서	주요 내용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사태와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	- 식품·의약품·중요 의료제품 및 그 원재료를 포함한 필수 상품에 대하여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및 비관세 장벽의 도입을 자제 - 필수 인력 이동의 원활화 - 무역 및 투자에 대한 협력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백신에 대한 협력	- 백신 제조, 생산을 위한 원재료 공급, 백신 공동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 백신 개발과 관련된 역량 강화와 지식 및 기술 이전 측면 협력 증진 - 임상시험 및 백신의 전체 승인에 대해 국내 규정, 관행 및 신청과정에 대한 정보 교환 - 백신 및 생산용 원재료에 대한 신속한 통관 절차 채택 노력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	- NDCs 해외 감축, 이전, 공공·민간 프로젝트 증진 협력 - 국가 재고의 측정, 보고 및 검증을 위한 역량 강화 활동 협력 - 기후 행동에 대한 우수 관행과 기술적 노하우 교환을 위한 세미나, 심포지엄 등 회의 개최

□ 경제 및 기술 협력 장의 부속서는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사태와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부속서 7-가), 백신에 대한 협력(부속서 7-나),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부속서 7-다)로 구성됨.

○ 양국은 최근 주요 국제적 관심사항이며 양측 주요 관심사항인 팬데믹, 백신, 기후변화 협력을 규정함. 이는 백신 및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DCs) 해외감축 협력이 FTA 협정문에 도입된 최초 사례임.

□ (부속서 7-가) 코로나19가 세계 공급망 내 상품, 서비스 및 인력의 지속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도전과제임을 인정하고, 이의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을 규정

○ 글로벌 공급망 내 상품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필수 인력 이동의 원활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의 원활화를 위하여 팬데믹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 필수 의료제품과 중요 농산물 및 식품 등 원재료를 포함한 필수 상품 및 서비스의 제조 및 공급 안정화, 디지털 전환, 금융 접근 개선 노력 강화 등 공동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도록 노력

□ (부속서 7-나) 팬데믹이 전세계적으로 야기한 영향을 인식하면서 팬데믹을 종식하고 미래의 보건 위협을 다루기 위해 백신 분야의 협력 합의 백신 생산 및 관련 공급과 제조혁신을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함.

○ 백신 제조, 원재료 공급, 연구 및 개발, 백신 개발과 관련된 역량 강화와 지식 및 기술 이전 등 분야에 협력하기로 함. 양국의 강점을 결합하여, 백신 생산과 글로벌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 증진

□ (부속서 7-다) 기후변화와 그 부정적 효과가 긴급하고 인류 공동의 관심사임을 인정하며, 각국의 국가결정기여 이행에 따라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완화하는 역량을 향상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

○ 국가결정기여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적응 프로그램 증진, 기후 완화 투자를 지원, 시장과 비시장 메커니즘의 혜택을 상호 모색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이전된 완화성과를 사용하는 수단을 찾기로 합의

□ 한·필리핀 FTA 협정문의 제7장 경제협력은 한·아세안 FTA 협정문의 제3장 경제협력과 RCEP 제15장 경제 및 기술협력과 큰 틀에서 유사하나,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이 유망할 분야를 발굴하여 제시하고, 더 다양한 협력의 형태를 명시하며, 코로나 19 등 팬데믹 하에서 협력 및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을 포함함.

제4장 한·필리핀 FTA 거시 경제적 효과 분석

1. 성장 및 후생 효과

가. 분석 모형

1)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분석방법

□ 본 연구에서는 한·필리핀 FTA 발효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한·미,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연산가능일반균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분석방법론을 사용함.

○ 기체결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와 모형의 정합성을 감안하여 동일한 방법론을 이용함.

□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분석방법론이란 거시경제 균형상태를 연립방정식을 통해 묘사해 놓은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임.

○ 이 모형은 각 산업별 생산,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 국내 경제부문들과 수출입, 관세 등 대외 부문(국제간 거래에 관련된 부문)을 포괄하고 있는 모형으로 모든 부문들이 상호의존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에서 정책변화나 특정사건의 효과를 연산할 수 있도록 만든 모형임.

○ 대부분의 CGE 모형은 각 경제주체의 행위를 규정짓는 방정식, 그 방정식을 이루는 변수들의 값, 그 변수 값의 변화에 따라 결과를 추정해내는 파라미터들로 이루어져 있음.

○ 즉, 경제주체들의 모든 행위를 묘사하는 방정식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현실의 데이터를 모형의 각 방정식에 들어있는 변수의 값과 연결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상태에서 특정 충격(변수의 변화)이 가해지면 이와 관련된 모든 변수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균형 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게 되며, 이때의 주요 변수의 수치변화를 바탕으로 영향을 분석함.
- CGE 분석방법론은 FTA의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현재 가능한 대안 중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경제변수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감안할 수 있어 경제전체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적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FTA의 거시효과 분석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됨.

2) GTAP 모형

가) GTAP 모형의 검증성

- 본 연구에서는 CGE 모형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GTAP 모형을 이용함.
- GTAP 모형은 Purdue University에서 만든 일반균형모형으로 모형과 자료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 본 분석에 사용된 GTAP 모형은 기본 모형이 모든 연구자에게 공개되어 있어 모형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으며, 최신 버전은 7임.
- 또한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인 GTAP Database 역시 각 국가의 contributors의 기본 작업과 GTAP Center의 보정을 거쳐 그 정확성이 검증되어, 다른 CGE 모형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에게도 널리 사용되고 있음.
- GTAP 모형은 미국, 뉴질랜드, 호주, 터키, 중국 등을 포함한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FTA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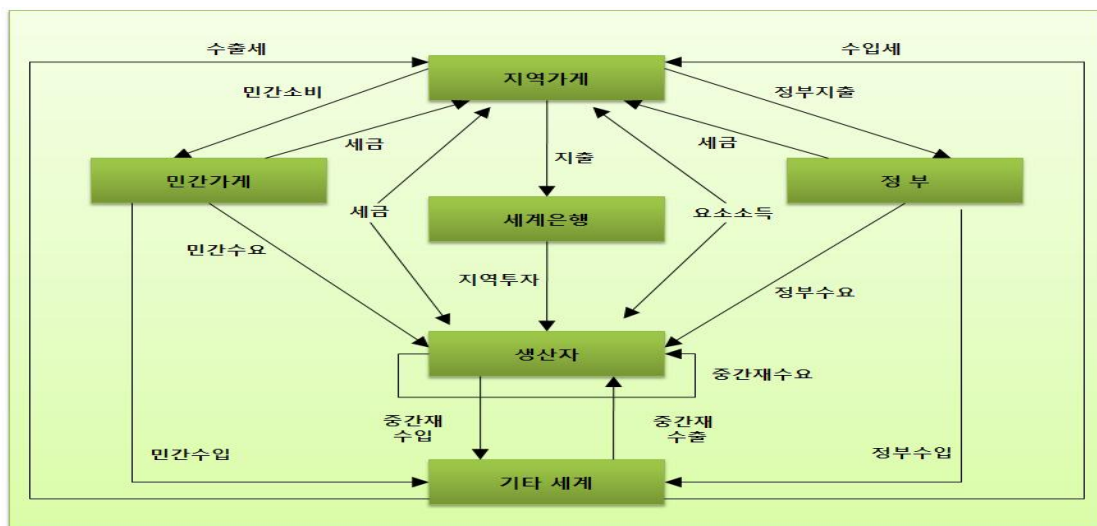
- 이는 연구결과에 대한 반복 검증(replicate)이 가능하므로 객관성이 담보되기 때문임.
- 또한 GTAP 모형은 결과 분해 및 민감성 분석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음.
- AnalyzeGE를 이용한 결과 분해, 후생효과 분석을 위한 Welfare decomposition (교역조건, 자원배분효율성, 생산성 등), Parameter/Shock에 대한 sensitivity 분석이 가능

나) GTAP 모형의 구성

- GTAP 모형은 크게 (1) 일반균형달성을 위한 회계방정식들과 (2) 각 지역의 가계, 정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행태방정식들로 구성되어 있음.
- 회계방정식들은 왈라스법칙에 기반하여 일반균형을 달성하도록 부문별 시장청산조건, 수입과 지출의 일치, 0의 이윤조건 등을 묘사한 방정식들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일반균형조건들은 물량에 대한 수준변수로 표현이 되나(예를 들면, 생산량 = 소비량), GTAP 모형의 경우 이를 변화율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계산을 용이하게 변환하였음.
- 즉 변화율로 표현함으로써 복잡한 비선형 함수를 선형함수로 변환할 수 있게 되어 분석의 정확도와 모형의 안정성을 추구함.
- <그림 4-1>은 GTAP 모형 내 경제주체들 간의 경제활동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 GTAP 모형에서는 지역가계(Regional Household)라는 가상의 경제주체를 도입하여 생산자에게 노동과 자본 같은 본원투입요소를 공급하고 그 수익과 세금을 받아 민간가계와 정부, 그리고 저축에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함.
- 민간가계와 정부는 국내재와 해외의 각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재를 구입하여 소비함.
- 생산자는 본원투입요소와 함께 타 부문에서 생산된 국내재와 해외로부터의 수입재를 중간재로 투입하여 최종재를 생산함으로써 수출과 국내공급을 담당함.
- GTAP 모형은 폐쇄경제를 개방경제로 확장시키기 위하여 해외운송부문과 세계은행(global bank)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고, 수입재를 민간가계 소비용, 정부 소비용, 기업 중간재용으로 구분하여 취급함.²⁰⁾

그림 4-1. GTAP 모형 내 경제활동 개관



자료: Hertel (1997) Global Trade Analysis Modelling and Applications.

20) 이는 SALTER모형(Jomini et. al., 1991)의 접근방식을 준용한 것임.

다) GTAP 모형의 생산 및 소비 구조

- 행태방정식은 소비자(민간가계와 정부)와 생산자(기업)가 각각 효용과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소비와 생산을 결정하는 과정을 묘사한 방정식을 의미함.
- GTAP 모형 내에는 명시적인 효용함수나 생산함수를 포함하는 대신에 효용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요와 공급을 변화율 형태로 표현하고 있음.
- GTAP 모형의 생산구조는 트리구조(tree structure)로 되어 있으며, 각 연결점(node)은 하부구조를 포함하는(nested) 생산함수로 표현될 수 있음.
- 최종재(총공급)는 부가가치 복합재와 복합중간재를 불변대체탄력성(CES: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함수를 통해 결합하여 생산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 복합재는 토지, 숙련노동, 비숙련노동, 천연자원, 자본의 5가지의 투입요소들을 CES함수 형태로 결합하여 생산되며, 이 중 토지와 천연자원은 이동이 불가능하나 노동 및 자본은 생산부문간 불변전환탄력성(CET: 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함수에 기반하여 이동이 가능함.
- 복합중간재는 각 투입중간재별로 국내재와 복합수입재가 CES함수를 통해 결합된 뒤, 여러 부문에서 생산된 투입중간재들이 다시 CES함수를 통해 결합·생산되는 구조를 지님.
- 아밍턴 가정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품목들이 모두 차별화된 제품으로 취급되어 CES결합을 통해 복합수입재를 만들어냄.
- 소비는 지역가계로부터 민간가계와 정부에게로 이전된 후, 민간과 정부에 의해 이루어짐.

- 이러한 지역가계의 도입은 정부의 세금자료에 대한 수집상의 어려움을 피하고 사회전체의 후생을 측정함에 있어 민간가계로 그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소비의 주체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정부소비지출은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에 기반하여 각 재화별로 정해진 비율로 소비가 배분됨.
- 정부의 국내재에 대한 수요와 수입재에 대한 수요를 CES 함수로 결합한 복합재를 수요하며, 수입재는 다시 여러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화의 CES결합으로 결정됨.
- 민간소비의 경우 효용함수를 비동조적(non-homothetic) CES함수보다 유연한 형태인 Constant Difference Elasticity(CDE)함수를 사용함.
- 먼저 가계는 CDE함수를 통해 에너지 복합재와 비에너지 복합재의 수요를 결정하고, 다음 하위단계에서 에너지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및 전력수요의 CES결합을 통해, 비에너지 복합재는 국내재와 수입재의 CES결합으로 그 수요가 결정됨.

나. 분석 자료

- 본 분석에서는 표준 GTAP 모형을 활용하기 위하여 Dynamic GTAP Database Version 10a(이하 GTAP DB V10a) 자료를 이용함.
- GTAP DB V10a은 2004, 2007, 2011, 2014년 기준 전 세계 생산, 소비, 교역자료가 투입산출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1개 국가/지역의 65개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1) 국가 분류

□ 국가/지역은 선행연구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분석대상인 필리핀을 포함한 FTA 체결국을 세분화하여, 한국, 필리핀, 호주, 브루나이, 중미,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EFTA, EU, 조지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캄보디아, 라오스, 멕시코, 미얀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태국, 터키, 대만, 영국, 미국, 베트남, 기타세계의 31개로 재분류

○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 중 하나인 일본의 경우 비록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교역관계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구분함.

표 4-1. 한국의 FTA 체결현황

상대국	현황		
	개시	서명	발효
칠레	1999.12.	2003.02.	2004.04.
싱가포르	2004.01.	2005.08.	2006.03.
EFTA	2005.01.	2005.12.	2006.09.
ASEAN	2005.02.	2006.08. (상품무역협정)	2007.06. (상품무역협정)
		2007.11. (서비스협정)	2009.05. (서비스협정)
		2009.06. (투자협정)	2009.09. (투자협정)
인도	2006.03.	2009.08.	2010.01.
EU	2007.05.	2010.10.06.	2011.07.01. (잠정) 2015.12.13. (전체)
페루	2009.03.	2011.03.21.	2011.08.01.
미국	2006.06.	2007.06.	2012.03.15.
	2018.01. (개정협상)	2018.09.24. (개정협상)	2019.01.01. (개정의정서)
터키	2010.04.	2012.08.01. (기본/상품무역협정)	2013.05.01.
	2018.01. (개정협상)	2018.9.24. (개정협상)	2019.01.01. (개정의정서)
호주	2009.05.	2014.04.08.	2014.12.12.
캐나다	2005.07.	2014.9.23.	2015.01.01.

상대국	현황		
	개시	서명	발효
중국	2012.5.	2015.06.01.	2015.12.20.
뉴질랜드	2009.06.	2015.03.23.	2015.12.20.
베트남	2012.08.	2015.05.05.	2015.12.20.
콜롬비아	2009.12.	2013.02.21.	2016.07.15.
중미5개국	2015.06.	2018.02.21.	2019.10.01.부분발효 (10.1)니카라과,온두라스, (11.1)코스타리카, (2020.1.1)엘살바도르
영국	2017.02.	2019.08.22.	2021.01.01.
RCEP	2012.11.20.	2020.11.15.	2022.02.01.

자료: www.fta.go.kr

2) 산업 및 생산요소 분류

□ 본 연구에서는 농수산업은 1) 쌀, 2) 곡물·과일 및 채소, 3) 육류 및 낙농, 4) 가공식품, 5) 기타 농업, 6) 수산업으로, 제조업은 1) 채취업, 2) 섬유·직물, 3) 의복, 4) 화학·고무·플라스틱, 5) 철강, 6) 비철금속, 7) 자동차, 8) 기타 수송기기, 9) 전자, 10) 기계, 11) 기타 제조업 산업으로, 서비스는 전체 서비스로 분류함.²¹⁾

○ 농수산업을 쌀, 곡물·과일 및 채소, 육류 및 낙농, 가공식품, 기타 농업, 수산업의 6개 산업으로 분류함.

- 정치·경제·사회적 민감성 때문에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양허 품목으로 분류되는 쌀은 따로 분류함.
-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안정적 분석을 위해 곡물을 과일 및 채소와 같은 산업 내에 분류함.

21) 동 분류 방식은 기존 연구인 KIEP (2009)와 다른 FTA 기준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것이며, GTAP Center에서 제공하는 HS코드 6단위와 GTAP DB를 매칭시킨 뒤, 다시 선행연구와 같은 19개 산업으로 재분류를 실시함.

- 동 산업분류 방식은 선행연구를 참조한 것으로, 실제로 MTI 분류에서 ‘곡실류’라는 품목분류를 사용하고 있기도 함.
- 단, GTAP에서 과일과 채소는 최소 단위 품목 군에서 같은 품목으로 되어 있어 곡물·과일 및 채소는 같은 산업으로 분류함.
- 제조업은 채취업, 섬유·직물, 의복, 화학·고무·플라스틱,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기타 수송기기, 전자, 기계, 기타 제조업의 11개로 분류함.
- 서비스업은 지난 한·미 FTA와 한·EU FTA분석과의 정합성을 위해 비공공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로 구분함.
- 생산에 사용되는 투입요소는 토지, 비숙련노동, 숙련노동, 자본, 자연자원을 노동, 자본, 자원의 3가지로 분류함.
- 투입요소에 대한 분류는 주어진 기본설정을 준수하여 토지와 자연자원의 산업간 이동은 제한적이나, 노동과 자본은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정
- 모형 내에서는 완전고용 가정을 통해 노동은 인구증가율과 노동증가율에 따른 변화만을 고려할 수 있으며 실업에 의한 유향노동력은 고려하지 않음.
- 자본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통한 소득증대가 저축을 통해 투자의 형태로 자본축적에 기여하는 과정을 고려
- 여타 자연자원이나 토지 등 생산요소의 경우 그 값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함.

다. 분석 시나리오

1) 기초(Baseline) 시나리오

- 본 연구에 사용된 GTAP DB V10a는 2014년을 기준년도로 하는 자료이므로 이를 2023년으로 업데이트 하기 위하여 주요 경제권의 성장추세 등 세계경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Baseline 시나리오를 구축하였음.²²⁾
- 사용된 기초자료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과 CEPII 등 국제기구들의 예측치가 활용됨.
-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율, 인구증가율, 노동증가율 예측치를 이용하여 Baseline을 구성함.

2) 정책(policy) 시나리오

- FTA 정책 시나리오는 크게 기 발효 FTA 정책 시나리오와 분석대상 FTA 정책 시나리오로 구성됨.
- 기체결 FTA는 협정문의 양허안에 기반한 산업별 관세감축률을 GTAP DB에 적용하여 업데이트하였음.
- 기체결 FTA의 반영은 FTA발효로 인해 한국과 상대국간의 교역구조 변화를 DB에 반영함으로써 한국의 변화된 교역구조 하에서 필리핀과의 FTA 발효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한·필리핀 FTA 시나리오는 타결된 협정문의 상품양허안에 기반하여 구성함.

22) 본 모형은 정상(steady-state)균형의 비교를 통해 FTA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서 성장추세를 모형에 반영하는 이유는 각 국가의 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임.

- 한·필리핀 FTA 상품양허안의 카테고리별 관세감축 스케줄을 이용하여, 산업별 발효 후 5년, 10년, 15년의 관세감축률을 계산하였음.
- 상품양허안은 각 국의 세부 세번별 관세감축 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산업별 감축률 계산에 활용하기 위하여 수입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함.

표 4-2. 한·필리핀 FTA의 가중관세 감축률

(단위: %)

산업	한국			필리핀		
	5년	10년	15년	5년	10년	15년
쌀	0.0	0.0	0.0	0.0	0.0	0.0
곡물·과일 및 채소	81.4	81.4	81.5	34.1	51.1	89.1
육류 및 낙농	0.0	0.0	0.0	0.7	40.4	74.3
가공식품	29.4	44.7	50.2	4.3	33.1	75.1
기타농업	94.7	99.7	99.7	0.0	0.1	0.2
수산업	1.0	1.9	2.9	10.4	28.4	70.0
채취업	34.0	66.0	100.0	100.0	100.0	100.0
섬유·직물	100.0	100.0	100.0	46.3	64.1	99.3
의복	100.0	100.0	100.0	41.9	61.3	100.0
화학고무플라스틱	4.1	6.2	6.2	35.5	51.6	73.1
철강	0.0	0.0	0.0	45.2	63.3	99.3
비철금속	0.0	0.0	0.0	90.3	93.5	100.0
자동차	100.0	100.0	100.0	73.1	73.1	73.1
기타수송기기	100.0	100.0	100.0	88.7	92.5	100.0
전자	100.0	100.0	100.0	36.4	63.6	100.0
기계	97.9	99.3	99.3	33.7	63.6	95.4
기타제조업	88.7	92.2	92.2	41.1	60.9	96.9
총합계	74.3	76.5	77.3	50.3	62.5	78.6

자료: 저자 작성.

라. 분석 결과

- 한·필리핀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로서 성장은 실질 GDP 증가율로, 소비자 후생은 동등변화(EV: Equivalent Variation)를 계산하였음.

○ 한·필리핀 FTA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의 측면에서는 실질 GDP의 추가적인 증가로 측정하는 반면, 소비의 측면에서는 소비자 후생수준의 변화로 측정함.

－ 후생의 변화는 실질 GDP와 항상 같은 방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 변화를 나타내는 또 다른 경제 지표라고 할 수 있음.²³⁾

－ 실질 GDP가 생산과 국내가격(수입중간재 포함)을 통해 계산되는데 비해, 후생변화는 소비와 국내 및 수입최종재의 가격까지 반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한·필리핀 FTA가 발효될 경우 발효 후 5년, 10년, 15년 모두 우리나라의 실질GDP가 추가적으로 약 0.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위 성장효과는 한·필리핀 FTA가 없었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추세와 한·필리핀 FTA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진 성장 추세와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한·필리핀 FTA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성장으로 해석됨.

○ 한·필리핀 FTA에서 필리핀의 감축률은 발효 후 5년, 10년, 15년이 각각 74.3%, 76.5%, 77.3%로 큰 차이가 없어 시기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 후생은 한·필리핀 FTA로 인해 발효 후 5년에 걸쳐서 약 1.31억 달러, 발효 후 10년에는 1.42억 달러, 발효 후 15년에는 약 1.60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분석에서의 소비자 후생은 동등변화로 측정된 것이며, 한·필리핀 FTA

23) 동등변화는 가격의 변화가 있기 전 경제주체들이 구매했던 품목들을 가격변화 후에 동일하게 소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수입재의 가격이 국내재에 비해서 급등하는 경우에는 후생과 실질 GDP의 방향이 다를 수 있음. 따라서 후생의 변화요인으로써 교역조건을 분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가 발효되기 전 가계가 구입했던 상품묶음을, 한·필리핀 FTA 발효 이후 동일하게 구매하고 남은 금액으로 측정됨.²⁴⁾

- 후생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에는 동등변화 이외에도 소비자잉여, 보상 변화 등의 방식이 있으나, 본 분석에서 고려하는 시나리오들은 가격의 변화를 동반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동등변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 본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규모의 경제 불변과 완전경쟁을 가정하고 있어 기업의 이윤은 항상 0이 되도록²⁵⁾ 균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후생변화는 소비에서 발생하는 효용의 변화로써 측정됨.
 - 후생변화가 양(+)라는 것은 정책의 변화가 있기 전에 소비하던 품목들을 정책도입 이후 동일한 품목으로 소비한 경우 소득이 남는다는 의미임.
 - 후생변화는 필리핀과의 교역조건(TOT: Terms of Trade)의 변화와 관세 감축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의 결과로 분석될 수 있음.
- 따라서 한·필리핀 FTA 체결 전 소비자가 구매했던 상품들을 한·필리핀 FTA 체결 후에도 소비자가 동일하게 구매했을 때, 남은 금액이 약 1.31~1.60억 달러가 되며 이렇게 남은 금액은 소비자가 동일 상품을 더 많이 소비하거나 다른 상품을 추가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증가하게 되는 소비자 후생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음.

24) 후생은 정책으로 인한 소득 변화와 더불어 전에 소비하던 상품묶음의 가격변화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질 GDP와 또 다른 측면에서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25) 영의 이윤조건은 실제의 경제와 많은 차이가 있으나,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그 주주들에게 귀속되고 주주들은 가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소비주체들의 효용변화로 경제전체의 후생을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표 4-3. 한·필리핀 FTA의 거시경제 효과(누적): 실질 GDP 및 후생

구 분	발효 후 5년 (2028년)	발효 후 10년 (2033년)	발효 후 15년 (2038년)
실질 GDP (%)	0.01	0.01	0.01
후생 수준 (억 달러)	1.31	1.42	1.60

자료: 저자 작성

마. 분석의 한계

□ 위 분석 결과는 FTA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경로(자원의 효율적 재분배와 경쟁의 심화나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 등)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 우선 자원의 재배분을 통한 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관세철폐로 인해 국내생산보다는 수입이 보다 효율적인 재화의 생산에 투입된 자원을 비교우위 산업으로 재분배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장효과임.

－ 또한 이 과정에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증가한 소득의 일부는 투자를 통해 자본축적을 가져오며, 이렇게 형성된 자본은 생산의 투입요소로서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함.

○ 위에서 언급한 과정은 모든 시장구조에서 발생하나,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이 아닌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나 경쟁강화를 통한 효율성 증가와 같은 성장요인을 기대할 수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국이 비교우위에 특화되는 경우에는 생산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화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재화의 발명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원가를 줄이거나 새로운 재화를 시장에 공급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을 촉진함.

- 아울러 생산규모의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더불어 개방은 동태적인 관점에서 경쟁의 강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한 경제의 일반균형상태를 계산 가능하도록 측정이 어려운 변수들과 경제외적 요인들을 배제하고 주요 경제변수를 중심으로 단순화한 모형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무역자유화에 따른 거시경제 효과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CGE모형도 매우 포괄적인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한계를 가짐.

- CGE모형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과 대내외 교역관계 등을 모두 모형화하여 정책의 변화가 일반균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데, 분석을 위해서는 현실 경제를 단순화하기 위한 가정들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생산물 시장에서의 완전경쟁과 생산요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정하고 있어 현실경제와는 괴리가 존재함.

-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함수형태에서부터 설명변수의 종류와 측정, 결과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의 기간과 범위 및 정확도 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함.

○ 또한 분석에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히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및 무역흐름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

- CGE 분석을 위해서는 각국의 거시경제지표, 교역현황 외에도 산업연관표를 포함한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 분석시점보다 과거의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하게 되어 최근 경제상황과 교역관계를 반영하지 못함.

- 따라서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분석모형과 분석과정에 사용된 가정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며 그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수치 자체보다는 방향성과 정책들 사이의 상대적 효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함.

2. 고용 효과

가. 고용 효과 도출방법

- 경제 전체를 3개 부문으로 나누어 한·필리핀 FTA의 고용효과를 측정함.
 - 고용효과는 임금근로자 일자리와 전체 취업자수에 미치는 효과의 양 측면에서 고찰함.
- 산업별 생산액 변화로부터 고용효과를 도출하는 작업은 아래와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함.
 - 먼저 GTAP으로부터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기 전 초기상태에 해당하는 2023년도의 생산액,²⁶⁾ 한·필리핀 FTA가 발효된 후 일정기간(5년, 10년, 15년) 경과 후의 생산액 증감률 예측치를 도출함.
 - 이로부터 한·필리핀 FTA 발효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과 기준연도 간의 생산액 변화분을 도출함.
 - 이 때 GTAP이 생산액을 산출한 기준연도가 산업연관표의 고용표가 집계되는 연도와 다를 경우 생산자물가지수 혹은 GDP디플레이터(본 연구에서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를 이용하여 산업연관표의 불변가격 계산과 일관성을 갖는 생산액을 도출함.

26) 한·필리핀 FTA의 효과를 모두 기준연도 불변가격으로 표시하므로 ‘생산량’이라고 지칭해도 무방함. 다만 한·필리핀 FTA의 고용효과 분석시 통상적으로 불변가격을 사용할 때에도 기준연도를 밝히면서 ‘생산액’으로 효과를 표시하므로 여기에서도 그 관행에 따름

- 한·필리핀 FTA가 발효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생산액과 새로이 생성한 연도의 생산액 사이의 변화분을 도출함.

표 4-4. 2022년 대비 산업별 생산액 변화

(단위: 2015년 백만달러)

	생산액변화		
	2028	2033	2038
농수산업	18.2	22.3	30.7
제조업	221.0	237.1	256.9
서비스업	94.6	103.5	117.1
합계	333.7	362.9	404.7

자료: CGE 모형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

- 생산액 변화 효과에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도출한 각 산업별 고용계수 [취업계수]²⁷⁾(산출물 10억 원 생산에 필요한 고용량)를 이용하여 산업별 고용효과를 도출함.

- 임금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산업연관표의 산업별 고용계수를 이용하고 전체 취업자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연관표의 산업별 취업계수를 이용하여 도출함.

* 본고에서 고용계수와 취업계수는 모두 2015년 불변가격 10억원당 필요한 피용자수와 취업자수로 정의하였음.

- 이 때 이용되는 고용계수(취업계수)는 먼저 고용계수(취업계수)의 장기 추세와 단기추세를 감안하여 예측식을 추정한 후,
- 이 예측식을 이용하여 한·필리핀 FTA 고용효과 산출시점의 고용계수(취업계수) 예측치를 도출함.

- 산업별 고용효과와는 독립적으로 GTAP의 경제 전체 산업생산액 증분과

27) 고용계수는 해당 산업의 '산출물 1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임금근로자수'의 개념으로서 자영부문 취업자수를 고려한 취업계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그로 인해 취업계수보다 작음. 취업계수 대신 고용계수를 고려하면 임금근로자 효과만을 도출하게 되어 특히 농수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효과가 취업계수를 이용할 때보다 크게 줄어듦.

산업연관표의 경제 전체 고용계수(취업계수) 값을 이용하여 경제 전체에 대한 고용효과를 도출함.

- 이산변수의 특성상 산업부문별 고용효과 합계와 경제전체 고용효과는 기준연도로부터 경과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가 커짐.
 - 이 때문에 산업부문별 고용효과의 합계와 경제전체의 고용효과 간의 일관성이 훼손됨.
 - 따라서 부문별 고용효과 합계와 경제전체 고용효과 합계와 불일치를 교정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함.
- 산업부문별 고용효과와 경제전체 수준에서 집계된 고용 효과가 일관성을 갖도록 산업부문별 고용효과를 정규화하여 거시경제 전체에 대해 도출한 고용효과와 일관성을 지니도록 조정함.
- 산업부문별 예측치보다 많은 정보를 체화하고 있는 경제 전체의 고용계수(취업계수)와 이로부터 도출된 고용효과 값을 이용하여 조정함.
 - 구체적으로는 경제전체에 대한 고용효과와 부문별 고용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 요소를 보정하는 일종의 정규화 과정을 통해 산업별 고용효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함.

나. 산업별 및 경제 전체의 고용 효과

- 산업별 생산효과를 이용하여 경제 전체에 미치는 고용효과를 도출하면 한·필리핀 FTA 발효로 임금근로자는 발효 5년 후 1,225명, 10년 후 1,252명, 15년 후에는 1,320명의 증가 효과가 있고, 취업자 전체로는 발효 5년 후 1,557명, 10년 후 1,525명, 15년 후에는 1,540명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산업별 생산효과를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공히 긍정적 생산 효과가 예상되고 생산증가 효과는 제조업>서비스업>농수산업 순으로 크지만 임금근로자로 측정하든 전체 취업자수 증가로 측정하든 고용증가 효과는 장단기에서 모두 서비스업 고용효과가 가장 큼.
- 취업계수 감소 속도가 생산증가속도를 상회하여 임금근로자 증가효과와는 대조적으로 전체 취업자수 증가효과는 한·필리핀 FTA 발효 5년 후가 가장 큼.
- 농수산업 취업계수는 제조업보다 10배 이상 커서 농수산업 생산효과가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한·필리핀 FTA 발효 10년 이후부터는 제조업보다 농수산업의 취업자수 증가효과가 더 큼.
- 임금근로자 증가 효과는 발효 15년 후를 기준으로 할 때 서비스업이 전체 효과의 65.2%를 차지하며, 자영업자까지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 효과의 경우 서비스업이 전체 효과의 54.8%를 차지함.
- 서비스업과 제조업 고용효과를 비교하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서비스업 고용 효과는 제조업의 2.15배, 전체 취업자 수 증가효과는 제조업의 2.58배임.

그림 4-2. 임금근로자 증가효과와 전체 취업자 증가효과 (2015~2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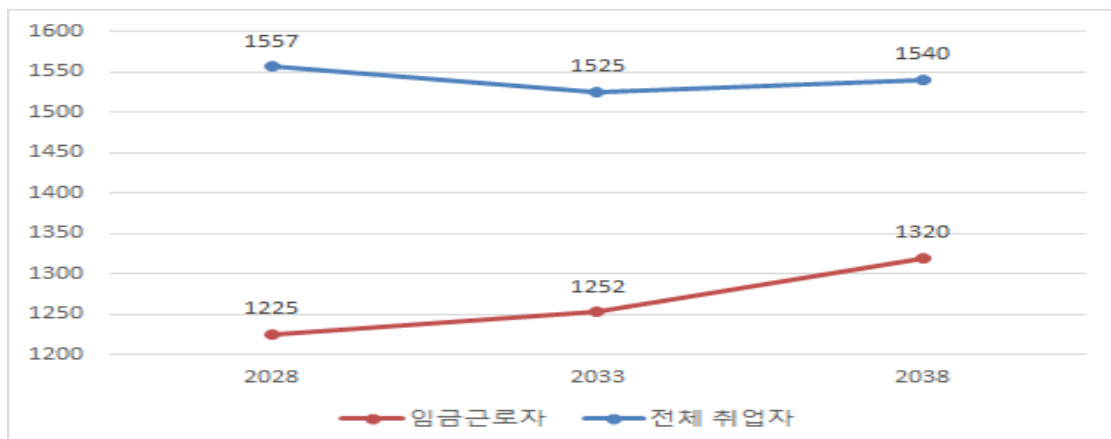


표 4-5. 산업별 생산액 변화로부터 도출한 산업별 및 경제전체 임금근로자 증가 효과
(단위: 명)

	임금근로자수 증가효과		
	2028	2033	2038
농수산업	37	44	58
제조업	434	416	401
서비스업	754	793	860
합계	1,225	1,252	1,320

표 4-6. 산업별 생산액 변화로부터 도출한 산업별 및 경제전체 취업자수 증가 효과
(단위: 명)

	취업자수 증가효과		
	2028	2033	2038
농수산업	322	339	390
제조업	406	364	321
서비스업	829	822	829
합계	1,557	1,525	1,540

○ <표 4-7>와 <표 4-8>는 <표 4-5>와 <표 4-6>을 도출하는 데 사용된 고용계수 추이와 취업계수 추이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음.

- 사용한 고용계수와 취업계수는 2015년 산업연관표 고용계수와 취업계수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하고 그로부터 도출한 포인트 예측값임.
- 단위 생산물(2015년 불변가격으로 10억어치)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임금근로자수는 2028년 이후 농수산업과 제조업에서 공히 1.5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

표 4-7. 고용계수 추이 전망값

(단위: 명/2015년 10억원)

	2015	2028	2033	2038
농림수산업	1.6	1.5	1.4	1.3
제조업	2.1	1.5	1.3	1.1
서비스업	7.1	6.2	5.9	5.6
전산업	4.5	3.8	3.5	3.3

자료: 한국은행의 2015년 기준 산업연관표 고용표의 부문별 고용계수를 이용하여 전망한 예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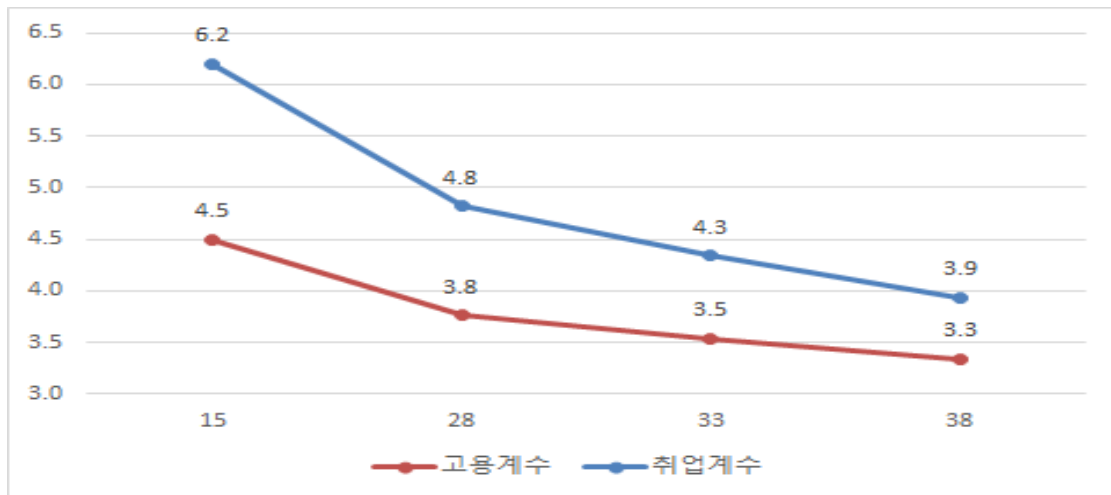
표 4-8. 취업계수 추이 전망값

(단위: 명/2015년 10억원)

	취업계수 2015	취업계수 2028	취업계수 2033	취업계수 2038
농수산업	21.2	16.3	14.1	12.3
제조업	2.3	1.6	1.3	1.1
서비스업	9.8	8.0	7.3	6.7
전산업	6.2	4.8	4.3	3.9

자료: 한국은행의 2015년 기준 산업연관표 고용표의 부문별 취업계수를 이용하여 전망한 예측치

그림 4-3. 고용계수와 취업계수 예측치 (2015~2038)



자료: 저자 작성

3. 세수 효과

가. 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한·필리핀 FTA 체결로 인해 우리 관세 장벽이 철폐되어 우리나라 관세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됨.
- 한·필리핀 FTA 체결로 필리핀과의 교역에 적용되던 관세율이 인하 혹은 철폐되면서 관세세수가 감소하게 됨.
 - 한·필리핀 FTA와 기존의 한·아세안 FTA와 RCEP을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함.
 - 품목수 기준 : 한국 94.8%, 필리핀 96.5%
 - 수입액 기준 : 한국 97.0%, 필리핀 97.6%
- 부수적으로 한·필리핀 FTA가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잠재력이 제고될 경우 GDP증가에 따른 간접적(2차적)인 세수입 증가가 예상됨.
-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의 교역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 GDP가 추가로 증가하고 이러한 추가적인 경제성장으로 조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아세안 FTA와 RCEP을 통해 필리핀은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만 관세 철폐했으나, 한·필리핀 FTA 협상을 통해 필리핀은 전체 품목의 7.3%p, 수입액의 4.9%를 추가 개방함.

나. 관세율 인하 등에 의한 세수입 변화

- 한·필리핀 FTA 발효로 인해 필리핀에 적용되던 관세율이 인하 혹은 철폐되

면서 이에 따른 관세수입 감소와 관세수입 감소에 의한 수입분 내국세 수입 감소를 고려할 수 있음.

○ 관세 인하 및 철폐에 따른 관세 수입 감소 효과

○ 관세가 부과된 이후 추가적으로 부과되던(surtax)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 내국세 세수 감소 효과

□ 한·필리핀 FTA 체결에 의해 관세수입은 연평균 약 610.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관세수입액을 기준으로 한·필리핀 FTA 협정에 따라 품목별로 관세 인하 및 철폐가 진행될 경우 연평균 약 608.2억 원의 관세수입액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한·필리핀 FTA 체결로 인해 필리핀으로부터의 수입되는 바나나(HS 0803.90.000)가 양허되면서, 바나나에서 징수되던 관세수입이 감소함.

－ 그 밖에 필리핀으로부터의 수입은 이미 한·아세안 FTA, RECP 등을 통해 관세 인하 및 철폐가 진행되었으며,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로 인해 추가적인 관세 인하 및 철폐가 이루어짐.

○ 관세율 인하 및 철폐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 내국세의 추가적인 세수 감소 효과는 연평균 약 2.0억 원 예상됨.

－ 수입분 내국세는 관세수입액의 9.9%로 가정하여 추정

－ 수입분 내국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나나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품에 적용함.

- 관세수입 변화는 현재의 관세율이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한·필리핀 FTA 관세 인하에 따른 관세수입 감소 규모를 의미함.

표 4-9. 관세율 인하 및 철폐에 따른 관세수입 변화

(단위: 억 원)

	관세수입 감소효과	수입분 내국세 효과	관세 인하 및 철폐 효과(총계)
1~5년차	-462.8	-2.1	-465.0
6~10년차	-753.6	-1.8	-755.4
연평균	-608.2	-2.0	-610.2

주 1: 2021년 관세수입액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 및 철폐 일정에 따라 관세수입 감소액 추정

2: 수입분 내국세는 관세수입액의 9.9%로 가정

다.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입 변화

- 한·필리핀 FTA가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여 추가적으로 세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하게 됨.

- 필리핀과의 교역 증가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추가로 성장하여 세수입이 증가하게 됨.

- 추가적인 관세인하에 따른 장기적인 경제 성장 효과는 산업간 경쟁 심화,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력 향상, 그리고 관련 제도들의 정비 등을 통해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우리나라가 한·필리핀 FTA 체결의 활용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한·필리핀 FTA의 성장효과 추정치에 따르면 실질GDP는 발효 10년까지 약 0.0075% 추가 증가할 것으로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예측하고 있음.

- FTA 발효 후 10년까지는 GDP가 약 0.0075% 증가 예상

□ 앞서 제시한 GDP 성장률 이용하여 한·필리핀 FTA 체결에 의한 경제성장 (GDP 증가)에 따른 세수입 증가 규모를 추정함.

○ 경제성장 효과(0.0075%)를 감안하여 중립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함.

－ 한·필리핀 FTA 발효부터 10년차까지 추가 성장률 0.0075%를 감안하여 GDP가 매년 0.00075% 성장한다고 중립적으로 가정

○ 이러한 세수 증가는 한·필리핀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얼마나 향상되느냐에 따라, 또는 연차별 GDP 증가율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 본 추정에서는 매년 균등하게 경제성장(GDP성장)이 이루어진다고 가정 하였지만, 전체적인 GDP 증가율이 동일하더라도 매년 성장률이 상이할 경우에는 연차별 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이러한 가정 아래 한·필리핀 FTA 발효 이후 연평균 약 187.9억 원 (0.019조 원)의 세수입 증가가 예상됨.

○ 참고로 2021년도 우리나라 국세수입 규모는 약 344조 원이고, 2022년도 국세수입은 약 400조 원을 예상하고 있음.

표 4-10.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입 변화

(단위: 억 원)

	GDP 증가에 따른 세수입 증가효과 추정
1~5년차	80.6
6~10년차	295.1
연평균	187.9

□ 우리나라 국세수입 규모가 344조 원에서 400조 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한·필리핀 FTA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음.

라. 세수효과 종합

- 한·필리핀 FTA 체결에 의해 관세수입은 연평균 약 610.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관세수입액을 기준으로 한·필리핀 FTA 협정에 따라 품목별로 관세 인하 및 철폐가 진행될 경우 연평균 약 608.2억 원의 관세수입액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관세율 인하 및 철폐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 내국세의 추가적인 세수 감소 효과는 연평균 약 2.0억 원 예상
- 관세수입 변화는 현재의 관세율이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한·필리핀 FTA 관세 인하에 따른 관세수입 감소 규모를 의미함.
- 이 밖에 간접적으로 한·필리핀 FTA 체결에 의한 경제성장(GDP 증가)에 따른 세수입 증가는 한·필리핀 FTA 발효 이후 연평균 약 187.9억 원의 세수입 증가가 예상됨.
- 앞서 추정한 GDP 성장률 예측을 전제로 한·필리핀 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GDP가 0.0075%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
- 2022년도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약 400조 원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필리핀 FTA 체결이 우리나라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추정됨.
- 결과적으로 관세수입 감소와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입 증가를 종합해 보면, 한·필리핀 FTA 체결로 인한 세수입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한·필리핀 FTA 발효 후 연평균 약 422.3억 원(0.04조 원)의 세수입 감소가 예상됨.
-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2021년에 약 344조 원, 그리고 2022년에는 약 400조 원을 예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필리핀 FTA 발효가 우리나라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음.

표 4-11. 한·필리핀 FTA 체결에 따른 세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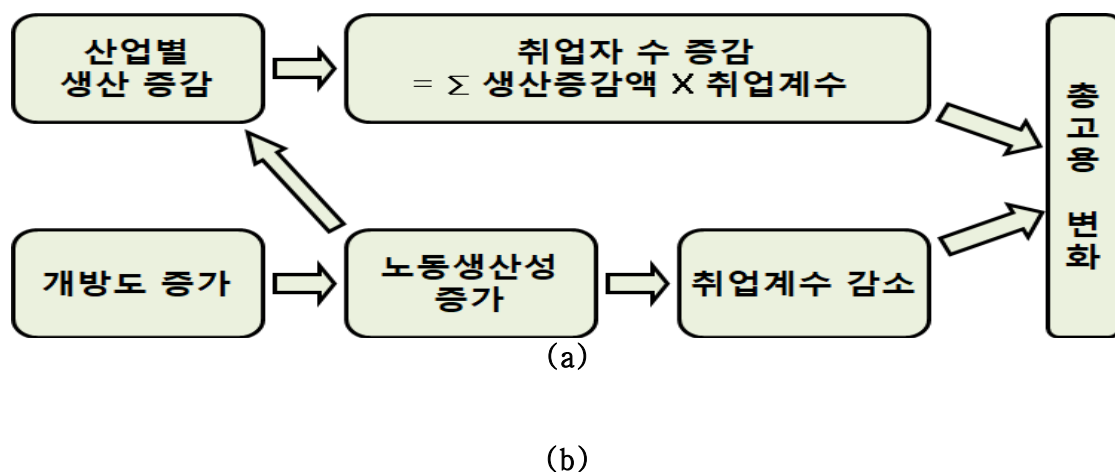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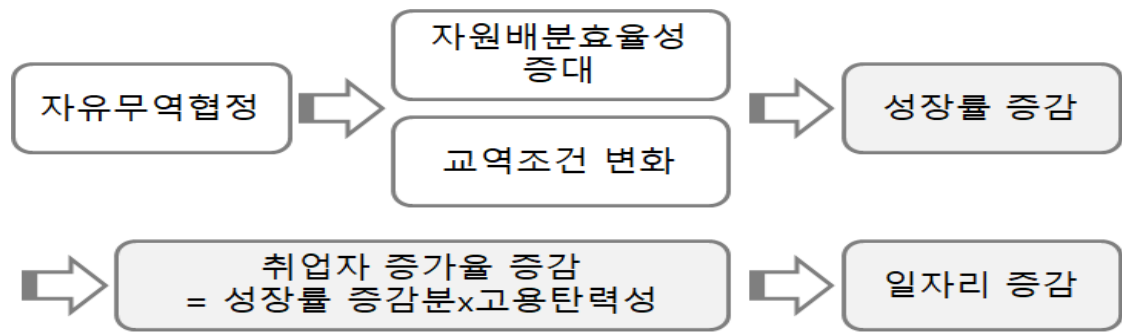
구 분	세수감소			세수증가	세수변화
	관세수입 감소효과	수입분 내국세 효과	합 계	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1~5년차	-462.8	-2.1	-465.0	80.6	-384.4
6~10년차	-753.6	-1.8	-755.4	295.1	-460.3
연평균	-608.2	-2.0	-610.2	187.9	-422.3

부록 1. 경제성장률 증가효과를 이용한 고용효과 추정

- 여기서는 장기적 시계열 분석을 통해 거시경제 차원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확인되는 고용과 성장률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한·필리핀 FTA과 같은 외생적 충격이 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 경제성장(실질GDP 증가) 효과로부터 직접 거시경제 차원의 고용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설명함.
- 과거 산업별 생산액 변화에만 주목하여 분석하는 부문별 FTA 효과 분석에서는 거시경제 차원의 고용효과 분석을 별도로 시도하지 않았으나 한·터키 FTA 효과분석부터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해 산업별 효과 분석의 결과와 병행 제시한 바 있음.
- 다만 이는 한·미 FTA나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에서 사용한 방식과 상이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선행연구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초기부터 사용하던 방식을 사용하였음.

그림 A-1. 취업계수를 이용한 고용효과 도출방법론(a)과 고용탄력성을 이용한 고용효과 도출 방법론(b) 비교





□ FTA의 성장률 효과로부터 고용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의 요체는 성장과 고용 간에 존재하는 장단기 동학을 고려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추정하는 데 있음.

○ 실질 GDP와 고용간의 장기관계식은 <식 A-1>과 같이 설정함.

$$\ln(emp_t) = \beta_0 + \beta_1 \ln(gdp_t) + \beta_2 t + \varepsilon_t \quad (\text{식 A-1})$$

- 여기서 $\ln(emp_t)$ 는 취업자수의 자연대수값, $\ln(gdp_t)$ 는 실질GDP의 자연대수값, t 는 추세항이며, β_1 은 취업자 수 수준과 GDP 수준 간의 장기적 관계에서 도출되는 장기 고용탄력성, β_2 는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로 인한 부가가치 취업계수 감소율)로서 부호는 음(-), ε_t 는 오차항임.

○ 고용과 실질GDP가 <식 A-1>과 같은 장기적 관계를 가질 때 총 고용과 실질GDP의 장단기 동학을 고려한 오차수정모형을 구성하면 단일 방정식의 경우 <식 A-2>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음.

$$\begin{aligned} \Delta \ln(emp_t) = & \alpha_0 + \alpha_1 Z_{t-1} + \sum_{k=0}^3 \delta_k \Delta \ln(gdp_{t-k}) \\ & + \sum_{j=1}^4 \gamma_j \Delta \ln(emp_{t-j}) + \sum_{q=2}^4 \theta_q D_{qt} + \varepsilon_t \end{aligned} \quad (\text{식 A-2})$$

- 여기서, $Z_{t-1} = [\ln(emp) - \hat{\beta}_0 - \hat{\beta}_1 \ln(gdp) - \hat{\beta}_2 t]_{t-1}$ 는 오차수정항, D_{qt} 는

계절더미(seasonal dummy), α_1 은 취업자수가 ‘취업자수와 실질GDP 수준(level)값 간에 존재하는 장기적 균형관계’에서 벗어나 있을 때, ‘현행 취업자수값과 균형값 간의 차이 중 금기(今期)에 조정되는 비율’인 일종의 조정계수, $\sum_{k=0}^3 \delta_k$ 은 취업자 수 변화율과 GDP 변화율 간의 단기적 관계를 규정하는 단기 고용탄력성임.

○ 단일 방정식 형태의 <식 A-2>는 Engle-Granger 2단계 최소자승법(2SLS)에 이용하여 추정함.

□ 보다 엄밀하게 Johansen의 완전정보최우법에 의해 추정을 시도할 수 있음.

○ <식 A-1>을 장단기 동학을 고려한 연립방정식 체계로 표현한 오차수정 모형은 <식 A-3>과 같음.

$$\Delta x_t = \alpha_0 + \alpha_1 z_{t-1} + \sum_{j=1}^4 A_j^* \Delta x_{t-j} + \sum_{q=2}^4 \theta_q D_{qt} + \varepsilon_t \quad (\text{식 A-3})$$

- 여기서, $x_t = (\ln(emp_t), \ln(gdp_t))'$, α_1 은 전기(前期) 값과 균형값 간의 갭이 금기(今期)에 조정되는 비율, z_t 는 오차수정항 벡터, $\sum_{j=1}^4 A_j^*$ 의 상응하는 원소는 단기 고용탄력성을 규정하는 계수들임.

○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은 Johansen(1988, 1991)의 완전정보최우법(FIML)을 이용하여 추정함.

□ 장단기 동학을 고려한 Engel and Granger (1987)의 2단계최소자승추정법(2SLS)과 Johansen(1988, 1991)의 완전정보최우추정법(FIML)에 의거하여 ‘고용의 성장탄력성’(고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는 <표 A-1>과 같음.²⁸⁾

○ 생산성 증가 추세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경우 0.31-0.35, 생산성

28) 보다 자세한 모형 설명과 추정방법에 관해서는 허재준·고영우(2011) 참조

증가 추세변수를 고려한 모형의 경우 0.50수준의 장기 고용탄력성이 도출됨.

표 A-1.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장기고용탄력성 추정결과

	Engle-Granger 2SLS		Johansen FIML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β_0	6.2665*** (0.0828)	4.3083*** (0.317)	5.7858	4.3142
β_1 (장기 고용탄력성)	0.3075*** (0.007)	0.5035*** (0.0315)	0.3485*** (0.0198)	0.501*** (0.0416)
β_2 (연간 생산성 증가효과)		-0.0033*** (0.0005)		-0.0031*** (0.0007)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모형 (1)과 (3)은 생산성 증가 추세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모형이고 모형 (2)와 (4)는 생산성 증가추세를 설명변수로 고려한 모형임.

자료: GDP는 한국은행, 국민계정; 취업자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필리핀 FTA의 성장률 효과, 실질 GDP와 고용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 A-1>의 고용탄력성, 효과가 측정된 시점의 취업자수 전망치로부터 한·필리핀 FTA의 고용증가 효과를 측정하면 <표 A-2>와 같음.

○ 생산성 증가로 인해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감안하여 실현될 고용효과를 측정해 보면 실질GDP가 0.0069%p 증가하는 5년 후에는 62~70명, 실질 GDP가 0.0075%p 증가하는 10년 후에는 70~79명이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GDP가 0.0084%p 증가하는 15년 후에는 82~93명이 증가함(<표 A-2>의 모형(1), (3)).

○ 생산성 증가 추세로 인해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고용 효과(내재적 고용효과)를 측정해 보면 실질GDP가 0.0069%p 증가하는 5년 후에는 100-101명, 실질 GDP가 0.0075%p 증가하는 10년 후에는 114명, GDP가 0.0084%p 증가하는 15년 후에는 133-134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A-2>의 모형(2), (4)).

표 A-2. 실질 GDP증가 효과를 통해 살펴본 한·필리핀 FTA 고용효과

(단위: 명)

	Engle-Granger 2SLS		Johansen FIML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5년 후 0.0069%	62	101	70	100
10년 후 0.0075%	70	114	79	114
15년 후 0.0084%	82	134	93	133

주 : 모형 (1), (3)은 생산성 증가 추세로 인해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측정
한 고용 효과 (실현될 고용효과)

모형 (2), (4)는 생산성 증가 추세로 인해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모형에 감안하
지 않고 측정할 때의 고용 효과(내재적 고용효과)

제5장 한·필리핀 FTA 제조업 효과 분석

1. 제조업 분야 교역구조 개황

□ 한국의 對필리핀 제조업 교역구조

-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은 2021년 94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48% 감소
 - 대필리핀 수출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연평균 43억 달러를 상회한 전기전자 업종으로 대필리핀 수출규모의 46.62%를 차지
 - 전기전자와 석유정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대필리핀 수출규모는 6억 달러를 하회하며 디스플레이의 경우 3천만 달러에 불과
- 한국의 대필리핀 수입은 2021년 34억 달러 수준이며,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연간 변동폭이 크지 않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67% 증가
 - 대필리핀 수출과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업종이 대필리핀 수입의 49.91%를 차지하며 연평균 15억 달러를 수입
 - 또한 대필리핀 수입의 20.46%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은 그 수입규모가 2019년에 크게 증가하였다가 감소
- 한국에 있어 필리핀과의 제조업 교역은 대세계 교역에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수출 비중은 1.44%, 수입 비중은 0.61%에 불과
 - 대세계 수출 중 대필리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를 상회하는 업종은 비철금속, 석유정제, 전기전자임.
 - 반면 대필리핀 수입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대세계 수입 중 차지하는 비중이 2%를 하회

표 5-1. 한국의 對필리핀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수출액					대세계수출 대비 비중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철강	351.6	379.5	233.3	267.2	294.9	0.98	1.07	0.72	0.96	0.78
비철금속	355.6	390.1	320.0	262.3	435.4	3.40	3.29	2.92	2.38	2.80
비금속광물제품	24.5	41.8	43.8	30.1	29.1	1.15	1.80	1.86	1.21	1.06
섬유	282.7	275.7	222.6	168.9	204.0	2.14	2.04	1.79	1.57	1.67
석유화학	238.0	261.5	255.9	202.4	328.9	0.54	0.52	0.60	0.57	0.59
석유정제	1463.1	2133.3	1852.6	849.4	1678.6	4.14	4.57	4.51	3.45	4.35
정밀화학	521.5	582.9	523.4	543.5	775.8	1.75	1.71	1.53	1.43	1.68
전기전자	4945.1	6009.5	3236.3	3305.4	4263.7	3.09	3.33	2.26	2.23	2.20
디스플레이	44.3	33.3	16.8	22.8	31.7	0.22	0.17	0.15	0.22	0.32
반도체	395.0	321.8	376.6	248.5	250.7	1.24	0.87	0.97	0.67	0.60
일반기계	492.6	504.4	337.5	235.6	233.7	1.27	1.19	0.81	0.64	0.57
생활용품	190.0	204.0	225.4	148.2	176.2	1.13	1.25	1.43	1.01	1.06
자동차	470.4	403.2	288.7	142.0	124.7	0.75	0.65	0.45	0.26	0.18
조선	169.2	54.9	14.2	178.9	171.6	0.40	0.26	0.07	0.93	0.76
기타제조업	495.6	265.2	277.1	236.7	443.3	2.29	1.15	1.16	0.85	1.39

표 5-2. 한국의 對필리핀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수입액					대세계수입 대비 비중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철강	27.9	28.5	25.3	19.5	36.0	0.12	0.13	0.11	0.12	0.14
비철금속	460.6	204.9	203.4	212.8	329.1	3.09	1.28	1.40	1.58	1.57
비금속광물제품	3.5	5.0	4.5	1.7	7.3	0.09	0.13	0.12	0.05	0.16
섬유	123.2	137.4	124.2	108.3	119.9	0.89	0.88	0.79	0.73	0.72
석유화학	100.8	124.1	25.7	14.6	41.6	0.72	0.83	0.20	0.13	0.27
석유정제	42.2	28.4	38.3	2.1	11.6	0.23	0.11	0.18	0.01	0.04
정밀화학	41.4	37.2	37	31.1	41.1	0.14	0.11	0.11	0.10	0.10
전기전자	1640.4	1332.7	1125.1	1441.5	2088.9	1.81	1.43	1.21	1.44	1.70
디스플레이	4.2	3.0	1.5	2.5	3.0	0.04	0.04	0.03	0.05	0.05
반도체	317.6	676.1	1260.6	551.7	322.1	0.98	1.97	4.04	1.60	0.74
일반기계	45.0	33.9	19.5	14.6	17.3	0.20	0.15	0.09	0.07	0.07
생활용품	50.9	50.5	70.1	76.7	97.2	0.24	0.22	0.31	0.35	0.36
자동차	15.6	16.1	16.6	12.7	8.5	0.10	0.10	0.10	0.07	0.04
조선	20.1	117.5	0	30.7	18.1	1.02	5.43	0.00	1.06	0.61
기타제조업	266.9	207.8	192	81.5	235.2	0.19	0.12	0.12	0.07	0.13

○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필리핀의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현시비교우위지수(RCA)²⁹⁾와 무역특화지수(TSI)를 업종별로 비교

– RCA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필리핀의 상대적 우위 정도를 나타내며, 1보다 큰 경우 비교우위가 존재한다고 판단

○ 대세계 시장에서 양국 모두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업종은 전기전자, 반도체, 조선이며 한국은 기타제조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필리핀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음.

– 특히 한국은 대세계 시장에서 철강, 석유화학, 석유정제,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에서 비교우위가 있음.

– 한국의 디스플레이 업종의 대세계 RCA는 연평균 5.7243로 조선을 제외하고 가장 높으나 2020년에는 4.4451로 2017년에 비해 연평균 14.52% 감소함.

○ 양국간 무역특화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TSI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서 대필리핀 수출특화를 보임.

– 특히 석유정제, 자동차, 정밀화학, 일반기계, 철강, 디스플레이는 TSI 지수가 0.8을 상회하여 수출특화 정도가 매우 높음.

– 또한 비철금속, 비금속광물제품, 섬유, 생활용품, 기타제조업 등 세계 시장에서 수입특화인 업종 역시 필리핀 시장에서는 수출특화로 나타남.

○ 그러나 반도체 업종은 대필리핀 TSI가 음(-)의 값을 가지는 유일한 수입특화 업종으로 해당 업종의 최근 5년 평균 TSI 지수는 -0.26

29) 한국과 필리핀의 수출 데이터는 각각 관세청, ASEAN stat.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세계 수출 데이터는 UN Comtrade 자료를 이용함. UN Comtrade 자료의 필리핀 외 일부 국가의 경우 HS코드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전의 자료는 구버전코드(HS2012)를 활용함. 이에 각 연도별 버전을 일치시키는 것이 정확하겠으나 신버전코드(HS2017) 적용이 늦은 대부분 국가의 교역규모가 작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HS2017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음.

- 이는 필리핀 내 한국의 후공정 업체가 다수 존재하며 특히 반도체 후공정 업계 1위인 SFA반도체의 핵심 생산 거점이 필리핀인 것에 기인

표 5-3. 한국의 대필리핀 및 대세계 TSI

산업	한국 대필리핀 TSI					한국 대세계 TSI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철강	0.85	0.86	0.80	0.86	0.78	0.23	0.23	0.19	0.24	0.20
비철금속	-0.13	0.31	0.22	0.10	0.14	-0.18	-0.15	-0.14	-0.10	-0.15
비금속광물제품	0.75	0.79	0.81	0.89	0.60	-0.27	-0.24	-0.23	-0.18	-0.24
섬유	0.39	0.33	0.28	0.22	0.26	-0.02	-0.07	-0.11	-0.16	-0.15
석유화학	0.40	0.36	0.82	0.87	0.78	0.52	0.54	0.53	0.53	0.57
석유정제	0.94	0.97	0.96	0.99	0.99	0.32	0.30	0.32	0.21	0.14
정밀화학	0.85	0.88	0.87	0.89	0.90	0.00	0.00	0.03	0.08	0.06
전기전자	0.50	0.64	0.48	0.40	0.34	0.28	0.32	0.21	0.21	0.23
디스플레이	0.83	0.84	0.84	0.80	0.83	0.36	0.42	0.43	0.32	0.23
반도체	0.11	-0.36	-0.54	-0.38	-0.12	-0.01	0.04	0.11	0.04	-0.02
일반기계	0.83	0.87	0.89	0.88	0.86	0.25	0.30	0.30	0.25	0.26
생활용품	0.58	0.60	0.53	0.32	0.29	-0.11	-0.17	-0.18	-0.20	-0.24
자동차	0.94	0.92	0.89	0.84	0.87	0.60	0.57	0.58	0.51	0.55
조선	0.79	-0.36	1.00	0.71	0.81	0.91	0.81	0.86	0.74	0.77
기타제조업	0.30	0.12	0.18	0.49	0.31	-0.73	-0.76	-0.74	-0.63	-0.69

표 5-4. 한국과 필리핀의 대세계 RCA

산업	한국 대세계 RCA					필리핀 대세계 RCA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철강	1.7848	1.6342	1.7587	1.6900	1.7169	0.1254	0.1522	0.1385	0.1182	0.1336
비철금속	0.7958	0.8330	0.9329	0.9778	0.8849	0.8741	0.6232	0.6665	0.8378	0.7504
비금속광물제품	0.4729	0.5170	0.5698	0.6306	0.5476	0.1322	0.1577	0.1953	0.1958	0.1703
섬유	0.6113	0.6154	0.6190	0.5400	0.5964	0.2568	0.2303	0.2139	0.1832	0.2211
석유화학	2.6481	2.7385	2.8782	2.7312	2.7490	0.1417	0.1776	0.1281	0.1260	0.1434
석유정제	1.9109	1.9566	1.9696	1.7548	1.8980	0.1112	0.0953	0.0451	0.0563	0.0770
정밀화학	0.8285	0.8883	0.9839	1.0736	0.9436	0.1551	0.1458	0.1707	0.1448	0.1541
전기전자	1.5811	1.6907	1.4850	1.5005	1.5643	1.5272	1.5624	1.5712	1.4613	1.5305
디스플레이	7.1160	6.5145	4.8214	4.4451	5.7243	0.0626	0.0806	0.1065	0.0797	0.0824
반도체	1.7835	1.9404	2.2216	2.0376	1.9958	0.9833	1.1000	1.1410	0.8635	1.0220
일반기계	1.0622	1.1219	1.2327	1.1824	1.1498	0.2000	0.1745	0.1884	0.1710	0.1835
생활용품	0.3826	0.3638	0.3914	0.4015	0.3848	0.2194	0.2777	0.2615	0.2375	0.2490
자동차	1.3341	1.3254	1.4970	1.5136	1.4175	0.1182	0.1285	0.0975	0.1054	0.1124
조선	1.6554	9.3679	10.2790	10.9992	11.6579	2.7259	2.4028	1.1683	1.3142	1.9028
기타제조업	0.1682	0.1658	0.1881	0.2447	0.1917	0.2133	0.1949	0.2067	0.2131	0.2070

2. 제조업 분야 주요 양허내용 분석

□ 필리핀측 양허내용 분석

○ 필리핀의 대한민국 관세 양허는 제조업 전체 9,348개 가운데 87.8%에 해당하는 8,205개에서 즉시철폐 예정

- 필리핀의 양허안에서 세번내 별도 양허일정을 적용받는 품목³⁰⁾(ex 품목)들은 별개 세번으로 계산, 중복을 허용하여 실제 양허대상세번 수에 비해 집계된 품목 수 9,348개는 다소 과대 계산되었음에 유의
- 10년철폐 품목 2개를 포함하여 민감품목 등 장기철폐품목은 총 564개로 나타남.
- 160개 품목의 경우, 양허제외 품목으로 9,348개 품목 대비 1.7% 수준

표 5-5. 필리핀의 대한민국 관세 양허 분류(전체 품목, 품목수 기준)

(단위: 개)

산업	즉시철폐	3년철폐	5년철폐	10년철폐	15년철폐	민감	양허제외
철강	559	0	0	0	67	0	0
비철금속	252	0	0	0	5	0	1
비금속광물제품	181	10	0	0	18	0	0
섬유	1,014	54	0	2	51	17	0
석유화학	255	1	0	0	9	0	18
석유정제	55	0	0	0	0	0	0
정밀화학	1,029	8	1	0	157	19	0
전기전자	930	8	3	0	36	1	20
디스플레이	46	0	0	0	0	0	0
반도체	200	0	0	0	0	0	0
일반기계	1,074	0	0	0	12	0	0
생활용품	980	3	0	0	47	3	0
자동차	616	0	240	0	1	3	121
조선	66	0	0	0	0	0	0
기타제조업	948	76	15	0	116	0	0
제조업계	8,205	160	259	2	519	43	160

30) 예를 들어, 특정 품목의 일부는 즉시철폐, 일부는 5년 및 잔여분은 15년철폐 등

○ 한편, 교역규모 기준으로는 전체 64억 달러 가운데 93.1%가 즉시철폐 품목에 포함

- 장기철폐품목은 3.3%로 나타났으며, 양허제외 품목은 필리핀의 대한민국 수입 대비 2.5% 수준으로 파악

○ 세번내 분할 품목은 상기와 마찬가지로 중복하여 계산하였음에 유의

표 5-6. 필리핀의 대한민국 관세 양허 분류(전체 품목, 금액 기준)

(단위: 개)

산업	즉시철폐	3년철폐	5년철폐	10년철폐	15년철폐	민감	양허제외
철강	297.1	0.0	0.0	0.0	20.9	0.0	0.0
비철금속	235.3	0.0	0.0	0.0	1.3	0.0	0.0
비금속광물제품	41.0	0.1	0.0	0.0	0.2	0.0	0.0
섬유	162.6	3.4	0.0	0.0	34.2	0.1	0.0
석유화학	194.7	0.4	0.0	0.0	3.2	0.0	25.7
석유정제	1,709.4	0.0	0.0	0.0	0.0	0.0	0.0
정밀화학	297.2	0.6	0.0	0.0	85.7	13.1	0.0
전기전자	1,294.7	4.0	1.5	0.0	32.1	0.1	2.4
디스플레이	22.1	0.0	0.0	0.0	0.0	0.0	0.0
반도체	204.0	0.0	0.0	0.0	0.0	0.0	0.0
일반기계	513.2	0.0	0.0	0.0	2.0	0.0	0.0
생활용품	181.7	0.2	0.0	0.0	11.9	0.6	0.0
자동차	212.2	0.0	83.6	0.0	0.1	0.3	103.8
조선	15.2	0.0	0.0	0.0	0.0	0.0	0.0
기타제조업	562.9	0.3	0.6	0.0	6.4	0.0	0.0
제조업계	5,943.3	9.1	85.7	0.0	198.0	14.2	131.9

○ 한편, 기준세율이 既철폐된 경우, 실질적으로 양허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관세 잔존품목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결과, 품목 및 금액 모두 크게 감소

- 관세 既철폐된 품목은 실질적으로 교역 창출효과의 발생이 가능한 품목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분석결과, 1,725개 품목이 잔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즉철폐 품목은 512개로 30% 수준을 차지

- 민감 및 양허제외 품목을 제외한 1,520개 품목의 관세 철폐가 예상되며, 이는 전체 품목수 대비 88% 수준임.
- 금액 기준으로는 즉철 품목 38%를 포함하여 관세 잔존 품목의 교역 계 대비 80%에 대한 관세 철폐가 예정
- 산업별로는 자동차와 정밀화학을 위주로 관세인하 효과의 발생이 예상

표 5-7. 필리핀의 대한국 관세 양허 분류(실질 양허 품목, 품목수 기준)

(단위: 개)

산업	즉시철폐	3년철폐	5년철폐	10년철폐	15년철폐	민감	양허제외
철강	0	0	0	0	67	0	0
비철금속	2	0	0	0	9	0	1
비금속광물제품	9	10	0	0	18	0	0
섬유	11	54	0	2	52	17	0
석유화학	35	1	0	0	9	0	19
정밀화학	28	8	1	0	179	19	0
전기전자	0	8	3	0	42	1	20
일반기계	2	0	0	0	12	0	0
생활용품	1	3	0	0	48	3	0
자동차	389	0	268	0	1	4	121
기타제조업	35	76	15	0	122	0	0
제조업계	512	160	287	2	559	44	161

표 5-8. 필리핀의 대한국 관세 양허 분류(실질 양허 품목, 금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산업	즉시철폐	3년철폐	5년철폐	10년철폐	15년철폐	민감	양허제외
철강	0.0	0.0	0.0	0.0	20.9	0.0	0.0
비철금속	28.1	0.0	0.0	0.0	2.6	0.0	0.0
비금속광물제품	0.2	0.1	0.0	0.0	0.2	0.0	0.0
섬유	0.0	3.4	0.0	0.0	34.2	0.1	0.0
석유화학	29.6	0.4	0.0	0.0	3.2	0.0	25.9
정밀화학	18.6	0.6	0.0	0.0	98.9	13.1	0.0
전기전자	0.0	4.0	1.5	0.0	33.2	0.1	2.4
일반기계	0.0	0.0	0.0	0.0	2.0	0.0	0.0
생활용품	0.0	0.2	0.0	0.0	12.0	0.6	0.0
자동차	197.7	0.0	83.7	0.0	0.1	0.4	103.8
기타제조업	7.7	0.3	0.6	0.0	6.6	0.0	0.0
제조업계	281.9	9.1	85.8	0.0	213.9	14.3	132.0

□ 한국측 양허내용 분석

- 한국의 필리핀에 대한 양허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제조업 10,075개 품목 가운데 96.7% 품목에서 즉시철폐가 예정
 - 민감 및 양허제외 품목 166개를 제외한 98.3% 품목에서의 관세철폐가 예정되어 있음.
- 수입규모 기준으로는 관세철폐 대상 품목의 규모가 전체 제조업 대비 99.6% 수준으로 나타나 대부분 품목에서 관세 철폐 예정
- 한편, 既철폐 품목을 제외하고 실질적 관세 인하 품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한국의 양허가능 품목은 양허제외 155개 품목을 포함한 495개 품목으로 축소
 - 이 가운데, 민감품목 11개를 포함한 340개 품목에 대한 실질적 관세양허의 발생이 예정

표 5-9. 한국의 대필리핀 관세 양허 분류(전체 품목, 품목수 기준)

(단위: 개)

산업	즉시철폐	3년철폐	5년철폐	10년철폐	15년철폐	민감	양허제외
철강	497	0	0	0	0	0	0
비철금속	308	0	0	0	0	0	1
비금속광물제품	277	2	0	3	2	9	2
섬유	1,176	32	0	0	0	0	13
석유화학	321	0	0	0	0	0	43
석유정제	106	0	0	1	1	0	11
정밀화학	1,791	3	0	5	0	0	16
전기전자	990	0	0	2	0	0	0
디스플레이	69	0	0	0	0	0	0
반도체	301	0	0	0	0	0	0
일반기계	1,069	0	0	0	0	2	0
생활용품	1,215	0	0	3	0	0	1
자동차	158	0	43	0	0	0	0
조선	54	0	0	0	0	0	0
기타제조업	1,415	0	2	33	30	0	68
제조업계	9,747	37	45	47	33	11	155

표 5-10. 한국의 대필리핀 관세 양허 분류(전체 품목, 금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산업	즉시철폐	3년철폐	5년철폐	10년철폐	15년철폐	민감	양허제외
철강	28.4	0.0	0.0	0.0	0.0	0.0	0.0
비철금속	443.2	0.0	0.0	0.0	0.0	0.0	0.0
비금속광물제품	5.3	0.3	0.0	0.0	0.0	0.0	0.0
섬유	115.2	15.7	0.0	0.0	0.0	0.0	0.0
석유화학	119.0	0.0	0.0	0.0	0.0	0.0	1.0
석유정제	32.8	0.0	0.0	0.0	0.0	0.0	2.5
정밀화학	32.0	0.0	0.0	0.0	0.0	0.0	8.2
전기전자	1,489.9	0.0	0.0	0.0	0.0	0.0	0.0
디스플레이	3.7	0.0	0.0	0.0	0.0	0.0	0.0
반도체	497.1	0.0	0.0	0.0	0.0	0.0	0.0
일반기계	41.0	0.0	0.0	0.0	0.0	0.0	0.0
생활용품	51.4	0.0	0.0	0.3	0.0	0.0	0.0
자동차	1.7	0.0	14.3	0.0	0.0	0.0	0.0
조선	137.5	0.0	0.0	0.0	0.0	0.0	0.0
기타제조업	238.2	0.0	0.0	0.0	0.0	0.0	0.1
제조업계	3,236.5	16.0	14.3	0.4	0.0	0.0	11.9

표 5-11. 한국의 대필리핀 관세 양허 분류(실질 양허 품목, 품목수 기준)

(단위: 개)

산업	즉시철폐	3년철폐	5년철폐	10년철폐	15년철폐	민감	양허제외
비철금속	0	0	0	0	0	0	1
비금속광물제품	0	2	0	3	2	9	2
섬유	39	32	0	0	0	0	13
석유화학	0	0	0	0	0	0	43
석유정제	13	0	0	1	1	0	11
정밀화학	10	3	0	5	0	0	16
전기전자	4	0	0	2	0	0	0
일반기계	0	0	0	0	0	2	0
생활용품	0	0	0	3	0	0	1
자동차	63	0	43	0	0	0	0
조선	3	0	0	0	0	0	0
기타제조업	35	0	2	33	30	0	68
제조업계	167	37	45	47	33	11	155

표 5-12. 한국의 대필리핀 관세 양허 분류(실질 양허 품목, 금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산업	즉시철폐	3년철폐	5년철폐	10년철폐	15년철폐	민감	양허제외
비철금속	0.0	0.0	0.0	0.0	0.0	0.0	0.0
비금속광물제품	0.0	0.3	0.0	0.0	0.0	0.0	0.0
섬유	5.8	15.7	0.0	0.0	0.0	0.0	0.0
석유화학	0.0	0.0	0.0	0.0	0.0	0.0	1.0
석유정제	0.3	0.0	0.0	0.0	0.0	0.0	2.5
정밀화학	0.0	0.0	0.0	0.0	0.0	0.0	8.2
전기전자	0.5	0.0	0.0	0.0	0.0	0.0	0.0
일반기계	0.0	0.0	0.0	0.0	0.0	0.0	0.0
생활용품	0.0	0.0	0.0	0.3	0.0	0.0	0.0
자동차	0.2	0.0	14.3	0.0	0.0	0.0	0.0
기타제조업	0.0	0.0	0.0	0.0	0.0	0.0	0.1
제조업계	6.8	16.0	14.3	0.4	0.0	0.0	11.9

○ 단, 495개 품목의 수입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허가능품목의 전체 수입규모는 4,940만 달러 수준으로 최초 양허대상품목 대비 1.5%의 교역규모를 차지

- 양허가능품목 수입규모 4,940만 달러 가운데 24.1%에 해당하는 1,190만 달러는 양허제외 품목으로, 실질적으로 최초 양허대상품목 대비 1.1%에

대해서만 실질적 양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양허대상품목의 수입규모가 미소한 만큼 수입창출효과도 제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주요 수입창출효과 발생업종은 섬유 및 자동차 등임.

3. 제조업 분야 영향분석 방법론

가. 분석 모형 개요

- 한·필리핀 FTA 체결의 제조업분야 효과는 품목별 수출입가격 탄력성을 고려하는 부분균형모형에 기초
 - 부분균형모형(partial equilibrium model)은 관세율 변화, 수입(수출)규모, 수입(수출) 가격탄력성만을 이용하여 교역 증가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일반균형모형(general equilibrium model)과 구별
 - 일반균형모형은 타 산업으로의 자원 이동 등 장기의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FTA 발효에 따른 양허의 효과 이외 요인으로 인한 변화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세부 업종별 분석에는 부분균형모형이 적합
 - 일국 교역에 발생하는 t 기 FTA의 순효과는 각 품목별 ①FTA로 인한 관세인하폭, ②기준년도 교역액, ③관세인하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elasticity)를 고려하여 산출 가능
- 본 분석은 발효시점 이전에 이의 효과를 예측하는 사전적 성격을 띠며, 발효 이후의 외생적 변화를 반영할 수 없어 2017~2019년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
 - 기준년도(②)는 경기변동, 산업내 비시장적 변동, 외교갈등 등 외부적 요

인에 의해 변동할 여지가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고정하거나 선형(linear) 증가를 간주하였으며, 여기서는 2020년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인한 이상치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고려 이전 3년 기간의 평균을 사용

○ 탄력성(③)의 경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수입행태의 체계적 변화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품목 및 국가마다 항존하는 특성으로 간주

- 일반적으로 수입 가격탄력성 추정을 위해서는 HS개정 등의 문제로 가능한 고빈도 자료를 사용해 왔으며, 가능한 국가들에서 월별 자료가 발표, 한국 역시 관세청에서 수출입에 대하여 월별 자료를 발표

- HS개정이 5년마다 발생함을 고려하면, 월별자료라 하더라도 각 품목별 최대 관측치 수는 60개로,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분기(20개) 및 연(5개) 간 자료에 비해서는 나은 실정

- 따라서, 한국 관세청 기준 수출입 자료를 기반으로 최소 월별 통계를 확보하고, 이후 최소한의 통제변수로 소득변수를 고려하여 탄력성을 계산, 여기서 월별 소득 변수는 산업생산지수 활용이 일반적

□ 부분균형모형 도출결과를 바탕으로 FTA 발효의 순수출효과를 국민경제에 대한 외생적 충격으로 간주, 산업연관모형을 통해 생산, 노동에 미치는 효과를 산출함.

○ 산업연관모형(수요모형)은 특정산업 최종수요가 변화에 따른 해당 산업 및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임.

○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순수출 효과를 국내생산에 대한 외생적 충격으로 가정, 산업연관모형을 통해 생산 증감효과를 1차적으로 산출함.

- 각 산업별 부가가치 부가가치계수를 이용하여 산업별 부가가치효과를 도출함.

나. 세부 모형 설정 및 탄력성 추정 방법론

- 한·필리핀 FTA 발효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은 부분균형모형에 기초하였으며, 이를 위해 수입국을 기준으로 수입가격탄력성을 산출
 - 부분균형모형은 관세율, 수입규모, 수입 가격탄력성으로부터 관세인하로 인한 양국 간 수입 증가효과를 분석
 - 부분균형모형은 세부 품목별 효과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제조업분야 FTA 효과분석에 일반적으로 이용
 - 이진면 외(2017)³¹⁾는 한미 및 한일간 교역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바 있으며, 여기서도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가격탄력성을 추정
- 한국 수출에 대한 교역상대국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을 위해 교역 대상국이 직면한 상대가격과 소득을 주요 변수로 하는 수출함수를 고려
 - 실제 양허는 세번(tariff line) 단위에서 이루어지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여기서는 HS 소호 수준에서 자료를 집계
 - 여기서는 교역상대국의 수입물량(한국의 수출물량)과 가격, 소득을 주요 설명변수로 하여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해석에 있어서도 변수의 누락 가능성이 인지하여야 함.
 - 분석대상인 소호 단위에서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편의를 야기

31) 이진면, 김바우, 김정현(2017), 세부품목단위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연구자료

- 변수 누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 품목별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나 이는 기하급수적으로 큰 시간적·회계적 비용을 야기

$$X_t^F = f(RP_t, Y_t) \quad (\text{식 5-1})$$

- <식 5-1>에서 X_t^F 는 F 국의 t 기 對한국 수입물량, RP_t 는 t 기 상대가격, Y_t 는 t 기 F 국 소득을 나타냄.

- Houthakker and Magee(1969, 이하 H&M)의 추정을 양국 간 교역에 맞추어 변형하고 HS 품목별로 세분화하면 <식 5-2>를 얻을 수 있음.

- H&M에서는 위 수입(한국의 수출)함수를 로그형태로 변형하여 각각의 i 품목에 대한 수입함수를 OLS 추정

$$\ln EX_t = \beta_0 + \beta_1 \ln RP_t + \beta_2 \ln Y_t + u_t \quad (\text{식 5-2})$$

- <식 5-2>에서 EX_t 는 F 국의 t 기 對한국 i 품목 수입물량, RP_t 는 F 국이 직면하는 i 품목의 t 기 상대가격을 의미하며, u_t 는 통계적 오차항임.

- 본 연구에서는 상기 <식 5-2>에 공적분 관계를 고려한 모형을 설정

- <식 5-2>를 OLS 추정하면 EX_t 와 RP_t 간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계열 자료 특성상 추세로 인한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 문제 역시 발생 가능

① FMOLS(Fully Modified OLS) 추정

- 상기 <식 5-2>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품목별 상대가격과 소득변수에 대한 장기균형관계의 추계를 위한 FMOLS(Fully Modified OLS) 추정을 고려함.

○ FMOLS 추정을 위해 국가별 및 품목별 장기균형관계를 다음 <식 5-3>과 같이 나타냄.

○ 이 때, δ_1 과 δ_2 는 각각 수입(한국의 수출)물량과 상대가격 및 상대국 소득간 장기적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계수들은 탄력성으로 이해

○ 수입(한국의 수출)물량과 가격, 그리고 상대국 소득 관계에 대한 계수를 전통적 무역이론에 의거하여 예상하면 $\delta_1 < 0$, $\delta_2 > 0$ 을 기대

□ 각 품목 i 에 대해 <식 5-3>을 이용한 FMOLS를 통한 추정시 계열상관 문제와 내생성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Phillips and Hansen, 1990).

$$\ln EX_t = AX_t + u_{0t} = \Gamma_{21}' D_{1t} + \Gamma_{22}' D_{2t} + u_{0t} \quad (\text{식 5-3})$$

- <식 5-3>에서 A 는 계수 행렬이고, 설명변수 벡터 X_t 를 성격에 따라 둘로 나누면 D_{1t} 는 추세 설명변수, D_{2t} 는 기타 설명변수($\ln RP_t$, $\ln Y_t$)를 의미함.

○ 먼저, 내생성의 조정은 종속변수 $\ln EX_t$ 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조정치 $\ln EX_t^+$ 는 다음 식을 통해 계산

$$\ln EX_t^+ = \ln EX_t - \Omega_{02} \Omega_{22}^{-1} \hat{u}_2 \quad (\text{식 5-4})$$

- <식 5-4>에서 Ω_{02} 는 u_{0t} , ΔD_{2t} 의 장기공분산행렬, Ω_{22} 는 ΔD_{2t} 의 장기분산의 커널 추정치임.

○ 다음으로, 계열상관(serial correlation)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추정치를 다음 값만큼 조정

$$\hat{\Delta}_{02}^+ = \hat{\Delta}_{02} - \Omega_{02} \Omega_{22}^{-1} \hat{\Delta}_{22} \quad (\text{식 5-5})$$

- <식 5-5>에서 $\hat{\Delta}_{02}$, $\hat{\Delta}_{22}$ 는 각각 u_{0t} , ΔD_{2t} 및 ΔD_{2t} 간 일방장기공분산행렬

(one-sided long-run covariance)의 커널 추정치임.

- 결과적으로 내생성과 계열상관이 조정된 FMOLS 추정치는 다음 식을 통해 계산함.

$$\hat{A}^+ = (\ln EX_t^+ X_t - T \hat{\Delta}_{02}^+)(X_t' X_t)^{-1} \quad (\text{식 5-6})$$

② ARDL 모형

- 장기 상관관계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ARDL 모형을 응용함.

- ARDL 모형은 작은 규모의 관측치에서도 변수간 장·단기 영향 추정에 있어서 Engel and Granger(1987)나 Johansen(1995)의 방법에 비해 효과적임(Pesaran and Shin, 1999).

- 추정을 위한 관측치는 최대 60개로, 충분한 수의 관측지 확보가 어려워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모형 사용이 유리함.

- ARDL의 장기관계추정을 위해서는 먼저 수입(한국의 수출)물량과 설명변수들을 이용한 ARDL 모형을 다음 <식 5-7>과 같이 설정함.

$$\ln EX_t = \phi_0 + \sum_{k=1}^p \phi_{1ik} \ln EX_{t-k} + \sum_{k=0}^{q_1} \phi_{2ik} \ln RRP_{t-k} + \sum_{k=0}^{q_2} \phi_{3ik} \ln Y_{t-k} + e_t \quad (\text{식 5-7})$$

- <식 5-7>에서 p, q_1, q_2 는 각 변수의 시차항, $\phi_{1ik}, \phi_{2ik}, \phi_{3ik}$ 는 시차계수를 나타냄.

- 변수간 장기균형관계를 다음 <식 5-8>의 조건과 같이 가정하면 <식 5-7>을 <식 5-9>, <식 5-10>과 같이 변형이 가능함³²⁾.

32) <식 5-5>는 종속변수의 시차항을 이항 후 정리하여 얻어짐.

$$\begin{cases} EX^* \equiv EX_t \equiv EX_{t-1} \equiv \dots \equiv EX_{t-p} \\ RP^* \equiv RP_t \equiv RP_{t-1} \dots \equiv RP_{t-q_1} \\ Y^* \equiv Y_t \equiv Y_{t-1} \equiv \dots \equiv Y_{t-q_2} \end{cases} \quad (\text{식 5-8})$$

$$\ln X_i^* = \gamma_0 + \gamma_1 \ln RP_i^* + \gamma_2 \ln Y^* \quad (\text{식 5-9})$$

$$\gamma_0 = \frac{\phi_0}{1 - \sum_{k=1}^p \phi_{1ik}}, \quad \gamma_1 = \frac{\sum_{k=0}^{q_1} \phi_{2ik}}{1 - \sum_{k=1}^p \phi_{1ik}}, \quad \gamma_2 = \frac{\sum_{k=0}^{q_2} \phi_{3ik}}{1 - \sum_{k=1}^p \phi_{1ik}} \quad (\text{식 5-10})$$

□ ϕ_{1ik} , ϕ_{2ik} , ϕ_{3ik} 는 각 변수의 단기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식 (9)에서의 γ_1 , γ_2 는 변수간 장기관계를 나타냄.

○ γ_1 , γ_2 의 유의도 검정을 위해 Wald test를 수행

○ ARDL 형태에서 장기균형관계를 추계하는 경우, FMOLS에 비해 단기적 조정과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③ 탄력성 적용 방법론

□ 관세 및 비관세장벽은 교역에 있어 일종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측치의 발생은 교역조건과도 밀접히 연관

○ 관세장벽은 거래비용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³³⁾ 교통수단의 발달,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물리적 거래비용의 제약이 상당히 완화된 현재 높은 관세장벽은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주된 요인

○ 통상협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조정 따라 비교역제도 교역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그 역의 경우도 상정 가능

33) 운송비용, 보관 및 화물료 등이 거래비용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비교역제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탄력성 추정에 있어 주의할 점은 상기 거래비용 등으로 인하여 관측치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이로 인해 세부 품목 단위에서 탄력성이 제대로 추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탄력성의 안정성 문제는 세부 단위 수준(HS류→소호 수준)에서 분석시에 더욱 빈번하게 발생
- 즉, 소호 수준 자료에서 결측치가 존재하게 되면 추정된 탄력성에 대한 통계적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음.
- 비교역재의 탄력성 추정을 위해 비슷한 품목의 탄력성을 전용(轉用)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관측치 부족으로 인해 탄력성 추정이 어려운 경우³⁴⁾, 또는 추정된 경우에도 관측치 부족이 탄력성 추정치의 유의도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상위 단위에서 추정된 탄력성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 상위 단위 탄력성을 적용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모형별로 추정한 탄력성이 모두 신뢰할 만하지 않은 경우
- 가격과 상관없는 수출물량의 지속적 상승, 또는 하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장기균형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때 연립방정식모형이나 OLS 추정치 역시 신뢰할 수 없어 이러한 경우에도 상위 단위의 탄력성을 전용(轉用)하였음.
- 추정결과 검토에 있어 유의할 점은 관측치 부족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결과, 하위단위 분석대상의 취합자료와 상위단위 분석대상의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임.

34) 여기서는 임의적으로 관측치 수 $t \leq 30$ 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음.

- 예를 들어, HS 2단위 i 류는 각각 l, m 소호로 나뉘고 시점 t 에 대하여 $l \in [0, 30], m \in (30, 59]$ 일 때, 각 소호 l 과 m 은 관측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이들로 구성된 전체 i 류의 관측치는 관측시점 모두에 대하여 존재
- 이러한 경우에 분석대상 소호에서 취합한 류 수준 자료와 분석대상 류의 포괄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음.

다. 생산효과 추정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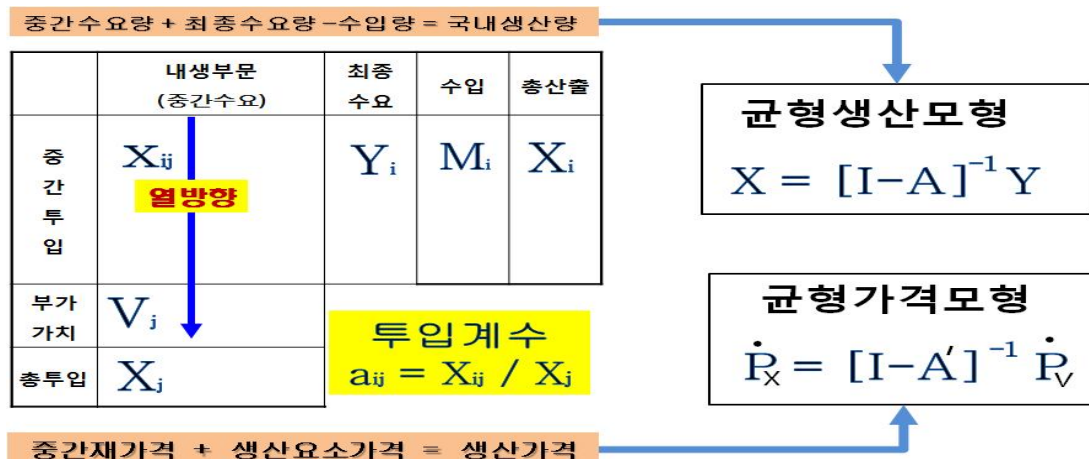
- 한·필리핀 FTA의 예상 수출 증가 규모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각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낼 수 있음.
- 생산효과 추정을 위해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산업연관분석모형을 활용하며 추정된 수출은 생산유발을 위한 외생적 충격으로 기능
 - 일반적으로 양자 협상에서 양국의 교역이 동시에 증가하는 점을 고려, 생산유발효과는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차감)을 외생 충격으로 가정하여 계산되어지나 여기서는 수출효과만을 추정하였으므로 수출효과를 외생 충격으로 가정
-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산업간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임.
- 산업연관표를 통해 산업별 수급균형을 충족하기 위한 생산을 분석하는 일 반균형적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음.
- 산업연관표는 기본적으로 각 산업간 생산을 위한 중간투입과 최종수요(민간 및 정부소비, 고정자본형성, 순수출 등으로 구성), 수입, 행 방향의 피용자 보수와 영업잉여 등 부가가치로 구성됨.

-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원칙에 따라 총투입과 총산출은 일치됨.
- 즉,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총투입과 총산출이 일치하지 않게 되지만 중간재 투입관계에 따라 최종적으로 균형상태에 도달을 가정, 이 때에는 총투입과 총산출이 일치하게 됨.
- 산업연관모형은 수요모형과 가격모형, 공급모형, 혼합모형 등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본모형인 수요모형을 사용하였음.
- 수요모형은 최종수요변화가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산업이 초과생산능력을 가진다고 가정함.

그림 5-1. 산업연관표 구조도

		중간수요				최종수요 (외생부문)	수입(공제)	총산출액
		1산업	2산업	...	n산업			
중 간 투 입	1산업	생산물의 판매(수요)내역 (배분구조, 행방향) 원재료, 노동, 자본 구입내역 (투입구조, 열방향)						
	2산업							
	...							
	n산업							
부가가치 (외생부문)								
총투입액								

그림 5-2. 수요모형과 가격모형의 원리



○ 생산유발 산식은 위 그림의 균형생산모형에서 Y 의 변화를 통해 계산함.

$$\Delta X = (I - A^d) \Delta Y \quad (\text{식 5-11})$$

- <식 5-11>에서 ΔX 는 최종수요(순수출) ΔY 의 변화로 인한 생산유발액, I 는 단위행렬, A^d 는 국산투입계수임³⁵⁾.

라. 분석의 전제: RCEP 발효 영향 미고려

□ 한·필리핀 FTA 발효시점을 2023년으로 가정시, 대안적 사실로 고려해야 할 세율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

○ 먼저, WTO 협정세율(MFN)과 한·ASEAN FTA 양허세율을 고려할 필요

- 한·ASEAN FTA는 관세인하가 종료되어 추후 관세 변동이 없음을 가정, 양 세율 가운데 더 낮은 값을 적용

○ 다음으로, 최근 추진된 RCEP에서 대필리핀 양허일정에 대한 적용을 고려 하였으나, 본 분석에서는 미적용

- 현재 필리핀의 비준상황을 고려, RCEP은 미발효한 상태로 간주³⁶⁾

○ 종합하면, MFN과 한·ASEAN FTA 관세의 최솟값 적용을 가정

- 한국 수출시 적용되는 필리핀 관세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결정

□ 쿼터 등의 이유로 관세가 다르게 적용되는 품목들의 경우, 구분가능하면 각

35)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는 수입 및 국내 중간재 투입을 모두 포함한 총거래표 외에 국산중간재의 거래관계를 조사하는 국산거래표를 작성, 생산 및 고용영향을 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국산거래표를 활용

36) RCEP의 영향을 포함한 효과도 별도 추정하였으며, 이는 부표 참고

각의 관세를 별도 적용,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세율의 적용을 가정

- 필리핀의 경우, 쿼터내 세율과 쿼터외 세율을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는 반면, 일부 품목은 구분이 어려움.
- 한국 및 필리핀 일부 품목의 세율 후보가 다수인 경우, 적용가능 세율중 가장 높은 세율의 적용을 가정
- 이는 대안세율 뿐 아니라 양허세율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4. 제조업 분야 영향분석 결과

가. 교역 창출효과 분석 결과

- 수출 창출효과는 관세철폐 단계에 따라 기준 수출규모의 3.2%~5.5% 수준으로 예상되며, 제조업 전체에서 연평균 2,570만 달러, 기준 대비 4.4% 수준으로 예상
- 1~5년간 양허에 의한 수출 효과는 전산업에서 1,870만 달러(기준 수출 대비 3.2%), 6~10년에는 2,630만 달러, 11~15년에는 3,210만 달러로, 既 철폐 품목을 제외하면 한국의 對필리핀 교역이 크지 않아 수출 창출효과도 장기에 연평균 2,570만 달러 수준으로 나타남.
- 양허대상품목의 한국의 對필리핀 수출은 2017~2018년 평균 기준 5.8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RCEP 양허를 고려하지 않아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창출 효과는 단조 증가
- RCEP 양허를 고려하면, 현재 적용되는 반사실적(counterfactual) 관세가 더욱 낮아질 여지가 있으며, 양허일정에 따라 수출창출효과는 비선형 관계를 보일 수 있음.
- 업종별로 구분하면 자동차의 수출효과가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는 연평균 1,340만 달러의 수출효과가 예상되어 전 산업 대비 52.1%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이외 수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들은 정밀화학 및 전기전자이나, 수출 창출효과는 도합 7백만 달러 수준으로 크지 않음.
- 전기전자와 철강에서 수출 창출효과는 기준대비 9.0%, 7.2%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효과가 컸던 자동차는 기준 대비 4.8% 수준

- 한편, 한국의 對필리핀 수입창출효과를 살펴보면, 약 170만 달러 규모의 수입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준 대비 4.6% 수준
 - 한국의 통상 교역규모와 비교할 때, 한·필리핀 FTA 발효로 인한 수입창출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이는 MFN, 한·아세안 FTA 등에서 既관세철폐 품목이 다수를 차지하여 관세 잔존품목이 최소화되었기 때문
 - 수입창출효과를 살펴보면, 자동차 및 섬유에서 대부분 수입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섬유의 경우 기준 대비 4.9%의 수입창출효과가 발생

표 5-13. 한·필리핀 FTA 제조업 분야 수출 창출효과

(단위: 백만 달러, %)

	기준 교역액	1~5년차 효과 (연평균)	기준 대비 비율	6~10년차 효과 (연평균)	기준 대비 비율	11~15년차 효과 (연평균)	기준 대비 비율	1~15년차 효과 (연평균)	기준 대비 비율
철강	20.9	0.6	2.8	1.5	7.2	2.4	11.6	1.5	7.2
비철금속	29.4	0.4	1.3	0.4	1.3	0.4	1.4	0.4	1.3
비금속광물제품	0.5	0.0	2.2	0.0	3.0	0.0	3.6	0.0	3.1
섬유	37.7	0.3	0.9	0.7	1.9	1.1	2.9	0.7	1.9
석유화학	33.3	1.8	5.3	1.8	5.4	1.9	5.6	1.8	5.4
정밀화학	116.7	1.8	1.5	3.7	3.1	5.8	4.9	3.7	3.2
전기전자	36.2	1.4	3.7	3.3	9.1	5.2	14.3	3.3	9.0
일반기계	2.0	0.0	1.0	0.1	2.5	0.1	4.1	0.1	2.5
생활용품	12.1	0.1	1.0	0.3	2.5	0.5	4.0	0.3	2.5
자동차	280.5	12.1	4.3	14.1	5.0	14.1	5.0	13.4	4.8
기타제조업	14.9	0.3	1.7	0.5	3.4	0.7	4.9	0.5	3.3
전체	584.3	18.7	3.2	26.3	4.5	32.1	5.5	25.7	4.4

주: 기준 교역액은 2017~2018년 기준, 협상안에 포함된 품목의 교역액을 의미

표 5-14. 한·필리핀 FTA 제조업 분야 수입 창출효과

(단위: 백만 달러, %)

	기준 교역액	1~5년차 효과 (연평균)	기준 대비 비율	6~10년차 효과 (연평균)	기준 대비 비율	11~15년차 효과 (연평균)	기준 대비 비율	1~15년차 효과 (연평균)	기준 대비 비율
비금속광물제품	0.3	0.0	0.9	0.0	1.2	0.0	1.2	0.0	1.1
섬유	21.6	0.9	4.4	1.1	5.2	1.1	5.2	1.1	4.9
석유정제	0.3	0.0	1.7	0.0	1.7	0.0	1.7	0.0	1.7
정밀화학	0.0	0.0	0.7	0.0	1.8	0.0	2.3	0.0	1.6
전기전자	0.5	0.0	8.1	0.0	8.2	0.0	8.2	0.0	8.1
일반기계	0.0	0.0	0.8	0.0	2.1	0.0	2.7	0.0	1.9
생활용품	0.3	0.0	1.4	0.0	3.8	0.0	4.8	0.0	3.3
자동차	14.4	0.4	3.0	0.7	4.9	0.7	4.9	0.6	4.3
기타제조업	0.0	0.0	2.1	0.0	2.5	0.0	2.6	0.0	2.4
전체	37.5	1.4	3.8	1.9	5.0	1.9	5.1	1.7	4.6

주: 기준 교역액은 2017~2018년 기준, 협상안에 포함된 품목의 교역액을 의미

나. 생산효과 분석 결과

- 對필리핀 수출 확대에 따른 생산효과를 추계한 결과, 관세인하 영향을 받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효과가 발생
 - 제조업 전반에서 316억 원의 수출 확대가 예상
 - 자동차는 연평균 169억 원의 수출 증가가 추산되었으며, 섬유 및 의복은 0.4억 원의 순수출 감소가 예상
- 산업연관분석 결과 연평균 662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
 - 제조업에서 연평균 537억 원의 생산효과가 예상되었으며, 서비스업은 122억 원의 생산파급효과가 추산
 - 제조업 가운데 자동차는 외생 충격이 커 생산 효과 역시 230억 원으로 크게 나타남.
 - 서비스업의 경우, 유발 수요에 의한 생산효과가 계상되어 연평균 122억 원의 생산효과가 예상
- 양허일정에 따라 구분하면, 생산효과는 양허 11~15년차에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됨.
 - 양허 1~5년차의 수출 증가는 전산업에 걸쳐 연평균 227억 원 수준으로 예상, 이에 따른 생산효과는 494억 원 수준
 - 한편, 11~15년차에는 수출 증가 효과가 398억 원으로, 생산 효과는 814억 원으로 확대

표 5-15. 한·필리핀 FTA 제조업 분야 생산 효과

(단위: 십억 원)

산업 구분	1~5년차 효과 (연평균)		6~10년차 효과 (연평균)		11~15년차 효과 (연평균)		1~15년차 효과 (연평균)	
	외생 충격	생산 효과	외생 충격	생산 효과	외생 충격	생산 효과	외생 충격	생산 효과
농림어업	0.0	0.1	0.0	0.1	0.0	0.2	0.0	0.1
광업	0.0	0.0	0.0	0.1	0.0	0.1	0.0	0.1
제조업계	22.7	40.3	32.2	55.0	39.8	65.9	31.6	53.7
식음료 및 담배	0.0	0.2	0.0	0.3	0.0	0.4	0.0	0.3
섬유 및 의복	-0.8	-0.7	-0.5	-0.2	0.0	0.5	-0.4	-0.1
목재 및 목제품	0.0	0.3	0.0	0.4	0.0	0.6	0.0	0.4
석유화학	2.3	3.0	2.4	3.5	2.4	3.9	2.4	3.5
화학	2.3	5.3	4.8	9.2	7.6	13.0	4.9	9.2
비금속광물제품	0.0	0.3	0.0	0.4	0.0	0.5	0.0	0.4
철강	0.8	3.3	2.0	5.3	3.2	7.0	2.0	5.2
금속제품	0.5	2.3	0.5	2.7	0.5	2.9	0.5	2.7
전기전자	1.7	2.6	4.3	5.7	6.8	8.6	4.3	5.7
전기장비	0.0	1.3	0.0	1.5	0.0	1.6	0.0	1.5
일반기계	0.0	0.8	0.1	1.0	0.1	1.1	0.1	1.0
자동차	15.4	21.0	17.6	24.0	17.6	24.1	16.9	23.0
기타 제조업	0.5	0.5	1.0	1.1	1.6	1.7	1.0	1.1
서비스업	0.0	8.9	0.0	12.5	0.0	15.3	0.0	12.2
전산업	22.7	49.4	32.2	67.7	39.8	81.4	31.6	66.2

주: 양허안 가운데 분류가 어려운 농산물, 생활용품은 기타 제조업으로, 자동차부품은 자동차로 분류하여 계산

제6장 한·필리핀 FTA 농림축산업 효과 분석

1. 한·필리핀 농림축산물 생산 및 교역 동향

가. 필리핀 농축산물 생산 동향

□ 필리핀에서 농림축산물 중 생산량이 많은 품목은 쌀, 사탕수수, 과일류(코코넛, 바나나, 파인애플)이고, 생산액이 높은 품목은 쌀,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류(코코넛, 바나나, 파인애플) 등임.

○ 필리핀에서 생산액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쌀(rice)임. 2020년 쌀 생산량은 1,930만 톤, 생산액은 65억 달러이며 지난 20년간 생산량과 생산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쌀 생산량은 최근 3년 연평균 0.6% 증가하였고, 생산액은 동기간 5.3% 감소함.

○ 과일류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품목은 코코넛, 바나나, 파인애플이며 2000년 이후 생산량이 모두 증가하였지만, 최근 3년 연평균 증감률은 다소 감소함.

－ 과일류 품목 중 가장 많이 생산되는 품목은 코코넛이며, 2020년 생산량은 1,449만 톤으로 3년 동안 연평균 0.8%씩 감소하였고, 생산액은 22억 달러로 동기간 3.3%씩 감소함.

－ 바나나는 바나나와 플랜틴과 기타 바나나³⁷⁾로 나누어 생산량이 집계됨. 2020년 바나나 생산량은 596만 톤으로 최근 3년 연평균 1.6%씩 감소하였고, 플랜틴과 기타 바나나의 2020년 생산량은 310톤으로 동기간 1.8%씩 감소함. 2020년 생산액은 17억 달러로 최근 3년 연평균 0.6%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37) 플랜틴 바나나는 사각진 바나나로 요리/가공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2019~2021년 바나나 수입량은 기타 바나나(0803900000)의 비중이 100%를 차지함.

- 파인애플의 2020년 생산량은 270만 톤으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0.5%씩 감소하였으나, 생산액은 8억 달러로 동기간 3.2%씩 증가함. 이는 파인애플 생산 단가가 최근 3년 동안 상승한 것을 의미함.
-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생산량 순위는 낮으나, 상대적으로 생산 단가가 타 품목보다 높아 생산액 순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생산량은 최근 3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단가 상승으로 생산액은 증가하고 있음.

표 6-1. 필리핀 농림축산물 생산량 동향

(단위: 천 톤)

품목	2000	2005	2010	2015	2018	2019	2020	'18-'20 평균	전년 대비 증감률	최근 3년 연평균 증감률
사탕수수	21,223	22,918	17,929	22,926	24,731	20,719	24,399	23,283	17.8	-0.7
쌀	12,389	14,603	15,772	18,150	19,066	18,815	19,295	19,059	2.6	0.6
코코넛	12,995	14,825	15,510	14,735	14,726	14,765	14,491	14,661	-1.9	-0.8
계란	5,111	6,727	8,447	9,706	11,657	12,734	13,226	12,539	3.9	6.5
옥수수	4,511	5,253	6,377	7,519	7,772	7,979	8,119	7,956	1.8	2.2
바나나	4,930	6,298	9,101	5,840	6,144	6,050	5,955	6,050	-1.6	-1.6
기타 신선 채소	4,100	4,115	4,616	5,145	5,201	5,220	5,229	5,217	0.2	0.3
기타 신선 열대 과일	2,900	3,185	3,227	3,239	3,229	3,229	3,229	3,229	0.0	0.0
플랜틴과 기타 바나나	0	0	0	3,244	3,214	3,108	3,101	3,141	-0.2	-1.8
파인애플	1,560	1,788	2,169	2,583	2,731	2,748	2,703	2,727	-1.6	-0.5
카사바	1,766	1,678	2,101	2,711	2,723	2,631	2,608	2,654	-0.9	-2.1
돼지고기	1,213	1,415	1,636	1,776	1,624	1,608	1,500	1,577	-6.7	-3.9
맥주보리	816	892	983	1,414	2,220	2,220	-	1,480	-	-
닭고기	533	650	869	1,186	1,414	1,484	1,394	1,431	-6.1	-0.7
설탕	1,676	2,238	1,717	2,239	2,115	2,037	-	1,384	-	-
코코넛유	1,358	1,508	1,746	1,124	1,341	1,194	-	845	-	-
기타 알류	876	872	601	681	753	812	827	797	1.8	4.8
당밀	853	900	950	1,034	1,180	1,170	-	783	-	-
망고, 망고스틴, 구아바	869	1,003	844	917	725	754	753	744	-0.1	1.9
고구마	554	575	541	536	526	526	547	533	4.0	2.0
과일팜유	245	355	565	432	500	499	493	498	-1.3	-0.7
천연고무	216	316	395	398	423	432	422	426	-2.1	-0.1
돼지내장	243	283	327	355	325	322	300	315	-6.7	-3.9
호박	143	393	342	301	281	271	267	273	-1.7	-2.6
기타신선과일	140	166	291	245	249	250	250	250	0.2	0.3
가지	166	188	208	233	245	250	243	246	-2.9	-0.4
캐슈넛	111	117	135	206	229	242	256	242	5.6	5.8
토마토	148	174	204	215	221	223	222	222	-0.6	0.3
돼지기름	166	194	224	244	223	220	206	216	-6.7	-3.9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2.8.18.)

표 6-2. 필리핀 농림축산물 생산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품목	2000	2005	2010	2015	2018	2019	2020	'18-'20 평균	전년 대비 증감률	최근3년 연평균 증감률
쌀	2,361	2,765	5,199	6,912	7,263	6,157	6,517	6,645	5.8	-5.3
돼지고기	2,021	2,630	4,691	5,437	5,034	4,784	5,229	5,016	9.3	1.9
닭고기	898	1,074	2,367	3,171	3,844	4,040	4,136	4,007	2.4	3.7
코코넛	582	963	1,836	2,099	2,310	1,956	2,158	2,141	10.4	-3.3
옥수수	677	761	1,573	2,126	2,117	2,095	2,058	2,090	-1.8	-1.4
바나나	448	749	1,989	1,575	1,682	1,650	1,662	1,665	0.7	-0.6
기타 채소	632	719	1,396	1,720	1,483	1,559	1,678	1,574	7.6	6.4
기타 열대과일	895	915	1,605	1,781	1,514	1,535	1,595	1,548	3.9	2.6
사탕수수	725	652	1,188	1,495	1,504	1,291	1,546	1,447	19.8	1.4
계란	276	389	787	1,028	1,255	1,379	1,610	1,415	16.8	13.3
파인애플	162	173	292	519	716	770	763	750	-0.9	3.2
소고기	419	399	706	833	538	549	521	536	-5.3	-1.6
망고, 구아바, 망고스틴	313	273	332	396	414	438	518	457	18.2	11.9
카사바	143	119	267	324	381	426	496	434	16.3	14.1
캐슈넛	54	60	76	134	285	282	364	310	28.9	13.1
버팔로고기	124	136	317	339	259	270	254	261	-6.0	-0.9
고구마	59	74	120	171	195	215	237	215	10.3	10.3
견조 양파와 살 렛	19	42	80	125	166	186	251	201	34.5	22.9
염소고기	79	100	266	334	190	202	208	200	3.1	4.7
천연고무	42	151	539	178	195	204	185	195	-9.5	-2.8
담배	40	59	68	127	150	190	197	179	3.6	14.5
가지	40	39	56	91	140	147	148	145	0.6	2.9
토마토	25	37	55	72	108	110	132	117	19.7	10.7
커피	86	87	121	130	106	105	105	105	0.3	-0.5
기타 달걀	54	55	65	83	86	97	107	97	11.0	11.3
감자	21	17	69	55	84	83	91	86	9.9	3.7
대마	33	44	51	71	79	82	86	82	4.7	4.0
호박	13	46	61	68	87	81	77	82	-5.3	-6.1
기타 견과류	16	13	35	55	56	68	76	67	11.3	16.8
그린빈	10	32	48	64	66	64	65	65	1.7	-0.3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2.9.15.)

나. 필리핀 농축산물 교역 동향

- 한국과 필리핀의 농림축산물 총교역액은 '19~'21년 평균 약 6억 5,256만 달러로 한국과 필리핀 전체 총 교역액(119억 2,952만 달러)의 약 5.5% 수준임.
- 한국의 필리핀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19~'21년 평균 4억 8,095만 달러이며, 필리핀산 전체 총수입액(전 산업)의 13.6% 수준임.
 -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필리핀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1년 수입액은 2020년 대비 7.7%, 최근 3년 연평균 약 1.4%의 증가율을 보임.
- 한국의 對필리핀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9~'21년 평균 약 1억 7,161만 달러이며, 對필리핀 총수출액의 2.0%를 차지함.
 - 對필리핀 농림축산물 수출액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1년 수출액은 2020년 대비 11.1% 증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22.7%씩 증가함.
- 한국과 필리핀 간 농림축산물 무역수지는 '19~'21년 평균 약 3억 934만 달러 적자임.
 - 농림축산물 무역수지는 농산물과 임산물에서 적자를 나타내며, 축산물에서는 흑자를 나타냄.
 - 농산물과 임산물은 '19~'21년 각각 평균 3억 1,828만 달러와 24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으며, 전체 농림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대부분 농산물에서 기인함. 반면, 축산물의 무역수지는 동기간 917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

그림 6-1. 한·필리핀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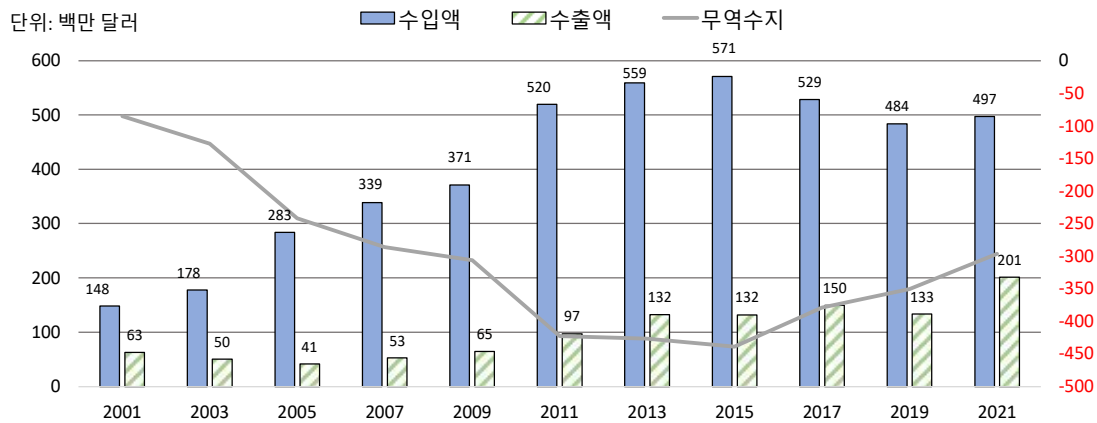


표 6-3. 필리핀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단위: 만 달러,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2020	2021	'19-'21 평균	전체 증감률	최근 3년 연평균 증감률
국가 전체 총교역액 ¹⁾	516,396	553,575	932,609	1,156,956	1,202,335	1,021,239	1,355,281	1,192,952	32.7	6.2
농림축산물 총 교역액	16,948	32,480	54,238	70,255	61,704	64,255	69,810	65,256	8.6	6.4
국가 총수입	180,418	231,604	348,810	325,163	365,801	308,596	389,374	354,590	26.2	3.2
농림축산물 수입	13,213	28,348	44,970	57,053	48,373	46,183	49,730	48,095	7.7	1.4
농산물	12,935	27,697	43,910	55,520	47,275	45,255	48,581	47,037	7.3	1.4
임산물	275	641	1,049	1,442	1,040	829	965	945	16.4	-3.7
축산물	3	11	11	92	58	99	184	114	86.6	78.4
국가 총수출	335,977	321,971	583,798	831,793	836,534	712,644	965,907	838,362	35.5	7.5
농림축산물 수출	3,734	4,131	9,268	13,201	13,331	18,072	20,080	17,161	11.1	22.7
농산물	3,096	2,363	8,769	12,370	11,759	16,279	17,590	15,209	8.0	22.3
임산물	147	454	241	376	886	964	912	921	-5.4	1.5
축산물	492	1,314	258	455	687	829	1,578	1,031	90.4	51.6
무역수지	155,559	90,368	234,988	506,629	470,733	404,048	576,533	483,772	42.7	10.7
농림축산물 무역수지	-9,479	-24,217	-35,702	-43,852	-35,041	-28,111	-29,650	-30,934	5.5	-8.0
농산물	-9,839	-25,334	-35,141	-43,149	-35,516	-28,976	-30,991	-31,828	7.0	-6.6
임산물	-128	-187	-808	-1,066	-154	135	-53	-24	-139.0	-41.5
축산물	489	1,304	247	363	629	730	1,393	917	90.9	48.9

주 1: 농림축산물 수입, 수출액은 농림축산물에 해당되는 2,927개의 HS 코드 품목(수산물 제외)의 수입, 수출액 합계를 뜻함.

2: 국가 전체 총교역액·총수입·총수출은 필리핀과 교역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수입, 수출액을 뜻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다. 對필리핀 주요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 2021년 필리핀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2000년 대비 276.4%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연평균 1.4% 증가하였음. 우리나라가 필리핀으로부터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바나나, 파인애플, 켈런, 야자유, 야자·코프라박, 흡연용 담배, 기타과실 등임(<표 6-4> 참조).
- 필리핀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는 품목은 바나나이며, '19~'21년 평균 수입액은 2억 1,871만 달러로 전체 필리핀산 농림축산물 수입의 45.5%를 차지함. 2021년 기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바나나 수입액 중 필리핀산의 비중은 73.5%임.
 - 바나나 수입액은 2014년에 3억 509만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021년에는 2억 1,337만 달러가 수입되며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으나, 최근 3년간 연평균 5.1%씩 감소함.
- 다음으로 많이 수입되는 품목은 파인애플이며 '19~'21년 평균 수입액은 6,652만 달러임. 2021년 기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파인애플 중 필리핀산의 비중은 87.4%임.
 - 파인애플 수입액은 2016년에 8,286만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 수입액은 6,806만 달러로 전년 대비 8.9% 증가함. 반면, 최근 3년 연평균증감률은 0.7%씩 감소함.
- 세 번째로 많이 수입되는 품목은 켈런으로 '19~'21년 평균 수입액은 5,815만 달러임. 2021년 기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켈런 중 88.6%의 비중을 차지함.
 - 켈런은 2017년 이후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7,037만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함. 2021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21.4% 감소한 5,530만 달러이나, 최근 3년 연평균증감률은 6.5%씩 증가함.

표 6-4. 필리핀산 농림축산물 주요품목 수입현황

(단위: 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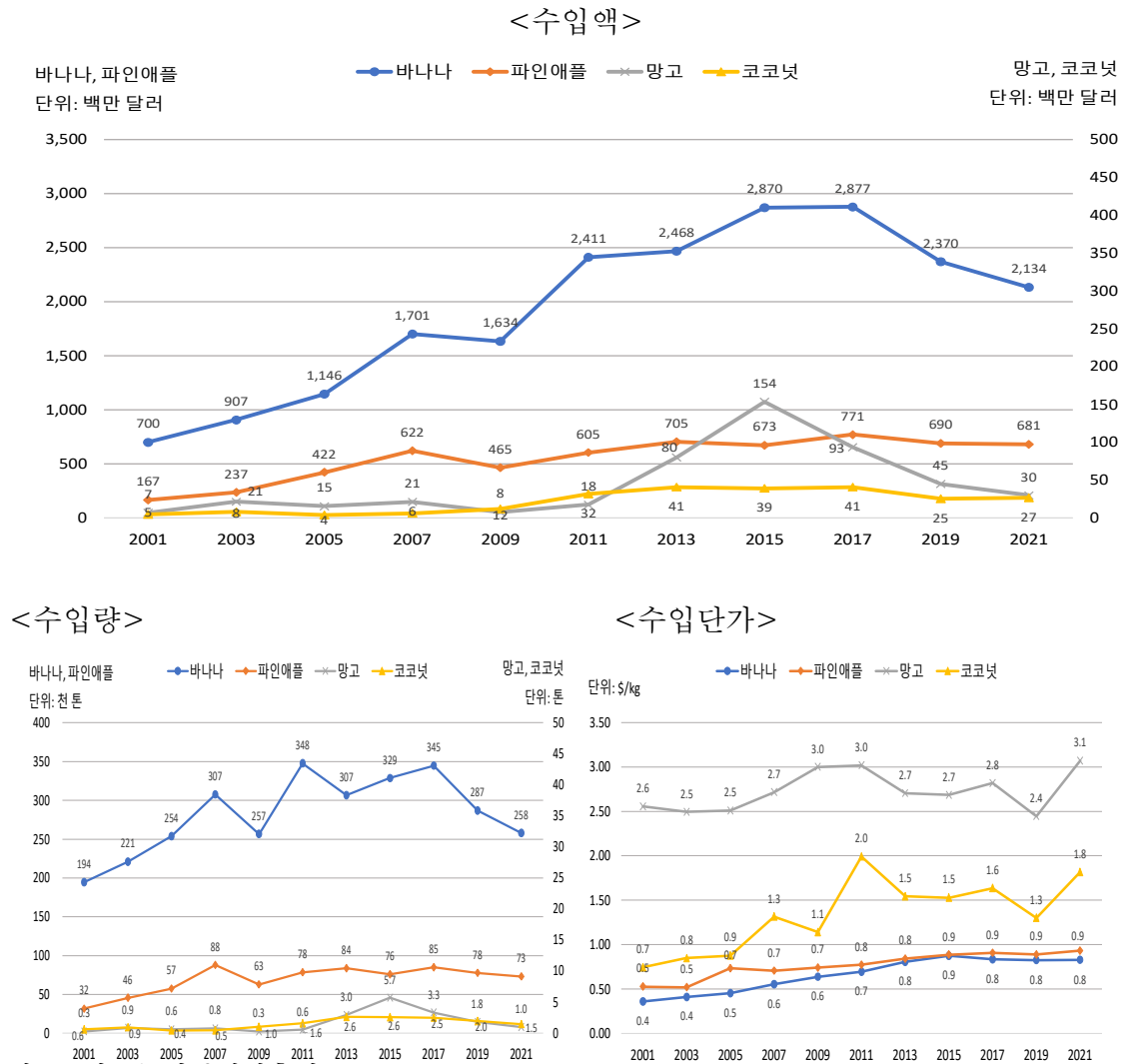
품목	2000	2005	2010	2015	2019	2020	2021	'19-'21 평균	전년대비 증감률	최근3년 연평균 증감률
농림축산물(합계)	13,213	28,348	44,970	57,053	48,373	46,183	49,730	48,095	7.7	1.4
바나나	7,308	11,457	20,929	28,701	23,699	20,577	21,337	21,871 (45.5%)	3.7	-5.1
파인애플	1,507	4,216	5,082	6,728	6,901	6,249	6,806	6,652 (13.8%)	8.9	-0.7
귤련	-	-	3	-	4,879	7,037	5,530	5,815 (12.1%)	-21.4	6.5
야자유	53	2,591	506	484	640	1,864	3,633	2,046 (4.3%)	94.9	138.2
야자·코프라박	1,750	2,813	5,377	3,606	1,936	1,335	2,947	2,073 (4.3%)	120.7	23.4
흡연용담배	0	1,677	7,755	4,336	3,032	2,485	2,898	2,805	16.6	-2.2
기타 과일	217	376	726	1,361	1,002	1,056	1,036	1,031	-1.8	1.7
과실혼합물	1,153	1,300	1,114	1,100	815	893	834	848	-6.6	1.2
잎담배	-	-	192	1,777	456	631	691	593	9.5	23.2
기타 제조담배	-	-	5	2,028	307	340	466	371	37.0	23.2
목탄	96	277	340	346	426	322	335	361	3.8	-11.4
기타 목재식탁용품	27	26	39	32	142	172	303	206	75.7	45.9
망고	131	155	101	1,535	448	326	298	358	-8.6	-18.4
비스킷	44	1,151	326	1,110	925	579	266	590	-54.0	-46.3
코코넛	74	39	213	392	254	309	266	276	-13.7	2.4
기타 식물성점질물	22	12	27	70	110	224	202	179	-9.8	35.8
캔디	15	10	69	114	117	122	186	142	53.3	26.1
기타동물성유지	-	-	-	73	49	93	169	104	82.6	86.8
혼합조제식료품	-	80	275	415	422	208	160	263	-23.4	-38.5
맥주	38	29	123	282	198	155	127	160	-18.0	-19.9
사탕무당	-	-	1	70	90	95	102	96	7.9	6.5
판지2)	-	2	106	573	102	118	99	107	-15.9	-1.3
빵	-	2	1	54	24	33	88	48	167.8	91.9
기타 베이커리제품	-	2	10	354	144	70	82	99	16.7	-24.7
기타 가구	34	65	23	147	88	66	71	75	7.9	-10.3
배합사료	3	132	13	28	90	109	70	90	-35.6	-11.5
기타 사료용조제품	2	37	32	40	79	35	57	57	60.0	-15.4
코프라	-	-	36	66	54	32	53	46	62.8	-1.8
파파야	1	34	20	40	77	42	47	55	13.7	-21.5
기타 설탕과자	7	6	3	20	72	62	46	60	-26.0	-20.4

주: 판지는 재활용종이류로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를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우리나라가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실류 주요품목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코코넛이며, 201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다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6-2 참조).
- 과실류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나나 수입액은 2017년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파인애플 수입액은 2001년 이후 2016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망고 수입액은 2015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였고, 코코넛 수입액은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수입 단가는 주요 과실류 모두 상승 추세를 보이며, 망고와 코코넛의 단가는 2019년에 하락한 이후 2021년에 다시 상승함.

그림 6-2. 농림축산물 주요품목 수입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라. 바나나 국가별 수입 동향

- 한·필리핀 FTA를 통한 양허 품목은 바나나(플랜틴바나나, 기타바나나)로 각각 10년 철폐와 5년 철폐로 타결되었음.
- 바나나는 ASEAN와 RCEP FTA에서 양허가 제외된 품목으로 한·필리핀 FTA 타결에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임.
- 국내 바나나 수입에서 필리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까지 97%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1년에는 73.5%를 차지함.
 - 개방화로 인해 수입 과일이 다양화되면서 국내 바나나 수요는 증가하다 201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이로 인해 바나나의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필리핀산 바나나의 수입량의 경우 2015년 32만 9천 톤에서 2021년 25만 8천 톤으로 21.5% 감소하였음(<표 6-5>, <그림 6-3> 참조).
- 전반적인 바나나 수입 감소와 함께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 등 경쟁국가의 바나나 수입단가 하락 영향으로 국내시장에서 필리핀산 바나나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필리핀산 바나나의 수입단가가 2010년 kg당 0.622달러에서 2021년 kg당 0.828달러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에콰도르산과 과테말라산 바나나는 과거 필리핀산보다 높은 단가를 유지했으나 2015년 이후 필리핀산보다 낮아지며 수입 점유율이 소폭 상승하였음(<그림 6-4> 참조).
- 2015년 필리핀산, 에콰도르산, 과테말라산 바나나 수입단가는 kg당 각각 0.873달러, 0.769달러, 0.811달러임.

- 2021년 콜롬비아산 바나나의 수입단가는 kg당 0.853달러로 필리핀산 (0.828\$/kg)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한·콜롬비아 FTA 발효의 영향으로 2021년 콜롬비아산 바나나 수입량은 2만 7천 톤이 수입되었으며 이는 2010년 147톤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임.
- 2021년 페루산 바나나의 단가는 kg당 1.137달러로 필리핀산에 비해 약 37.3% 가량 높은 수준임에도 우수한 품질(유기농)로 인해 2016년 이후 2~4%의 수입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 필리핀산 바나나의 단가가 경쟁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이유는 한국과 가깝다는 지리적 요인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함.
-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바나나 수입량이 감소하고, 2010년 7개국에서 2021년 13개국의 다양한 국가로부터 바나나가 수입되면서 필리핀산 바나나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음.
- 다만, 여전히 필리핀산 바나나가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73.5%로 가장 높음(2010년 99.5% → 2015년 90.5% → 2021년 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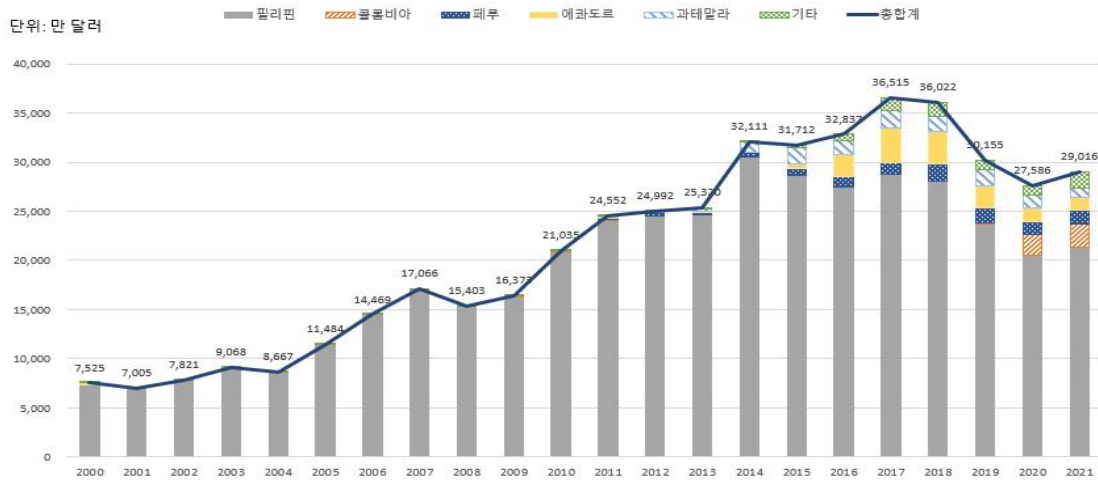
표 6-5. 국가별 바나나 수입량 및 수입단가 동향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증감률	
								'10 대 비 '21	'15 대 비 '21
계	수입액(천 달러)	75,250	114,837	210,355	317,116	275,864	290,160	37.9	-8.5
	수입량(톤)	184,212	253,974	337,907	363,479	351,994	351,906	4.1	-3.2
	수입단가(달러/kg)	0.408	0.452	0.623	0.872	0.784	0.825	32.5	-5.5
필리핀	수입액(천 달러)	73,082	114,567	209,289	287,014	205,772	213,371	2.0	-27
	수입액 비중(%)	97.1	99.8	99.5	90.5	74.6	73.5	-261	-188
	수입량(톤)	179,507	253,636	336,563	328,613	260,795	257,820	-234	-215
	수입량 비중(%)	97.4	99.9	99.6	90.4	74.1	73.3	-264	-190
	수입단가(달러/kg)	0.407	0.452	0.622	0.873	0.789	0.828	33.1	-5.2
콜롬비아	수입액(천 달러)	-	227	150	-	21,000	23,374	-	-
	수입액 비중(%)	-	0.2	0.1	-	7.6	8.1	-	-
	수입량(톤)	-	262	147	-	27,173	27,407	-	-
	수입량 비중(%)	-	0.1	0.0	-	7.7	7.8	-	-
	수입단가(달러/kg)	-	0.867	1.015	-	0.773	0.853	-160	-
에콰도르	수입액(천 달러)	2,161	-	782	4,477	15,180	13,606	-	2040
	수입액 비중(%)	2.9	-	0.4	1.4	5.5	4.7	-	2322
	수입량(톤)	4,686	-	976	5,823	21,657	21,314	-	2660
	수입량 비중(%)	2.5	-	0.3	1.6	6.2	6.1	-	2780
	수입단가(달러/kg)	0.461	-	0.801	0.769	0.701	0.638	-203	-170
페루	수입액(천 달러)	-	-	20	7,108	12,151	14,055	-	97.8
	수입액 비중(%)	-	-	0.0	2.2	4.4	4.8	-	1161
	수입량(톤)	-	-	20	6,017	10,933	12,365	-	1055
	수입량 비중(%)	-	-	0.0	1.7	3.1	3.5	-	1123
	수입단가(달러/kg)	-	-	1.040	1.181	1.111	1.137	9.3	-3.8
과테말라	수입액(천 달러)	-	-	-	15,817	11,950	8,685	-	-41
	수입액 비중(%)	-	-	-	5.0	4.3	3.0	-	-400
	수입량(톤)	-	-	-	19,508	17,086	11,154	-	-428
	수입량 비중(%)	-	-	-	5.4	4.9	3.2	-	-409
	수입단가(달러/kg)	-	-	-	0.811	0.699	0.779	-	-4.0
기타	수입액(천 달러)	7	43	114	2,702	9,812	17,068		5318
	수입액 비중(%)	0.0	0.0	0.1	0.9	3.6	5.9		5905
	수입량(톤)	19	76	201	3,518	14,350	21,847		5211
	수입량 비중(%)	0.0	0.0	0.1	1.0	4.1	6.2		5415
	수입단가(달러/kg)	0.387	0.560	0.567	0.768	0.684	0.781	37.8	1.7

주: 증감률이 1,000% 이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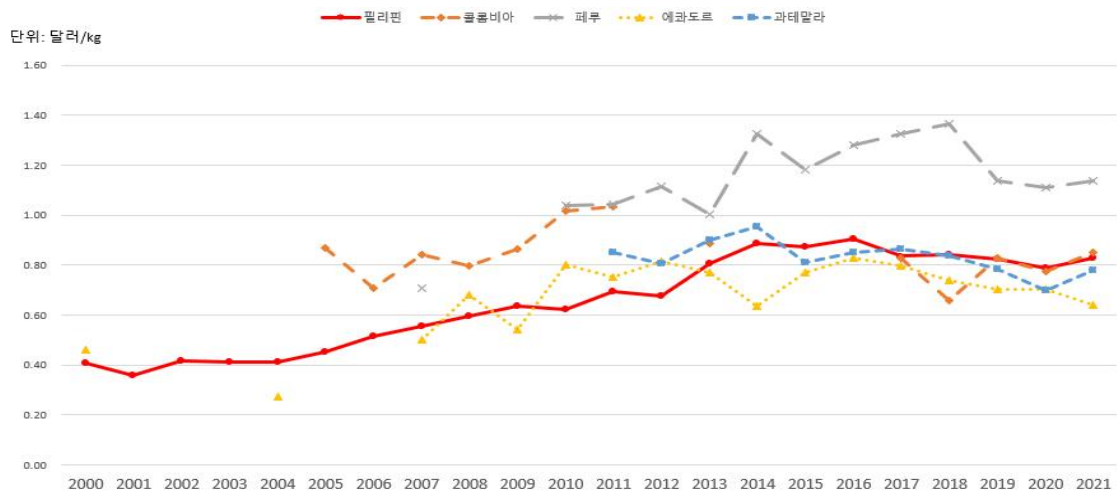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그림 6-3. 국가별 바나나 수입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그림 6-4. 국가별 바나나 수입단가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표 6-6. 페루 바나나 관세 양허 현황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내용	2011 (체결연도)	2012	2013	2014	2015 이후
바나나 (30%)	5년 철폐	24.0	18.0	12.0	6.0	0.0

표 6-7. 콜롬비아 바나나 관세 양허 현황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내용	2016 (체결연도)	2017	2018	2019	2020 이후
바나나 (30%)	5년 철폐	24.0	18.0	12.0	6.0	0.0

다. 對필리핀 주요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 우리나라가 필리핀으로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신선식품보다는 가공식품류로 라면, 혼합조제식료품, 리큐르, 아이스크림, 기타 파스타, 기타음료 등이 포함됨(<표 6-8> 참조).

○ 필리핀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라면 품목의 '19~'21년 평균 수출액은 2,209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0% 증가하였고, 최근 3년 연평균 39.7%씩 증가함.

－ 2021년 기준 전세계로 수출되는 라면 중 對필리핀 수출액은 4.2%의 비중을 차지함.

○ 혼합조제식료품의 '19~'21년 평균 수출액은 2,236만 달러로 전년 대비 8.0% 증가하였고, 최근 3년 연평균 3.1%씩 증가함.

－ 2021년 기준 전세계로 수출되는 혼합조제식료품 중 對필리핀 수출액은 1.9%의 비중을 차지함.

○ 리큐르³⁸⁾의 對필리핀 '19~'21년 평균 수출액은 692만 달러이며, 2020년 대비 23.1%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연평균 97.8%씩 증가함.

－ 2021년 기준 전세계로 수출되는 리큐르 중 對필리핀 수출액은 10.0%의 비중을 차지함.

○ 최근 3년 수출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리큐르, 돼지고기, 기타 제조담배 등이 있음.

－ 리큐르의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은 97.8%, 돼지고기는 102.5%, 기타 제조담배는 302.5%로 나타남.

38) 리큐르는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증류주·리큐르(liqueur)과 그 밖의 주정음료를 의미함.

표 6-8. 농림축산물 주요품목 수출현황

(단위: 만 달러, %)

품목	2000	2005	2010	2015	2019	2020	2021	'19-'21 평균	전년대비 증감률	최근3년 연평균 증감률
농림축산물(합계)	3,734	4,131	9,268	13,201	13,331	18,072	20,080	17,161	11.1	22.7
라면	42	119	462	936	1,444	2,367	2,816	2,209 (12.9%)	19.0	39.7
혼합조제식료품	423	151	654	1,721	2,201	2,166	2,339	2,236 (13.0%)	8.0	3.1
리큐르 ¹⁾	9	1	—	—	208	1,056	812	692 (4.0%)	-23.1	97.8
아이스크림	—	15	160	279	510	480	777	589 (3.4%)	61.8	23.4
기타 파스타	—	45	37	192	388	542	715	548 (3.2%)	31.8	35.7
기타 음료	—	24	20	95	314	430	702	482	63.3	49.4
기타 소스제품	—	22	44	272	447	548	691	562	26.0	24.3
기타 당	—	—	—	141	—	181	—	181	—	—
커피조제품	—	57	288	425	409	685	626	573	-8.6	23.7
돼지고기	191	347	7	23	121	156	495	257	217.8	102.5
비스킷	10	18	23	520	431	387	442	420	14.1	1.2
기타 제조담배	—	—	—	—	27	312	430	256	37.6	302.5
과당	—	11	1,619	3,244	176	187	419	261	124.3	54.1
기타 베이커리제품	—	—	—	122	260	—	—	260	—	—
소주	10	42	111	221	426	449	405	427	-9.8	-2.4
판지 ²⁾	2	2	—	—	104	239	383	242	60.7	92.0
유자차	—	2	—	16	91	456	382	310	-16.3	105.2
곡류조제품	—	28	344	38	532	478	357	456	-25.2	-18.1
방향성물질	—	1	9	20	22	311	335	223	7.6	292.3
기타 가구	—	282	63	115	415	443	278	379	-37.3	-18.1
고추장	10	24	39	85	197	307	258	254	-15.9	14.4
기타 조제식료품	—	—	2	24	88	184	258	177	40.2	71.0
연유	—	—	12	18	75	180	245	167	35.9	80.1
사료첨가제	55	—	28	45	73	257	218	183	-15.2	72.8
소시지	—	—	2	22	44	80	217	114	170.8	122.4
기타 장류	—	7	3	19	129	276	216	207	-21.7	29.6
기타 과실	—	—	1	56	185	273	216	225	-21.0	8.0
보조사료	—	6	12	109	138	145	203	162	39.6	21.1
단일과실조제품	—	11	49	74	107	147	176	143	19.7	27.9
기타 사료용조제품	—	65	201	124	135	163	165	154	1.0	10.7

주 1: 리큐르는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증류주·리큐르(liqueur)과 그 밖의 주정음료를 의미함.

2: 판지는 재활용종이류로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를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필리핀으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품목은 라면, 혼합조제식료품, 리큐르, 아이스크림이며, 2010년대 중반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6-5>참조).

○ 라면과 혼합조제식료품의 수출액과 수출량은 2009년 이후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임. 다만, 수입단가 하락으로 수출량 대비 수출액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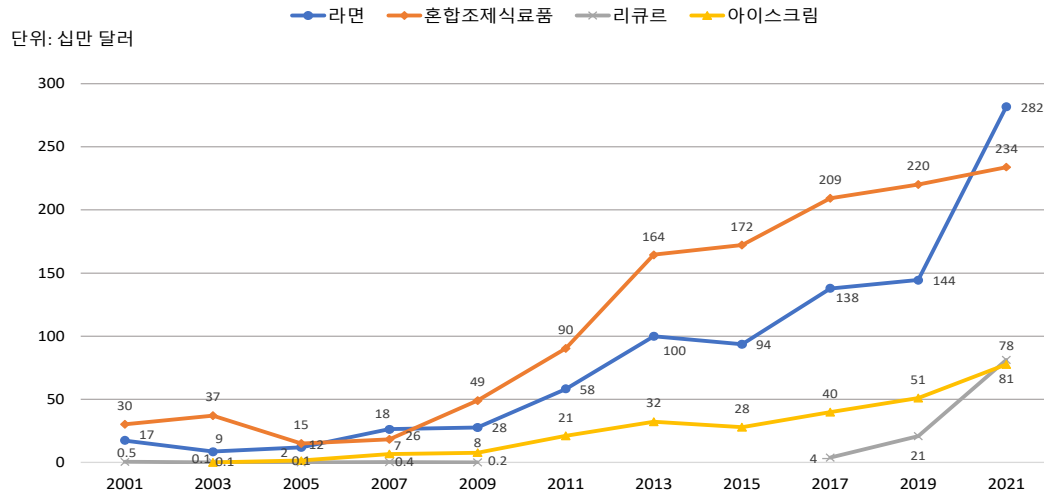
○ 라면의 수출액은 2021년 크게 증가하여 혼합조제식료품보다 큰 수출액 비중을 차지함.

- 2021년 혼합조제식료품의 수출량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수출액은 수출량에 비해 소폭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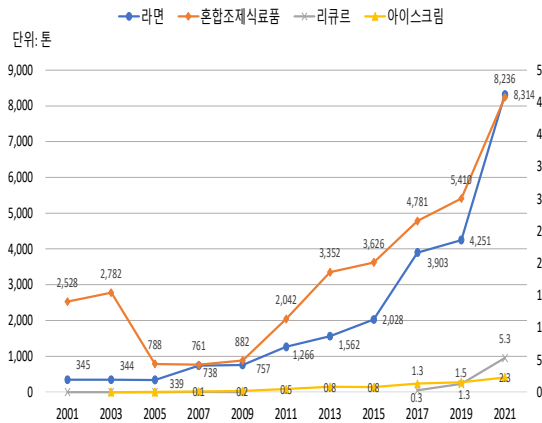
○ 아이스크림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리큐르는 2017년 이후 수출액이 크게 증가함.

그림 6-5. 농림축산물 주요품목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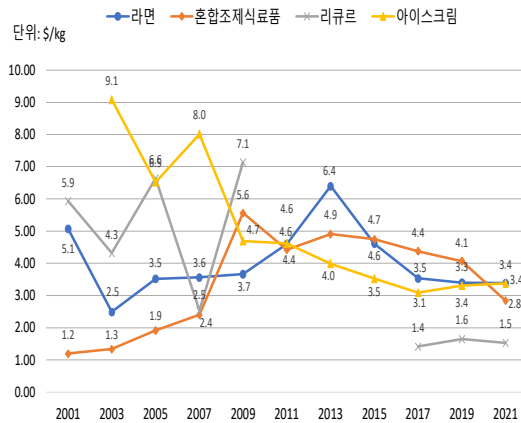
<수출액>



<수출량>



<수출단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바. 한·필리핀 농업부문 우리측(수입) 상품양허(안)

□ 한·필리핀 FTA에서 한·ASEAN FTA 및 RCEP 대비 추가 개방한 세번은 95개이며, AG 5 코드 기준 실품목으로는 총 60개 품목임.

○ 주요 개방 품목으로는 바나나(2), 구아바(1), 파파야(1), 레몬(3), 망고스틴(1) 등과 같은 과일류와 커피(4), 커피조제품(3) 등과 같은 품목이 개방되었음.

－ 즉시철폐 품목은 사탕무당(1), 사탕수수당(1) 등 3개 세 번임.

－ 5년 철폐 품목은 바나나(기타)(1), 기타감귤류(1), 당면(1), 양(1), 곡류조제품(1), 향미용조제품(1), 브랜드(1) 등 7개 세 번임.

－ 7년 철폐 품목은 파인애플(가공) 1개 세 번임.

－ 10년 철폐 품목은 바나나(플랜틴)(1), 기타채소(1), 캐슈넛(2), 야자유(1), 유채유(1), 스위트콘(1), 커피(4), 커피조제품(3), 포도증류주(1) 등 31개 세 번임.

－ 15년 장기 철폐하기로 한 세번은 구아바(1), 기타과실(2), 대추야자(1), 두리안(1), 망고스틴(2), 파인애플(설탕절임)(1), 파파야(1), 기타감귤주스(1), 레몬주스(3), 파인애플주스(2) 등 52개 세 번임.

□ RCEP 대비 추가개방 품목은 10개 세 번이며 이들 세번은 RCEP에서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으나 한·필리핀 FTA에서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품목임.

○ 관세철폐 기준으로 RCEP 대비 추가 개방된 세번은 바나나(1), 바나나(플랜틴)(1), 밤(1), 기타감귤류(가공)(1), 맥아당(1), 기타당(1), 당면(1), 양(4), 기타감귤주스(1), 기타채소(1) 등임.

표 6-9. 한·필리핀 FTA 농산물 양허 유형별 추가개방 품목

양허유형 (세번 수)	품목명 (잔존 관세율 %)
즉시철폐(3)	농약밋의약품(2), 사탕무당(3), 사탕수수당(3)
3년철폐(1)	맥아당(5)
5년철폐(7)	곡류조제품(5), 바나나(기타)(30), 기타감귤류(가공)(5), 향미용조제품(5), 당면(5), 양(5), 브랜디(5)
7년철폐(1)	파인애플(가공)(36)
10년철폐(31)	바나나(플랜틴)(30), 캐슈넛(5), 사탕수수당(3), 야자유(3), 유채유(5), 보드카(5), 위스키(5), 포도증류주(5), 스위트콘(5), 커피(8), 커피조제품(8) 등
15년철폐(52)	구아바(24), 두리안(36), 망고스틴(24), 파파야(24), 기타과실(24), 대추야자(24), 곡류조제품(5), 단일과실조제품(24), 기타사료용조제품(40.4), 보조사료(40.4), 소시지(24), 레몬주스(5), 파인애플주스(40), 맥주(15) 등

자료: 저자작성.

□ 한·필리핀 FTA 체결에 따른 필리핀측 바나나 시장개방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는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조치를 확보함.

○ 필리핀산 바나나 ASG 내용은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초기 발동물량을 설정하고, 한·필리핀 FTA 발효 첫해부터 10년간 수입량이 연도별 ASG 기준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임.

표 6-10. 한·필리핀 FTA 체결에 따른 필리핀산 바나나 ASG 내용

초기 발동물량	증량방식	적용기간	ASG 관세율
'18-'20년 평균 수입량의 110%	매년 3천 톤씩 증량	관세철폐 후 5년까지 (5년철폐 기준 10년까지)	(1-5년차)기준세율 100%(=30%) (6-10년차)기준세율에서 매년 3%p씩 인하
※'18-'20년 평균 수입량 (293,352톤)*110% = 322,687톤	※ 최초 발동물량 기준 의 약 0.9%		※ 바나나 기준세율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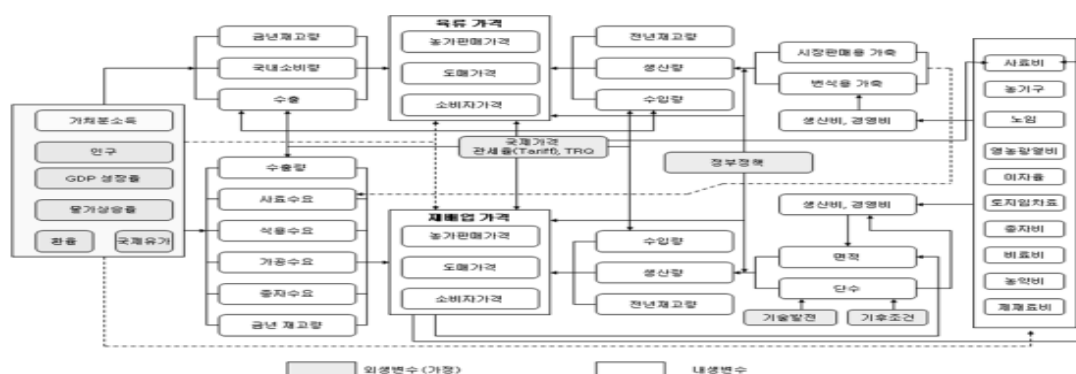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 한·필리핀 FTA 농업부문 파급효과 분석

가. 농축산물 수입영향 분석모형 구조

- 한·필리핀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예상 파급영향 분석은 KREI-KASMO 2021 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추정함.
- KREI-KASMO 모형은 한국 농업부문에 국한된 동태(dynamic)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 모형으로 국제시장과 비농업부문은 외생변수로 포함되어 있음.³⁹⁾
- 또한, 품목 상호 간에 생산과 소비 대체를 반영한 연립방정식체계(simultaneous equation system)를 따르며 약 6,500여 개의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KASMO는 크게 6개 부문(주요 거시변수, 투입재 가격, 재배업부문, 축산부문, 농가인구, 총량부문)으로, FTA 및 다자간협상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효과를 계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그림 6-6. KREI-KASMO 2021 모형 구조



자료: 서홍석 외(2020)

39) 농업부문에 국한할 경우, KREI-KASMO는 일반균형모형이지만, 국제시장과 비농업부문(제조업, 수산업 등)은 외생으로 취급함에 따라 전체 경제로 볼 때는 부분균형모형임. KREI-KASMO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인 미국 식품농업정책연구소(FAPRI)와 공동연구(2007~2008년)를 통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모형 구조 및 이론 체계는 미국 FAPRI와 USDA/ERS가 운영하고 있는 모형들과 동일함.

○ KREI-KASMO 2021에 포함되는 품목은 농식품 생산액 기준으로 재배업 65개, 축산업 9개 등 총 74개 품목이며, 모형의 실품목 기준으로 총 122개 품목임.

- 해당 품목들은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20」의 2019년 생산액 기준으로 재배업의 98.6%, 축산업의 98.7% 등 전체 농업의 98.7%를 차지함.

표 6-11. KREI-KASMO 2021 품목범위: 농식품부 생산액 기준

구분	품목수	품목
곡물	12	미곡,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옥수수, 콩, 팥, 녹두, 감자, 고구마
채소	24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미나리, 무, 당근, 고추, 마늘, 양파, 파(대파, 쪽파), 생강, 부추 수박, 참외, 오이, 호박, 토마토, 딸기, 풋고추, 가지, 멜론, 파프리카
과실	9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자두, 매실, 참다래
특용	4	참깨, 들깨, 땅콩, 차
약용	1	품목군 18개
화훼	7	절화, 분화, 기타(화목류, 관상수, 종자류, 초화류, 구근류)
버섯	5	양송이, 느타리, 영지, 팽이, 새송이
전매	2	연초, 인삼
벚꽃	1	벚꽃
축산	9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계란, 우유, 멸균, 양잠
계	74	

자료: 서홍석 외(2020)

표 6-12. KREI-KASMO 2021 품목범위: 모형 내 실품목 기준

구분	품목수	품목
곡물	14	미곡,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옥수수, 콩, 팥, 녹두, 감자(봄, 여름, 가을), 고구마
채소	35	마늘, 양배추, 양파, 시금치, 상추, 미나리, 부추, 당근, 대파, 쪽파, 생강, 배추(봄, 고랭지, 가을, 시설), 김치(봄, 고랭지, 가을, 시설), 무(봄, 고랭지, 가을, 시설), 고추 수박, 참외, 오이, 호박, 토마토, 딸기, 멜론, 가지, 파프리카, 풋고추
과실	15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자두, 매실, 참다래, 오렌지(HS 0805), 열대과일(HS 0801, 0803, 0804), 기타과실(냉동, 건조)
특용	6	참깨, 들깨, 땅콩(낙화생, 피넛버터), 차(마태, 녹차)
약용	1	품목군 18개
화훼	7	절화, 분화, 기타(화목류, 관상수, 종자류, 초화류, 구근류)
버섯	5	양송이, 느타리, 영지, 팽이, 새송이
전매	4	연초(잎담배, 기타담배), 인삼(홍삼, 백삼)
벚꽃	1	벚꽃
축산	15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계란, 우유(우유, 조제, 전지, 탈지, 버터, 연유, 치즈, 발효유), 멸균, 양잠

구분	품목수	품목
가공	13	혼합조미료, 기타소오스, 기타제조농산물, 과자, 주류, 면류, 커피, 당류, 소스, 음료, 박류, 식물성유지, 기타가공
기타	6	과실가공품, 기타 채소 신선, 채소가공품, 기타 곡물 신선, 기타 과실 신선, 기타 농축산물
계	122	

주: HS 0801은 코코넛, 0803은 바나나, 0804는 파인애플, 망고, 구아바 등을 포함함.
 자료: 서홍석 외(2020)

○ 과실류 수급 구조(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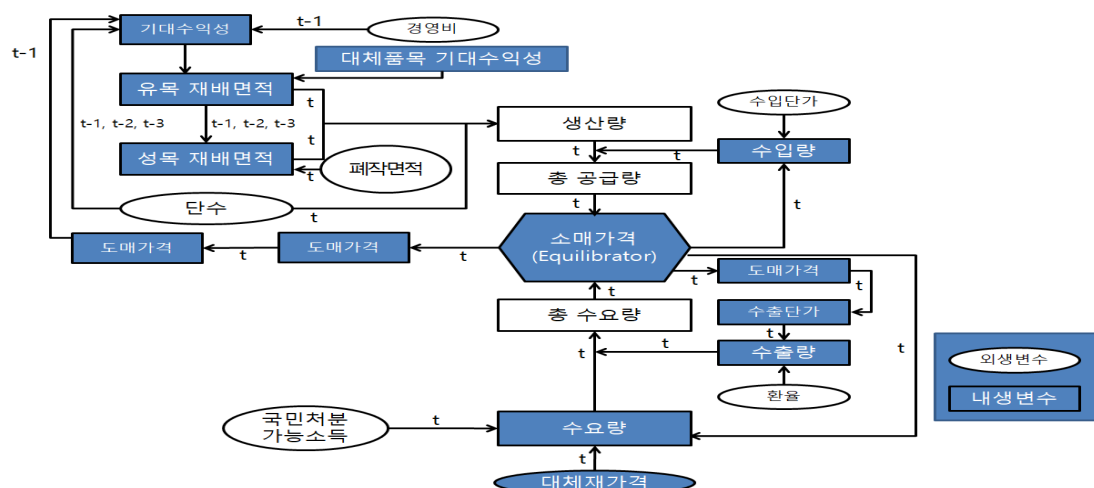
- 공급부문의 경우, 농가판매가격을 이용한 경영비 대비 기대수익률, 생산대체 품목 재배농가의 기대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재배면적함수 추정.
- 수요함수는 자체가격(소매가격)과 대체재가격, 소득 등의 설명변수가 포함됨.
- 국내 총공급량과 총수요량이 일치하는 균형가격(소매가격) 도출

※ 국내 생산량 = 재배면적 × 단수

※ 국내 총공급량 = 국내 생산량 + 수입량

※ 총수요량 = 수출량 + 수요량

그림 6-7. 과실류 수급모형 구조



자료: 서홍석 외(2020)

나. 농축산물 수입영향 분석 방법

□ 한·필리핀 FTA 농업부문 파급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기준(Baseline) 시나리오와 한·필리핀 FTA 발효 시나리오를 설정함.

○ 기준 시나리오는 국내 농축산물 시장개방 수준이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체결한 FTA 협상의 양허안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품목별로 수급을 전망함.⁴⁰⁾

○ 한·필리핀 FTA 발효 시나리오는 기존의 기체결 FTA 양허안과 신규 FTA 양허결과에 따라 개방수준이 연차별로 확대되는 것을 가정하여 품목별 수급을 전망함.

※ 농업생산액 변화 = 기준 시나리오 생산액

- 한·필리핀 FTA 발효 시나리오 생산액

□ KREI-KASMO 모형을 통해 도출되는 생산액 변화는 관세인하로 인한 직접적 영향과 직접 영향으로 파생되는 간접영향에서 기인함.

○ 직접적 영향: 해당 품목의 관세 인하 시 수입 증가로 인하여 해당 품목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해당 품목의 가격 하락, 가격 하락으로 인한 해당 품목의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을 의미함. 예를 들어, 쇠고기 관세 인하에 따라 쇠고기 수입 증가, 쇠고기 가격 하락, 쇠고기 국내 생산 감소 등 쇠고기 수급이 변동하는 것을 직접 영향으로 간주함.

○ 간접적 영향: 직접 영향으로 인해 파급되는 영향으로, 소비 및 생산 대체 관계에 있는 품목의 수급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의 수급이 변동하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쇠고기 관세 인하로 쇠고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소비 대체관계에 있는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돼지고기 가격 하락과 국내 생산 감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간접영향으로 간주함.

40) 최근 발효된 RCEP(2022.2.1.) 영향은 필리핀 비준 일정을 고려하여 기준 시나리오에 포함하지 않음.

다. 농축산물 수입영향 분석 결과

□ 한·필리핀 FTA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 전체 생산액은 1년차(2023년) 13억 원, 5년차 102억 원, 10년차 117억 원, 15년차 11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이에 따라 국내 농업생산액은 15년 누적 약 1,426억 원, 연평균 9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한·필리핀 FTA 양허 이행에 따른 영향을 추정한 결과,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증가 영향으로 과실 생산액은 15년 누적 1,156억 원, 연평균 7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한·필리핀 FTA 농업부문 영향의 81.1%를 차지함.

○ 주요 생산액 감소 품목은 사과, 복숭아 등임. 품목별로 각각 25억 원, 16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됨(FTA 이행 이후 15년간 연평균 기준).

표 6-13. 한·필리핀 FTA 농업부문 파급영향 추정 결과

(단위: 억 원)

구분	1년차 (2023년)	5년차	10년차	15년차	15년 누적	15년 연평균
전체	-13	-102	-117	-115	-1,426	-95
곡물	0	-0	-1	-1	-11	-1
채소	-3	-18	-20	-22	-255	-17
과실	-10	-83	-95	-91	-1,156	-77
사과	-3	-28	-31	-29	-381	-25
배	-1	-7	-8	-7	-95	-6
포도	-1	-7	-7	-7	-93	-6
복숭아	-2	-17	-20	-21	-244	-16
감귤	-0	-6	-8	-7	-88	-6
단감	-0	-1	-1	-1	-14	-1
기타과실	-2	-17	-20	-19	-242	-16
축산	-0	-0	-0	-0	-3	-0
특용·기타	-0	-0	-0	-0	-0	-0

주: 기발효 FTA 베이스라인(RCEP 영향 미반영)에 한·필리핀 FTA 발효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KREI-KASMO 2021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 필리핀산 바나나 관세 인하(5년 철폐)로 수입량은 이행 15년간 연평균 3천 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량은 연평균 1만 3천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역전환효과로 기타국의 수입량은 1만 1천 톤(에콰도르산 0.5천 톤, 과테말라산 1천 톤, 콜롬비아 및 페루 등 기타국 9천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6-14. 한·필리핀 FTA에 따른 바나나(0803류) 수입량 변화

(단위: 천 톤)

구분		1년차 (2023년)	5년차	10년차	15년차	15년 연평균
베이스라인	전체	327	314	296	273	302
	필리핀	244	237	219	195	224
	에콰도르	16	7	2	1	5
	과테말라	10	9	7	6	8
	기타국	57	62	67	71	64
시나리오	전체	327	318	299	274	305
	필리핀	246	253	235	209	238
	에콰도르	15	6	2	1	5
	과테말라	10	8	6	5	7
	기타국	55	52	56	59	55
차이	전체	0	4	4	2	3
	필리핀	3	16	16	14	13
	에콰도르	-0.5	-1.0	-0.3	-0.1	-0.5
	과테말라	-0	-1	-1	-1	-1
	기타국	-2	-10	-11	-11	-9

자료: KREI-KASMO 2021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라. 농식품 수출확대 가능성(정성적 분석)

□ FTA를 통한 한국산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필리핀 FTA에서 관세를 인하한 품목의 수출확대 가능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함.

○ 한·필리핀 FTA에 따른 수출 확대 가능성 평가는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추가로 개방한 신선 농산물의 관세 감축에 따른 수출경쟁력 강화 효과를 고려함.

□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추가로 개방한 신선 농산물은 배, 건고추 등이며, 한·필리핀 FTA 이행에 따라 이들 품목의 관세가 감축될 경우, 장기적으로 필리핀 시장 내 한국산 신선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對필리핀 배 수출액은 2020년 1만 3천 달러에서 2021년 15만 2천 달러로 증가했으며, 5개년(2017~2021)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44.4%로 나타남. 한국산 배는 한·필리핀 FTA를 통해 현행 관세율 7%가 15년간 철폐됨.

○ 2021년 한국의 對필리핀 건고추 수출액은 122만 달러로 2017년 이후 연평균 13.2%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한·필리핀 FTA를 통해 현행 관세율 5%가 15년간 철폐됨.

표 6-15. 한·필리핀 FTA 주요 수출 품목 양허 내용 및 동향

(단위: 천 달러, 톤, 달러/kg)

품목	현행 관세율	양허 내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5개년 증감률
배	7%	15년 철폐	수출액	35	18	41	13	152	44.4%
			수출량	14	6	13	4	41	31.9%
			단가	2.59	2.76	3.18	3.48	3.72	—
건고추	5%	15년 철폐	수출액	742	905	1,050	1,428	1,219	13.2%
			수출량	189	233	268	361	336	15.5%
			단가	3.93	3.89	3.92	3.95	3.63	—

주 1: 배 세번은 080830이며, 건고추 세번은 090422임.

2: 현행 관세율은 필리핀에서 한국산 농산물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임.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제7장 한·필리핀 FTA 수산업분야 영향 분석

1. 필리핀의 수산업 통상 현황

가. 수산물 생산 규모

□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수산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은 21,522만 톤임.

○ 국가별로는 중국이 8,393만 톤(39.0%)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필리핀 수산물 생산량은 424만 톤(2.0%)으로 9위, 한국은 370만 톤(1.7%)으로 12위 수준임.

□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에서 어획 어업과 양식어업의 비중은 각각 43.0%, 57.0%이며, 필리핀의 경우 각각 45.2%, 54.8%로 양식어업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임.

○ 한국 또한 어획어업 37.1%, 양식어업 62.9%로 양식어업의 비중이 높은 편임.

표 7-1. 주요 국가의 수산물 생산량(2020년 기준)

(단위 : 천 톤, %)

순위	국가별	계	비중	어획어업	비중	양식어업	비중
	계	215,217	100.0	92,637	43.0	122,580	57.0
1.	중국	83,930	39.0	13,446	16.0	70,484	84.0
2.	인도네시아	21,837	10.1	6,992	32.0	14,845	68.0
3.	인도	14,164	6.6	5,523	39.0	8,641	61.0
4.	베트남	8,042	3.7	3,427	42.6	4,615	57.4
5.	페루	5,819	2.7	5,675	97.5	144	2.5
6.	러시아	5,380	2.5	5,089	94.6	291	5.4
7.	미국	5,125	2.4	4,677	91.2	449	8.8
8.	방글라데시	4,503	2.1	1,920	42.6	2,584	57.4
9.	필리핀	4,240	2.0	1,917	45.2	2,323	54.8
10.	일본	4,214	2.0	3,218	76.4	996	23.6
11.	노르웨이	4,105	1.9	2,615	63.7	1,490	36.3
12.	한국	3,703	1.7	1,375	37.1	2,328	62.9

자료: FAO FishstatJ,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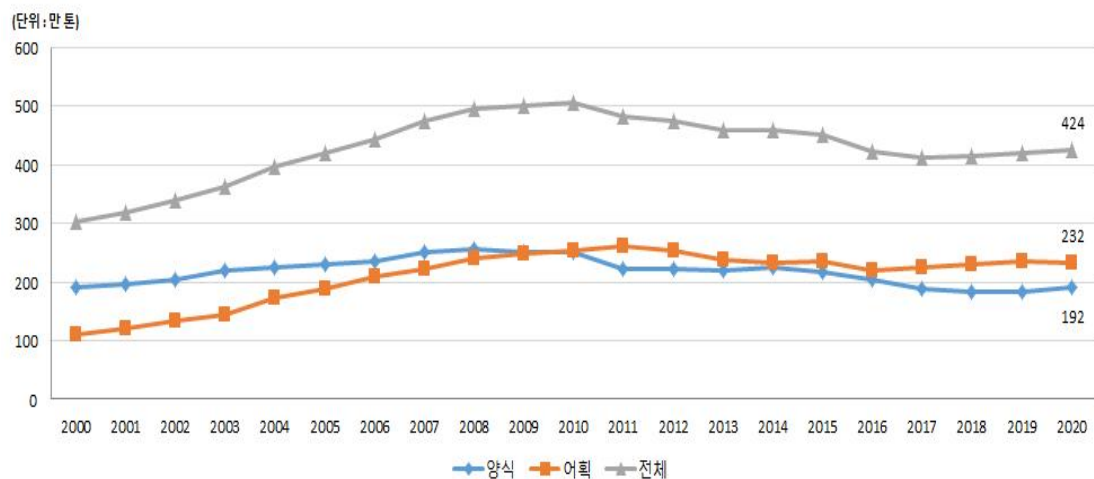
나. 어업별 생산

□ 2020년 필리핀 수산물 총 생산량은 424만 톤이며, 이 중 어로생산과 양식생산은 각각 232만 톤, 192만 톤임.

□ 필리핀의 수산물 생산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8%의 증가세를 보임.

○ 해당 기간 필리핀 어획어업과 양식어업의 연평균 증감률은 각각 -0.01%, 4.0%로 양식어업의 증가가 두드러짐.

그림 7-1. 필리핀 어업별 수산물 생산 추이



자료: FAO FishstatJ, 2022

□ 필리핀의 주요 생산 수산물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기타해조류(Elkhorn sea moss)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60.5%를 차지함.

○ 다음으로 기타어류(Milkfish)가 18.1%, 밴댕이(Bali sardinella)⁴¹⁾가 14.6%, 전갱어류(Scads nei) 9.0%, 틸리피아류(Nile tilapia) 7.1%, 틸라피아류(Tilapias nei) 6.0% 순으로 생산량이 많음.

41) 밴댕이 품종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FAO생산량을 찾아볼 수 없으나 2019년부터 필리핀 수산물 생산량 상위품목으로 파악됨.

- 필리핀의 주요 생산 수산물인 1위의 기타해조류는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품목으로 분류되며, 2위의 기타어류는 국내에서는 회귀종으로 구분됨.

표 7-2. 필리핀 주요 생산 어종(2020년)

(단위: 톤, %)

어종명		생산량	비중
전체		4,239,521	100
기타해조류	Elkhorn sea moss	1,404,743	60.5
기타어류	Milkfish	421,161	18.1
밴댕이	Bali sardinella	339,881	14.6
전갱이류	Scads nei	208,623	9.0
틸라피아류	Nile tilapia	164,083	7.1
틸라피아류	Tilapias nei	140,243	6.0
가다랑어	Skipjack tuna	123,965	5.3
기타다랑어류	Frigate and bullet tunas	110,466	4.8
전갱이류	Bigeye scad	105,218	4.5
황다랑어	Yellowfin tuna	86,633	3.7
기타해조류	Spiny eucheuma	63,073	2.7
밴댕이	Sardinellas nei	55,361	2.4
고등어류	Indian mackerel	54,387	2.3
굴류	Slipper cupped oyster	53,099	2.3
전갱이류	Carangids nei	52,351	2.3
연체동물	Freshwater molluscs nei	45,592	2.0
반원니꼴뚜기류	Common squids nei	44,415	1.9
기타새우류	Giant tiger prawn	42,874	1.8
기타어류	Ponyfishes(=Slipmouths) nei	39,587	1.7
기타어류	Threadfin breams nei	39,360	1.7
멸치	Stolephorus anchovies nei	37,663	1.6
기타다랑어류	Kawakawa	34,273	1.5
기타게류	Blue swimming crab	31,047	1.3
고등어류	Short mackerel	28,027	1.2
촉수류(기타어류)	Goatfishes, red mullets nei	26,920	1.2
기타어류	Spinefeet(=Rabbitfishes) nei	25,234	1.1
기타게류	Indo-Pacific swamp crab	23,265	1.0

주: 어획 및 양식 포함 2020년 전체 생산량에서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어종을 제시

자료: FAO FishstatJ,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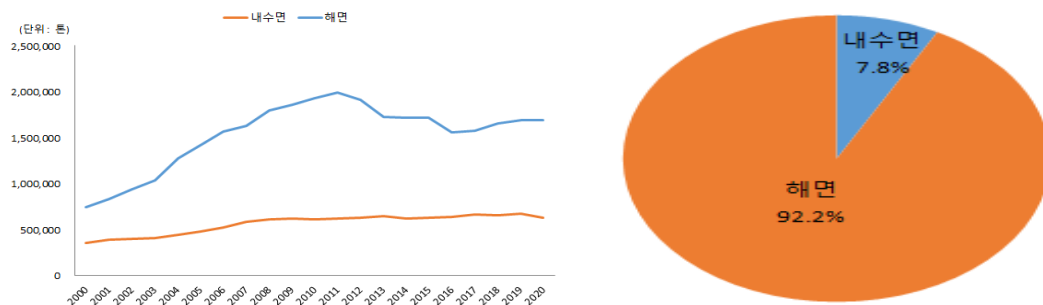
1) 어획어업

□ 2020년 필리핀의 어획어업 생산량은 192만 톤이며, 이는 필리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45.2%에 해당함.

○ 필리핀의 어획어업 중 해면은 92.2%, 내수면은 7.8%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생산어종으로는 밴댕이, 전갱이류, 기타다랑어류(가다랑어, 황다랑어), 고등어류 등이 있음.

그림 7-2. 필리핀의 어획어업 비중(2020년)



자료: FAO FishstatJ, 2022

표 7-3. 필리핀 어획어업 주요 생산품종

(단위: 톤, %)

어종명		2000	2005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률
						수량	비중	
전체		1,920,017	2,293,481	2,502,872	2,163,519	1,916,689	100.0	-0.01
밴댕이	Bali sardinella	-	-	-	-	339,881	17.7	-
전갱이류	Scads nei	260,999	283,756	274,994	230,586	208,623	10.9	-1.2
가다랑어류	Frigate and bullet tunas	112,227	173,960	149,567	137,685	110,466	5.8	-0.1
전갱이류	Bigeye scad	71,365	91,533	121,523	116,748	105,218	5.5	2.1
밴댕이	Sardinellas nei	298,466	336,304	448,556	378,897	55,361	2.9	-8.5
가다랑어	Skipjack tuna	121,039	166,081	171,110	146,789	123,965	6.5	0.1
황다랑어	Yellowfin tuna	101,488	130,221	105,702	94,034	86,633	4.5	-0.8
고등어류	Indian mackerel	55,088	85,648	93,392	74,947	54,387	2.8	-0.1
전갱이류	Carangids nei	34,713	55,343	76,207	64,201	52,351	2.7	2.2
연체동물	Freshwater molluscs nei	85,575	56,718	60,898	57,690	45,592	2.4	-3.3

주: 2020년 전체 어획어업 생산량 상위 10개 어종을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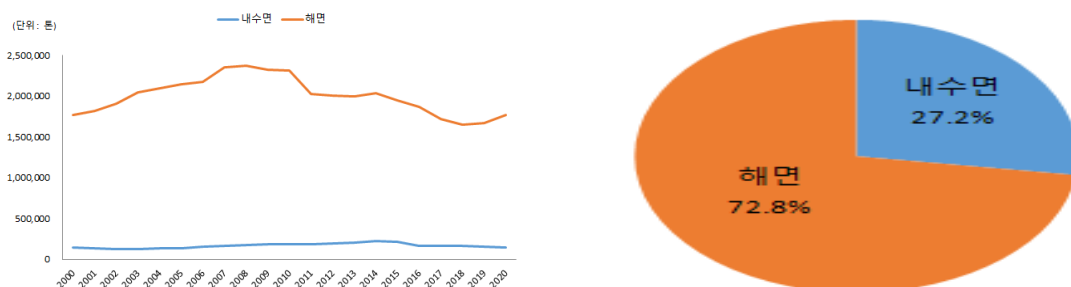
자료: FAO FishstatJ, 2022

- 필리핀 어획어업 주요 생산 품종으로는 밴댕이, 전갱이류, 기타다랑어류, 가다랑어, 황다랑어, 고등어, 연체동물 등이 있음.
-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필리핀 어획어업의 전체 연평균 증감률은 -0.01%로 나타났으며, 특이한 부분은 지난 18년 동안 생산량이 전무하던 밴댕이(Bali sardinella)품목이 2019년부터 생산되면서 어획어업 생산량 중 가장 생산량이 많은 품목에 오름.
- 상위 5개 품종의 연평균 증감률을 비교해보면, 전갱이류의 연평균 증가율이 소폭 올랐으나 대부분의 품목에서 모두 연평균 증감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 양식어업

- 필리핀의 양식생산은 2020년 232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54.8%를 차지하며, 크게 해면 양식과 내수면 양식(기수역 포함)으로 구분됨.
- 전체 양식생산량 중 해면 양식 생산 비중은 72.8%로 169만 톤 수준이며, 해면 양식의 대부분이 기타해조류(83.1%)와 기타어류(8.9%)로 구분되어 있음. 이밖에 굴(3.7%), 홍합(3.1%) 등 패류 양식이 일부 있음.
- 전체 양식생산량 중 내수면 양식 생산 비중은 63만 톤(27.2%) 수준으로, 주요 생산 품목으로는 기타어류가 41.8%, 틸라피아 및 틸라피아류(Nile tilapia 및 Tilapias nei)가 각각 26.0%, 15.8%, 기타새우류 6.7%, 기타게류 3.3% 등이 있음.

그림 7-3. 필리핀의 양식어업 비중 추이(2020년)



자료: FAO FishstatJ, 2022

□ 2000년부터 2020년 필리핀 양식 수산물 연평균 증감률은 4.0%로 상승세를 보임.

○ 양식어업 주요 생산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는 기타해류 품목은 연평균 4.2% 증가, 기타어류는 3.6% 증가하는 등 상위 10위 품목의 대부분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 필리핀 양식어업 주요 생산품목 중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품목은 틸라피아 (Tilapias nei) 품목으로 연평균 10.5%의 증가율을 보임.

표 7-4. 필리핀 양식어업 주요 생산품종

(단위: 톤,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률
						수량	비중	
전체		1,100,902	1,895,848	2,545,967	2,348,159	2,322,831	100	4.0
기타해조류	Elkhorn sea moss	644,319	1,233,186	1,669,247	1,457,865	1,404,743	60.5	4.2
기타어류	Milkfish	209,994	289,153	349,432	384,425	414,489	17.8	3.6
틸라피아	Nile tilapia	77,642	126,563	168,399	168,501	164,083	7.1	4.0
틸라피아	Tilapias nei	14,937	36,441	90,440	92,709	99,788	4.3	10.5
기타해조류	Spiny eucheuma	34,424	99,972	125,691	106,950	63,073	2.7	3.2
기타새우류	Giant tiger prawn	40,467	37,721	48,162	49,527	42,093	1.8	0.2
굴류	Slipper cupped oyster	14,222	16,495	22,525	20,261	53,032	2.3	7.2
녹색홍합	Green mussel	16,957	20,159	20,877	15,949	19,229	0.8	0.7
기타게류	Indo-Pacific swamp crab	4,968	6,861	14,438	16,199	20,766	0.9	7.8
기타새우류	Whiteleg shrimp	—	—	4,971	8,752	20,633	0.9	

주: 2020년 전체 양식어업 생산량 상위 10개 어종을 제시하였음.

자료: FAO FishstatJ, 2022

2. 필리핀 수산물 교역구조

가. 필리핀의 수산물 교역

1) 개요

□ 필리핀의 對세계 수산물 교역은 2020년 기준 13억 달러 규모임.

○ 수출이 834백만 달러, 수입이 474백만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냄.

□ 최근 5년간 필리핀의 수산물 교역 규모는 연평균 3.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과 수입 연평균 증감률은 각각 3.2%, 4.4%로,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는 추세임.

표 7-5. 필리핀의 수산물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증감률 (’16-’20)
교역규모	1,134	1,469	1,518	1,465	1,308	3.6
수출	736	884	912	838	834	3.2
수입	398	585	606	627	474	4.4
무역수지	338	298	307	212	361	1.7

자료 : FAO Fishstatj, 2022

2) 수입 현황

□ 분석 기간에 해당하는 2년 평균(’17-’18년) 필리핀의 품목별 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가다랑어 품목이 전체의 29.7%인 121백만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황다랑어(12.8%), 기타 연체류(9.4%), 기타 어류(8.8%), 고등어(8.6%) 등의 순임.

○ 상위 3개 품목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1.9%임.

표 7-6. 필리핀의 품목별 對세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어종명		2016년	2017 년	2018년	2019년	2020년	2년 평균('17-'18)	
							금액	비중
전체		398	585	606	627	474	595	100.0
가다랑어	Skipjack tuna, frozen	114	136	107	134	141	121	29.7
황다랑어	Yellowfin tuna, frozen, nei	42	84	103	89	61	93	12.8
기타 연체류	Cephalopods nei, frozen	35	44	50	52	45	47	9.4
기타어류	Marine fish, frozen, nei	6	6	20	61	42	13	8.8
고등어	Mackerels nei, frozen	77	134	125	55	41	130	8.6
어육	Fish meat, whether or not minced, frozen, nei	5	14	13	37	27	13	5.6
연어	Atlantic salmon and Danube salmon, frozen	5	13	21	30	25	17	5.2
메기	Catfish fillets, frozen	2	31	42	42	16	37	3.4
어분	Fishmeals, nei	10	22	12	9	10	17	2.1
기타 다랑어류	Tunas prepared or preserved, not minced, nei	3	0	1	6	9	1	1.9
상기 10위 품목 합계		299	483	495	516	415	489	87.6

자료: FAO Fishstatj, 2022

3) 수출 현황

□ 분석 기간에 해당하는 2년 평균('17-'18년) 필리핀의 품목별 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기타 가다랑어 품목이 전체의 41.1%인 311백만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황다랑어(13.9%), 게살(5.3%), 어육(3.6%), 연어(3.5%) 등의 순임.

○ 상위 3개 품목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3%임.

표 7-7. 필리핀의 품목별 對세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어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년 평균('17-'18)	
							금액	비중
전체		736	884	912	838	834	898	100.0
기타 다랑어	Tunas prepared or preserved, not minced, in airtight containers	176	286	335	312	343	311	41.1
황다랑어	Yellowfin tuna, frozen, nei	49	96	83	88	116	90	13.9
게살	Crab meat, in airtight containers, prep.or pres.	—	—	68	64	44	34	5.3
어육	Fish meat, whether or not minced, frozen, nei	0	2	3	15	30	2	3.6
연어	Salmonoids, frozen	—	2	14	19	29	8	3.5
기타어류	Freshwater fish nei, live	0	0	—	11	25	0	2.9
해조류	Seaweeds and other algae, fit for human consumption, nei	—	—	4	19	22	2	2.6
청어	Sardines, sardinellas, brisling or sprats, prep. or pres., not minced, nei	19	13	24	15	19	18	2.3
기타연체 류	Cephalopods nei, frozen	17	16	17	13	17	17	2.1
문어	Octopus, frozen	12	25	30	28	14	27	1.7
상기 10위 품목 합계		273	440	578	585	659	509	79.0

자료: FAO Fishstatj, 2022

나. 한·필리핀 수산물 교역 현황

1) 교역규모

□ 한국의 對필리핀 수산물 교역은 2019년 기준 65백만 달러 규모로, 對세계 수산물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 수준임.

○ 2019년 기준 한국의 對필리핀 수산물 수출이 34백만 달러였으며, 수입은 31백만 달러임.

- 2015년 이후로 對필리핀의 수산물 교역 규모를 살펴보면, 수출은 연평균 8.8% 증가하는데 반해 수입은 0.2%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 교역규모의 연평균 증감률은 3.9% 수준임.

표 7-8. 한국의 對필리핀 수산물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감률 (’15-’19)
수출	對세계	2,128	2,327	2,375	2,504	2,305	2.0
	對필리핀	24 (1.1)	17 (0.7)	32 (1.3)	24 (1.0)	34 (1.5)	8.8
수입	對세계	4,791	5,273	6,133	5,802	5,613	4.0
	對필리핀	32 (0.7)	29 (0.5)	39 (0.6)	44 (0.8)	31 (0.6)	-0.2
교역 규모	對세계	6,918	7,600	8,508	8,306	7,918	3.4
	對필리핀	56 (0.8)	45 (0.6)	71 (0.8)	67 (0.8)	65 (0.8)	3.9

주 : ()안의 수치는 우리나라 수산물 교역에서 對필리핀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 對필리핀 수입현황

- 2017년~2018년 평균, 한국이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은 전복(23.3%), 문어(20.6%), 기타(15.5%), 해삼(13.7%), 새우(11.2%) 순으로 많음.
- 동기간 세계 전복 수입 평균 금액은 9,270천 달러 수준이며, 이중 필리핀에서 수입되는 전복의 금액은 7,867천 달러로 필리핀의 전복 수입 집중도가 0.85 수준으로 매우 높음.
-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 상위 품목 5개의 비중이 전체 비중의 84.3%를 차지하고 있음.

표 7-9. 한국의 對필리핀 주요 수입 품목(2017~2018년 평균)

순위	어종명	對필리핀		對세계		수입 집중도 (A/B)
		금액 (천 달러)(A)	비중 (%)	금액 (천 달러)(B)	비중 (%)	
1	전복	7,867	23.3	9,270	0.2	0.85
2	문어	6,949	20.6	87,720	1.5	0.08
3	기타	5,241	15.5	193,319	3.4	0.03
4	해삼	4,626	13.7	15,611	0.3	0.30
5	새우	3,776	11.2	654,801	11.5	0.01
6	기타어류	3,327	9.8	206,779	3.6	0.02
7	기타해조류	1,075	3.2	13,018	0.2	0.08
8	기타패류	297	0.9	167,385	2.9	0.002
9	갈치	112	0.3	94,584	1.7	0.001
10	기타게	78	0.2	263,277	4.6	0.0003
	총수입	33,808	100	5,702,955	100.0	0.006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對필리핀 수출 현황

□ 2017년~2018년 평균, 한국의 對필리핀 수출 품목 순위는 가다랑어가 13,512천 달러, 전체 수출 비중의 55.7%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 김(11.3%), 황다랑어(8.7%), 연어(5.7%), 고등어(4.8%) 순으로 수출이 많음.

○ 對필리핀 수출 상위 5개 품목은 전체 수출 품목에 86.4%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對세계 수출 중 필리핀 수출 비중을 나타내는 수출 집중도의 경우, 연어(0.21)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7-10. 한국의 對필리핀 주요 수출 품목(2017~2018년 평균)

순위	어종명	對필리핀		對세계		수출 집중도 (A/B)
		금액 (천 달러)(A)	비중 (%)	금액 (천 달러)(B)	비중 (%)	
1	가다랑어	13,512	55.7	424,384	18.0	0.03
2	김	2,748	11.3	519,402	22.1	0.005
3	황다랑어	2,119	8.7	86,663	3.7	0.01
4	연어	1,390	5.7	6,683	0.3	0.21
5	고등어	1,170	4.8	44,122	1.9	0.03
6	기타어류	606	2.5	175,239	7.5	0.003
7	미역	517	2.1	35,216	1.5	0.015
8	기타다랑어	454	1.9	10,930	0.5	0.04
9	소금	263	1.1	9,753	0.4	0.02
10	기타해조류	194	0.8	7,156	0.3	0.04
	총수출	24,246	100	2,351,261	100	0.01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다. 한·필리핀 수산물 관세 현황

1) 개요

□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세율(실행세율 기준)은 한국이 16.7%로 필리핀(8.8%) 보다 높은 수준임.

○ 수산물에 대한 면세 비중은 한국 0.4%, 필리핀이 0.8%로 우리나라가 낮음.

표 7-11. 한·필리핀 수산물 관세 현황

구분	최종 양허 세율(%)			MFN 실행세율(%)		
	평균	철폐 비중	최대	평균	철폐 비중	최대
한국	14.7	0	32	16.7	0.4	32
필리핀	22.9	0	50	8.8	0.8	15

자료 : World Tariff Profiles 2020

2) 협정별 관세 현황

가) 한·ASEAN FTA 적용 관세

- 한·아세안 FTA가 적용된 MFN 세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활어와 어류(냉동)의 경우 6.7% 수준이며, 어류(신선·냉장) 1.1%, 어류(냉동) 5.2%, 어류(건조·염장·훈제) 1.5%, 갑각류 4.7%, 연체동물 2.0%, 수생무척추동물 0.36%, 해조류 2.9%, 조제가공품 4.2% 수준으로 나타남

표 7-12. 한·ASEAN FTA 기준 한국의 품목별 수산물 MFN 관세율

구분	관세율(품목수)	평균 관세율
활어	0%(13), 5%(5), 8%(2), 10%(12), 20%(1), 28%(1)	6.7%
어류(신선·냉장)	0%(25), 5%(9), 16%(2), 20%(22)	1.1%
어류(냉동)	0%(28), 5%(15), 8%(1), 10%(19), 22%(2), 26%(1)	5.2%
어류(피레트)	0%(86)	0.0%
어류(건조·염장·훈제)	0%(44), 5%(5), 16%(3)	1.5%
갑각류	0%(44), 5%(1), 11.2(2), 16%(4), 20%(6), 32%(2)	4.7%
연체동물	0%(67), 5%(20), 8%(3), 10%(1), 16%(2), 21.6%	2.0%
수생무척추동물	0%(21), 5%(3)	0.6%
해조류	0%(55), 16(12)	2.9%
조제가공품	0%(51), 5%(21), 16%(2), 20%(11)	4.2%

주: 품목별 수산물 관세율의 경우 HS 코드 기준 활어(0301), 신선냉장 어류(0302), 냉동어류(0303), 어류피레트(0304), 건조·염장·훈제 어류(0305), 갑각류(0306), 연체동물(0307), 수생무척추동물(0308), 해조류(1212.20, 1212.21, 1212.29, 조제가공품(1604, 1605)로 산출함.

2) 한-ASEAN FTA 기준 수산물은 총 68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함.

나) 한·필리핀 FTA 적용 관세

- 한·필리핀 FTA가 적용된 MFN 세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활어와 어류(냉동)의 경우 9.3% 수준이며, 어류(신선·냉장) 15.8%, 어류(냉동) 8.6%, 어류(건조·염장·훈제) 8.7%, 갑각류 16.2%, 연체동물 6.7%, 수생무척추동물 5.0%, 해조류 16.0%, 조제가공품 10.5% 수준임.

표 7-13. 한·필리핀 FTA 기준 한국의 품목별 수산물 MFN 관세율

구분	관세율(품목수)	평균 관세율
활어	0%(3), 5%(6), 8%(2), 10%(12), 20%(1), 28%(1)	9.3%
어류(신선·냉장)	5%(9), 16%(2), 20%(23)	15.8%
어류(냉동)	5%(19), 10%(19), 22%(2), 26%(1)	8.6%
어류(피레트)	—	—
어류(건조·염장·훈제)	5%(6), 16%(3)	8.7%
갑각류	0%(2), 5%(1), 11.2%(2), 16%(4), 20%(6), 31%(2)	16.2%
연체동물	0%(1), 5%(20), 8%(3), 10%(1), 16%(2), 21.6%(1)	6.7%
수생무척추동물	5%(3)	5.0%
해조류	16%(12)	16.0%
조제가공품	5%(21), 16%(2), 20%(11)	10.5%

주 1: 품목별 수산물 관세율의 경우 HS 코드 기준 활어(0301), 신선냉장 어류(0302), 냉동어류(0303), 어류피레트(0304), 건조·염장·훈제 어류(0305), 갑각류(0306), 연체동물(0307), 수생무척추동물(0308), 해조류(1212.20, 1212.21, 1212.29, 조제가공품(1604, 1605)로 산출함.

2: 한·필리핀 FTA 기준 품목별 수산물 MFN 관세율은 한-ASEAN 협정에서 관세가 철폐된 품목(기철페 품목 481개)를 제외한 품목 206개를 대상으로 산출함.

3) 필리핀 관세 현황

□ 필리핀의 수산물 관세는 비교적 낮은 편임. 그 중 어류(피레트), 갑각류는 무관세가 적용되며, 활어 0.6%, 어류(신선·냉장) 1.8%, 어류(건조·염장·훈제) 3.0%, 연체동물 0.3% 등으로 대부분 3% 이내의 관세 수준임.

□ 비교적 관세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는 어류(냉동) 7.1%, 수생무척추동물 5.0%, 해조류 4.0%, 조제가공품 4.6% 수준임.

표 7-14. 필리핀의 품목별 수산물 MFN 관세율

구분	관세율(품목수)	평균 관세율
활어	0%(25), 10%(2), 15%(5)	0.6%
어류(신선·냉장)	0%(19), 10%(11), 15%(30)	1.8%
어류(냉동)	0%(19), 15%(17)	7.1%
어류(피레트)	0%(48)	0.0%
어류(건조·염장·훈제)	0%(20), 15%(5)	3.0%
갑각류	0%(35)	0.0%
연체동물	0%(32), 10%(1), 15%(6)	0.3%
수생무척추동물	0%(18), 10%(1), 15%(2)	5.0%
해조류	0%(11), 15%(4)	4.0%
조제가공품	0%(25), 15%(11)	4.6%

주: 한·필리핀 FTA에서 자유화된 상호주의 347개 품목에 한정해서 산정함.

3. 한·필리핀 FTA 타결 내용 및 수산업 파급영향

가. 수산분야 한·필리핀 타결 내용

- 수산분야 타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총 수산물 687개 품목(HSK기준, 암염제외)중 92개 품목에 대하여 양허 제외하였고, 595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인하 조건을 설정하였음
- 기존 한·아세안 FTA로 인하여 관세가 철폐된 품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06개 품목이 양허대상이며, 그 중 개방(즉시철폐, 10년, 15년) 품목은 24개(즉시 철폐 1개, 10년 3개, 15년 20개)이며, 관세감축 및 양허제외 품목은 182개 (관세감축 90개, 양허제외 92개)임.
- 개방품목은 수입금액 기준('17~'18 평균)으로 약 1,786만 달러 수준이며, 관세감축 및 양허제외 품목의 수입금액은 약 1,595만 달러 수준임.

표 7-15. 한·필리핀 FTA 수산물 한국 수입 양허수준

(단위: 개, 달러, %)

양허 단계	주요 품목	품목	금액 ('17~18년 평균)	비중
즉시철폐	활어, 냉동갑새우류, 한천, 냉동 바닷가재 등 기철폐 / 활실뱀장어(양식용) 추가 철폐	482	17,628,646	52.1
10년	농어,치어(양식용)활어, 피조개, 종패용(산 갯/신선 냉장), 돔 치어(양식용)/활어	3	-	-
15년	정어리, 조제저장 굴, 황다랭이, 성게(냉동), 피조개(냉동), 틸라피아(활어), 기타어류, 꽃게(신선 냉장), 오징어(신선 냉장), 기타 다랑어류(신선 냉장), 기타어류(활어), 기타 김(냉동 외), 태평양 참다랑어, 다랑어(밀폐용기용) 등	20	228,132	0.7
관세감축 (SL*)	기타 갑오징어(냉동), 기타어류(통조림외 조제품), 기타 클램류(냉동), 기타 게류(냉동), 김(조제식용) 등	90	434,165	1.3
양허제외	전복(기타 조제저장처리), 기타 새우류(냉동), 문어(기타 조제저장처리), 새끼 뱀장어(양식용), 기타 관상용 활어, 갈치(냉동 냉장), 틸라피아(냉동), 갑오징어(냉동), 오징어(냉동) 등	92	15,516,659	45.9
합계		687	33,807,602	100.0

SL* : 이행 1~10년차 기준세율 유지 후 11~20년차 50% 선형 감축, 이후 해당세율 유지
 자료 : 해양수산부 제공,

- 양허 단계별 수입금액 비중에 있어서는 즉시철폐 품목이 전체 수입금액의 52.1%를 차지하고 있으며, 15년 이내 단계별 철폐 비중은 0.7~1.3%로 개방률은 낮은 편임.
- 특히 미개방 비율은 전체 수입금액 비중 47.2%로 수산물 개방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

나. 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 파급 영향

1) 분석의 전제

- 한·필리핀 FTA는 발효 후 15년이 경과되는 시기까지 그 영향이 지속한다고 가정함.
- 영향 분석의 기준선(baseline)은 지난 2년(2017~2018년) 평균 수산물 생산액 및 교역액으로, 코로나 19 등의 외부효과 발생 이전의 상태가 지속된다고 가정하였으며, FTA로 인한 국내 생산 영향은 수입액과 국내 생산액을 활용한 탄성치 및 아밍턴 대체 탄성치(Armington Substitution Elasticity)를 이용함.
- 2년 평균 수산물 국내생산액과 우리나라-필리핀 간 교역액 자료를 사용하여 단년도 자료를 사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극단값을 배제함.
- FTA에 따른 관세 인하 등이 국내산 수산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국내산 수산물의 수요에 대한 FTA 체결국 간 수산물의 수입 탄성치(Elasticity)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계측이 필요함.
- 따라서 FTA에 따른 국내 수산물 생산 영향 파악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금액과 필리핀산 수산물 수입금액에 대한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금액의 탄성치를 적용하여 국내 생산 영향을 파악함.

- 다음으로 필리핀산 수산물과 국내 수산물의 대체관계를 아밍턴 대체 탄성치 (Armington Substitution Elasticity)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국내 생산 피해를 추정함.

2) 분석 방법

- 한·필리핀 FTA에 따른 수입 및 국내 생산 등의 영향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분균형모형의 한 유형으로 알려져 있는 균형대체모형(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EDM)을 적용함.

표 7-16. 수산물 EDM 구조 방정식과 주요 변수 및 탄력성

A (방정식)		B (유도 결과)	설명
(1)	$P_m = eP^c(1+t_c)$	$EP_m = Ee + EP^c + \frac{dt_c}{1+t_c}$	수입산 가격결정식
(2)	$Q_m = f_d(P, P_m, I)$	$EQ_m = \eta EP + \eta_c EP_m + \eta_I EI$	수입 수요함수
(3)	$P = f_d^{-1}(Q_m, P_m)$	$EP = \ln(\Delta Imw)/\sigma + \ln(\Delta Imp)$	아밍턴 함수
(4)	$Q^d = Q^s + P$	$EQ^d = EP$	국내산 균형조건

변수	설명	탄력성	설명
Q^d	국내산 수요	η	수입량의 국내 가격탄력성
Q^s	국내산 공급(단기적 고정)		
Q_m	수입량		
P	국내가격	η_c	수입량의 수입 가격탄력성
P_m	수입가격(환율적용, 관세포함)		
P^c	수입가격(환율, 관세포함 전)	η_I	수입량의 소득탄력성
I	소득(GDP)		
e	환율	σ	아밍턴 대체탄력성 (Armington Elasticity)
t_c	수입산 관세율		

- 대다수의 경우 FTA 등 상품시장 개방에 따른 파급 효과의 계측은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 등 경제 전체의 주요 산업 부문을 고려하는 방법이 활용되어 왔으나, 수산부문의 경우 지금까지 부분균형방식을 적용해 왔음.

○ FTA 이행에 따른 특정 산업별 파급 영향이 아닌 개별 부류별·품목별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FTA 양허 내용 및 수급 요인 등을 고려한 부분균형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임.

○ EDM은 수산물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요인에 의해 내생적인 가격과 물량의 변화를 추정하는 기법으로, 외생변수의 변화가 모형에서 구축된 균형관계식을 통해 내생변수에 미칠 영향을 보여주는 비교정태분석(comparative static analysis) 방법론임.

□ FTA로 인한 수산물의 수입 증가와 이로 인한 국내 생산의 파급 영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따름.

1. FTA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면 수입 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짐.
2.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이 증가함.
3. 수입산으로 소비가 대체됨에 따라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동시에 국내산의 가격이 하락함.
4. 이에 따라 어업소득이 감소하면 어업경영체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국내 생산량이 감소함.

□ 이상의 파급 경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개별 품목의 FTA 체결국산과 국내산의 대체 관계임.

○ 일반적으로 국내산은 활·신선·냉장 수산물이 유통되는 데 반해 인접국이 아닌 경우 냉동 수산물이 주로 수입되므로 같은 품종이라도 완전히 동질적인 상품은 아님.

□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도 외생 요인이므로 EDM으로 그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음.

○ FTA에 따라 특정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 수입재의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이 늘어나고 이는 수입재와 대체관계에 있는 국산재의 가격과 수량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우리나라는 국제 시장의 수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소국 가정을 채택하고 국내산과 필리핀산 수산물은 이질적 상품으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가정함.

□ 이때 FTA에 따른 수입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EDM은 다음과 같은 함수로 구성된 방정식 체계로 나타낼 수 있음.

- 국내산 수산물 수요함수
- 국내산 수산물 공급함수
- 국내산 균형조건
- 수입산 수산물 역수요함수*
- * 수입산 물량 변화가 국내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상징하는 역수요함수를 구성
- 관세를 고려한 수입산 수산물의 국내도입가격

□ FTA 이행으로 역수요함수, 즉 수입산의 수입 증가로 인한 수입가격(P_m)의 변화율은 다음과 같음⁴²⁾.

$$EP_m = Ee + EP^c + \frac{dt_c}{1+t_c}$$

□ EQ_m 는 수입량으로서, 국내가격(P), 수입가격(P_m) 및 소득(I)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

$$EQ_m = \eta EP + \eta_c EP_m + \eta_I EI$$

○ 수입량은 국내 공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공

42) 거시적인 FTA 영향으로 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나 관세 인하 영향만을 보기 위해 이를 고려하지 않음.

급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함.

- 수입산의 수요는 FTA 이행으로 영향을 받지만, 소득(I)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됨.
- 수입 변화에 따른 국내 생산 피해액은 아밍턴 계수(Armington coefficient)를 이용한 아밍턴 함수(Armington, 1969)를 이용하여 추정함.

$$\ln\left(\frac{Q_{kFt}}{Q_{kHt}}\right) = \alpha_k - \sigma_k \ln\left(\frac{P_{kFt}}{P_{kHt}}\right) + \mu_{kt} \quad \sigma_j = \frac{\alpha \log(X_j^i(t)/X_j^d(t))}{\alpha \log(P_j^d(t)/P_j^i(t))}$$

자료 : Ahmad et al.(2020)

자료 : Kapuscinski & Warr(1999)

- Kapuscinski & Warr(1999)의 아밍턴 식을 역수요함수에 대입하기 위하여 $P_j^d(t)$ 에 대하여 풀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alpha \log P_j^d(t) = \frac{\alpha \log X_j^i(t) - \alpha \log X_j^d(t)}{\sigma} + \alpha \log P_j^i(t)$$

- $P_j^d(t)$ 와 $P_j^i(t)$ 는 각각 국내 상품 가격 및 수입 상품 가격의 변화액이며, $X_j^i(t)$ 와 $X_j^d(t)$ 는 각각 수입 및 국내 상품 수량의 변화량이며, σ 는 아밍턴 계수를 나타냄.
- 국내 수산물 가격을 종속 변수로 사용한 것은 수입상품 가격의 변화에 따라 국내 생산량 등 공급을 단기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는 수산업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임.
- 이에, 수입량 및 국내 수요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역수요함수를 구축하는 것이 수산업 모형에 적합함.
- 국내 생산량 감소는 국내산 가격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며, 따라서

국내 생산 영향은 $\Delta P_j^d(t)$ 와 동일함.

□ 수산물의 상품별 아밍턴 탄성치 도출과 관련된 주요 연구는 아래와 같음.

○ Zeraatkish, et al.(2018)는 이란 주요 수산물에 대한 탄성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장기 및 단기 탄성치의 구분을 통하여 장기 탄성치의 무차별적인 특성을 분석

○ Donnelly, et al.(2004)는 미국 산업을 총 128개 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상업 수산물과 통조림, 조제 수산물 등으로 구분, 최소 1.7~ 최대 5.0까지 탄성치가 분포되어 있음을 설명

○ 미국 수산물 중 특정 품목에 대한 연구로서 Cheng(2001)은 가리비(scallop) 시장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단기 보다 장기 탄성치가 높다는 것을 확인

□ 비수산물 상품별로서 국내에서 아밍턴 탄성치를 활용하여, FTA 효과를 추정한 연구도 존재함.

○ Min(2015)은 임업 주요 수입 상품인 합판, 섬유판, 파티클 보드를 중심으로 아밍턴 탄성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FTA가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바 있음.

3) 분석 데이터

□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과 필리핀간 수출입 데이터(2년 평균)로서, 실제 수출입된 교역 자료를 기초로 영향을 분석하였음.

표 7-17. 분석 데이터(수입기준)

구분	품목
어류	고등어, 전갱이, 갈치, 멸치, 명태, 조기, 연어, 대구, 쥐치, 까나리, 꽁치, 새치, 돔류, 미꾸라지, 농어, 임연수어, 가오리, 홍어, 볼락, 복어, 방어, 청어류, 잉어, 이빨고기, 틸라피아, 메기, 넙치, 서대, 가자미, 송어, 병어, 상어, 장어류, 다랑어류, 민어, 가자미, 아귀, 기타어류 등
갑각류	새우, 대게, 꽃게, 바닷가재, 갯새우, 왕게, 기타갑각류, 기타 게, 붉은 대게, 닭새우 등
패류	조개류(새조개 및 피조개 등), 굴류, 홍합, 전복, 굴뱅이, 고둥, 바지락, 소라, 가리비, 기타패류 등
연체동물	오징어류, 낙지, 주꾸미, 문어, 기타 연체동물 등
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 파래, 톳, 말, 우뚝가사리, 한천, 돌가사리, 진두발, 기타해조류 등
소금	천일염 등
기타	어분, 어란, 어유, 캐비아, 지렁이, 거북, 자라, 물개류, 고래류, 기타 환형동물류, 기타 포유류 등
그 외 수생동물	해삼, 멧게, 성게, 해파리, 기타수생동물 등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4) 분석 결과

가) 수입 영향

□ ASEAN을 통한 한·필리핀 FTA로 수산물 수입은 15년 연평균 24,148 달러, 15년 누계 36만 2,226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산물 유형별로는 어류가 15년 연평균 10,068 달러, 15년 누계 15만 1,019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연체동물이 15년 연평균 5,862 달러, 15년 누계 8만 7,925 달러 차지

○ 이 외 15년 연평균 5,000 달러 이하를 차지하는 부류로는 갑각류, 패류, 해조류, 그 외 수생동물이 포함되며, 종합적으로 필리핀산 수산물 수입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7-18. ASEAN 기준 수산물 유형별 수입 영향 분석 결과

(단위: 달러)

구분	연평균	기간(5년)별 수입 영향			15년 누계
		1~5년 평균	6~10년 평균	11~15년 평균	
전체	24,148	9,874	26,330	36,242	362,226
어류	10,068	3,904	10,410	15,890	151,019
갑각류	4,133	1,771	4,724	5,905	62,001
패류	2,934	1,254	3,344	4,203	44,008
연체동물	5,862	2,512	6,699	8,374	87,925
해조류	5	2	6	7	76
그 외 수생동물	1,146	430	1,146	1,863	17,196

나) 국내 생산 영향

□ 본 연구는 한·필리핀 FTA로 인한 수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 수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필리핀산 수산물 수입액에 대한 국내 생산액 탄성치를 적용함.

□ 필리핀산 수산물 수입액에 대한 국내 생산액 탄성치를 적용한 결과, 국내 수산물 생산은 15년 연평균 10,222천 원, 15년 누적 153,332천 원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부류별 생산 감소액은 연체동물이 15년 연평균 5,223천 원, 15년 누적 78,337천 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갑각류 15년 연평균 2,684천 원, 15년 누적 40,257천 원의 생산 감소액을 차지함.

○ 연체동물 및 갑각류 다음으로는 어류, 패류 및 해조류 순으로 생산 감소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패류 및 해조류의 생산 감소액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7-19. 수산물 유형별 국내 생산 영향 분석 결과(수입-생산 탄성치)

(단위: 천원)

구분	연평균	기간(5년)별 국내 생산 영향			15년 누계
		1~5년 평균	6~10년 평균	11~15년 평균	
전체	-10,222	-4,282	-11,419	-14,965	-153,332
어류	-1,967	-763	-2,034	-3,105	-29,512
갑각류	-2,684	-1,150	-3,067	-3,834	-40,257
패류	-7	-3	-8	-10	-100
연체동물	-5,223	-2,238	-5,969	-7,461	-78,337
해조류	-1	0	-1	-1	-9
그 외 수생동물	-341	-128	-341	-554	-5,116

주: 17-18년 기준 수입금액 및 생산금액 탄성치 적용

다) 수출 영향

□ FTA를 통한 한국의 對필리핀 주요 수산물 수출 품목에는 생선목, 가다랑어가 존재하며, 이러한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함

□ 지난 5년('17년~'21년)간 우리나라의 對필리핀 주요 수산물 수출 품목에 있어 즉시철폐 품목인 생선목과 15년 철폐 품목인 가다랑어는 수출액과 수출량이 모두 17년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음.

○ 생선목(게살 제외) 경우 2017년 수출액은 약 687만 달러, 수출량은 4,586톤에서 2021년 수출액은 약 768만 달러, 물량은 6,424톤으로 2017년 대비 수출액은 11.8%, 수출량은 40.1%의 증가율을 보여 옴.

○ 반면 가다랑어의 경우 2017년 수출액은 약 50만 달러, 수출량은 226톤에서 2021년 수출액은 약 184만 달러, 물량은 805톤으로 2017년 대비 수출액은 271.4%, 수출량은 256.8%의 증가율을 보여 옴.

□ 생선목과 가다랑어 등 對필리핀 주요 수산물 수출 품목은 타 품목에 비해 수

출액과 수출량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향후 이들 품목에 대한 양허 내용 적용 시 對필리핀 수산물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표 7-20. 한국의 對필리핀 주요 수산물 수출 품목 양허 내용 및 동향

(단위: 천 달러, 톤, 달러/kg)

품목	현행 관세율	양허 내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5개년 증감률
생선목 (게살제 외)	5%	즉시 철폐	수출액	6,872.7	14,298.8	5,755.7	9,299.8	7,680.5	11.8%
			수출량	4,585.5	10,615.7	8,296.6	7,483.9	6,424.0	40.1%
			단가	1.50	1.35	0.69	1.24	1.20	-20.0%
가다랑어	5%	15년 철폐	수출액	496.7	799.3	1,150.6	1,478.1	1,844.8	271.4%
			수출량	225.7	342.6	485.8	622.0	805.3	256.8%
			단가	2.20	2.33	2.37	2.38	2.29	4.1%

주 1: 생선목(게살 제외) HS 코드는 1604.20-4090이며, 가다랑어는 0303.43-0000임.

2: 현행 관세율은 필리핀에서 한국산 수산물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